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군 산 시 장



2022년 11월 9일

군산시 조례 제1990호

## 군산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우리 지역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란 (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하여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해당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지역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 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민간인희생자와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비영리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2년 11월 9일

군산시 조례 제1991호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군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해지된 경우 10년간”을 “해지된 경우와 수탁기관이 수탁  
사무와 관련하여 위탁료를 고의로 부정하게 집행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  
용하여 시장으로부터 위탁료 환수 등 100만원 이상의 재정적 처분을 받  
은 경우 10년간 해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수탁기관의 임직원이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을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22조 중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각각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② 군산시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및 제23조 중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각각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③ 군산시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및 제17조 중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각각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④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하고, 제17조 중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⑤ 군산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⑥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⑦ 군산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⑧ 군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⑨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⑩ 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⑪ 군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⑫ 군산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⑬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⑭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⑮ 군산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⑯ 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⑰ 군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⑱ 군산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⑲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를 “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로 한다.

⑳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를 “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로 한다.

㉑ 군산시 마을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를 “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로 한다.

㉒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3항 중 “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를 “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로 한다.

㉓ 군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를 “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로 한다.

㉔ 군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 「군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를 “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로 하고, 제17조 중 “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를 “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로 한다.

㉕ 군산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 「군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를 “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로 한다.

②⑥ 군산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군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②⑦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군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②⑧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②⑨ 군산시 어촌체험마을·휴양마을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군산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③⑩ 군산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③⑪ 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③⑫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③⑬ 군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 「군산시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를 “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로 한다.

③④ 군산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를 “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로 한다.

③⑤ 군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군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로 한다.

③⑥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를 “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로 한다.

③⑦ 군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를 “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로 한다.

③⑧ 군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를 “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로 한다.

③⑨ 군산시 무녀 서들이 농수산물 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를 “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로 한다.

④⑩ 군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④①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중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④②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 중 “「군산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④③ 군산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군산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u></p> <p>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 ② (생략)</p> <p>③ 수탁기관 및 대표의 귀책사유로 <u>협약 해지된 경우 10년간</u> 수탁기관 선정에 참여할 수 없다</p> <p>④ (생략)</p> <p>제16조(협약의 해지 등) ①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u>&lt;신 설&gt;</u></p> <p>5. (생략)</p> <p>② ~ ④ (생략)</p>	<p><u>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u></p> <p>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u>해지된 경우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위탁료를 고의로 부정하게 집행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시장으로부터 위탁료 환수 등 100만원 이상의 재정적 처분을 받은 경우 10년간 해당</u>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6조(협약의 해지 등) ①-----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수탁기관의 임직원이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을 때</u></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군 산 시 장



2022년 11월 9일

군산시 조례 제1992호

##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단, 동일한 구역내에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함)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한 후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나 건축물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동의를 받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골목형상점가는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다.

1. 제3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점가의 특성,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은 1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온누리상품권 가맹)**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하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 2. 제2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의 조성·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와 의결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업무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다. 유통산업·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라.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해촉된 위원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직책을 상실한 경우
-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 된다.

-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

- 1. 상점가명:
- 2. 점 포 수:
- 3. 지정구역:
- 4. 지정일자: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2호서식]

###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팩스번호

상점가 구역 개요	상점가명				
	면적 및 점포수	총 면적	총 점포 수(개)		
		주소	대지면적(㎡)	점포 수(개)	
	구역 상세				
신청사유 및 목적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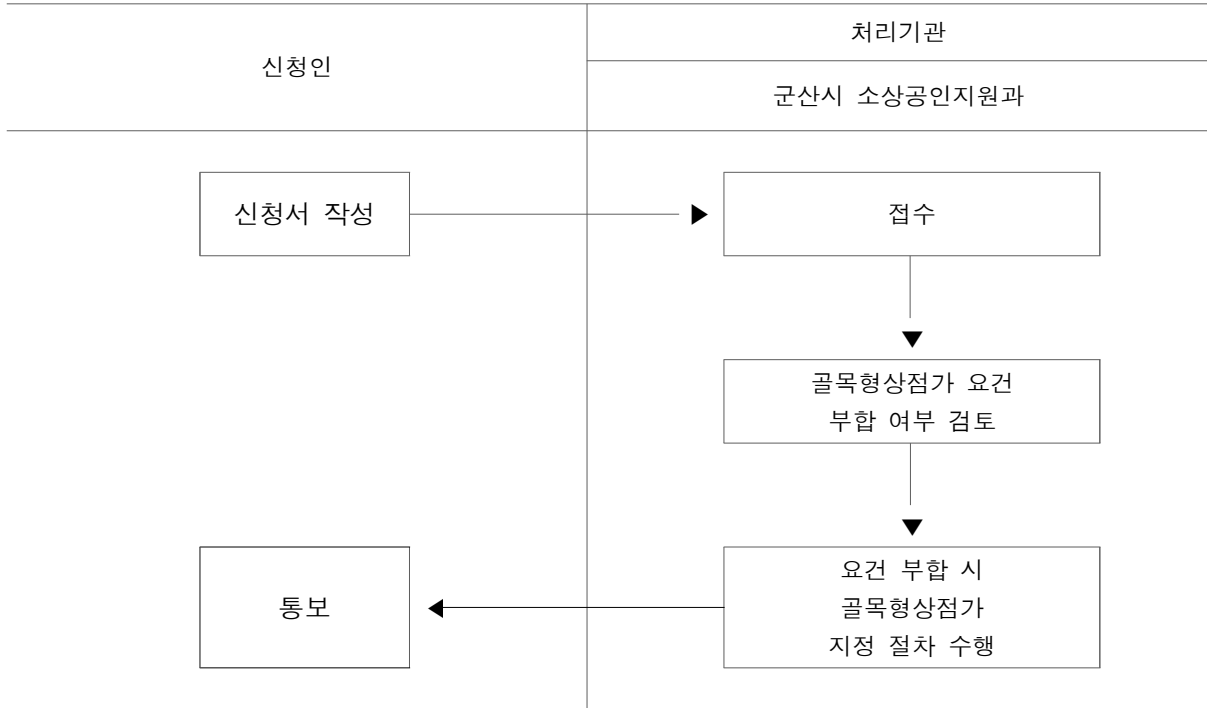
첨부서류	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구역 내 토지 소유자 동의서 3. 해당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 동의서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군 산 시 장



2022년 11월 9일

군산시 조례 제1993호

## 군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드론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

2. 그 밖에 드론산업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산시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드론산업 관련 업무의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드론산업 관련 연구·교육·협업기관 및 관련 법인·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드론산업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군산시 소속 공무원 및 군산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드론산업 관련 업무의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 위원의 해촉과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p> <p>2. “드론산업”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p> <p>&lt;신 설&gt;</p>	<p>제2조(정의) ----- -----.</p> <p>1.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p> <p>2.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p> <p>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드론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p> <p>1.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p> <p>2. 그 밖에 드론산업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산시 부시장으로 하</p>

현 행	개 정 안
	<p>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드론산업 관련 업무의 담당 국장으로 한다.</p> <p>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u></li> <li>2. <u>드론산업 관련 연구·교육·협의기관 및 관련 법인·단체의 임직원</u></li> <li>3. <u>그 밖에 드론산업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li> </ol> <p>⑤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군산시 소속 공무원 및 군산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u></p> <p>⑥ <u>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드론산업 관련 업무의 담당 과장으로 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 · 제11조 (생 략)</p>	<p>⑦ <u>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⑧ <u>위원회 위원의 해촉과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u></p> <p>⑨ <u>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p> <p>제11조 · 제12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p>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군 산 시 장



2022년 11월 9일

군산시 조례 제1994호

## 군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산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적 차별”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 세대, 연령, 학력, 출신지, 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에 의한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제한 혹은 금지를 말한다.
2. “문화다양성”과 “문화적 표현”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해야한다.

② 시장은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사·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지역 간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은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문화적 창의성을 바탕으로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다양성 증진과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실행계획 등의 수립)** 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군산시 문화다양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실행계획의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문화다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
5. 문화다양성 사업 및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
6.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8.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문화예술·장애인복지정책·여성가족정책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인종, 종교, 성, 연령, 장애 유무, 자치단체별 형평성 및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공개 모집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정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에 대한 지역의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 1. 문화다양성 관련시설 운영 및 활동 현황
  - 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3.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일반적인 인식에 관한 사항
  - 4. 주요 사업에 따른 문화적 영향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문화다양성 교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1. 시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에 관한 내용
- 2.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차이에서 비롯된 문화적 특성에 관한 내용
- 3.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 및 문화다양성 가치의 실천에 관한 내용
-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12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이나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한 문화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위한 활동
- 2. 다양한 문화의 표현 및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활동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권고 등)** ① 시장은 문화적 차별 행위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청하는 권고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권고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사후점검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군 산 시 장



2022년 11월 9일

군산시 조례 제1995호

## 군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외식 및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라 영업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시장은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영업자 또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영업
3.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위생업소 또는 사업자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공중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2.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3. 각종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5.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
6. 전문 능력 향상과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국내·외 선진지 견학
7. 지역대표음식 발굴, 보급 및 육성사업
8. 그 밖에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지침이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군산시 식품·공중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①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경우
2. 영업주의 주소가 시에 있지 않거나,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제3조에 해당하는 업소나 단체가 시 보조금 및 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받았을 경우
5.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8조(위원회 설치)**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군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군산시 위생업무 담당국장, 군산시 위생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

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 2.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
- 3. 그 밖에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이는 소관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 1. 지원 대상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안전한 위생관리와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해당 위생업무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장소
2. 출석 위원 및 관계인
3. 안건명
4. 참석자 발언 요지
5. 심의경과 및 결과
6. 그 밖의 특이사항 등

**제16조(회의결과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계법령 등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위생업소 등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업소현황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일반	
				휴대	
	건물소유 형태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전세 <input type="checkbox"/> 월세 <input type="checkbox"/> 기타			
	업소명		업종		
	시설		업소주변 환경	“관광지, 유원지, 안구말잡지 등가재	
이용객 수 (1일평균)	명	수용 가능인원	명	주이용객 “내·외부인”기재	
지원요구	지원구분				
	지원시설				
	사업비	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신청사유	“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작성)				

군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 ○○○○ 사업 계획서

〈 목적 〉

사업내용

- 
- 

추진계획

- 
- 

보조금 신청 내역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총 사업비					산출기초
	계	국 고 보조금	도 비 보조금	시 비 보조금	자부담	

※ 세부적(구체적)으로 각 항목별 산출근거 제시(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사업의 효과

- 
- 
- 

전년도 사업 추진 내용

-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구체적으로 기재

- 
- 

※ 전년도 동일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 경우에 작성

기타 사항

-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 지방보조금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등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군 산 시 장



2022년 11월 9일

군산시 조례 제1996호

## 군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호우로 인하여 주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침수방지시설”이란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 2.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①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시가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하여는 건물의 소유자·점유주 또는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침수방지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3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2천만원 이하

**제9조(설치규격)**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맞게 적정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시장은 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군 산 시 장



2022년 11월 9일

군산시 조례 제1997호

##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시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법 제56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법 제56조의2 및 영 제33조의2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폐업지원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③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아 폐업한 자에게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할 수 없으며, 폐업지원금의 지급 이후 분뇨수집·운반량 증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허가를 제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22조의2(분노수집 · 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시장은 분노수집 · 운반업자가 법 제56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법 제56조의2 및 영 제33조의2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u></p> <p><u>② 폐업지원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를 준용하여 산정한다.</u></p> <p><u>③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u></p> <p><u>④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아 폐업한 자에게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노수집 · 운반업 허가를 할 수 없으며, 폐업지원금의 지급 이후 분노수집 · 운반량 증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허가를 제한한다.</u></p>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군 산 시 장



2022년 11월 9일

군산시 조례 제1998호

## 군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한 17개의 목표와 군산시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라 군산시가 지속가능

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4.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사회·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군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한다.
3. 시장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4. 시민, 민간단체, 기업 등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
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3.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과 원칙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의 기본정책 방향

5.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군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

④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추진계획 추진 여건 및 전망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③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시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대상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를 5년 주기로 개발·보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2년마다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시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시장은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
3.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군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1.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한 차례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전심의회가 필요한 경우 안전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업무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 단체 또는 전문연구기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교육·홍보·국내외 협력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필요한 교육·홍보 및 국내외 협력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법인·민간단체·시민·공무원 등에게 「군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8조(의회 등 보고)**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추진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시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시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군 산 시 장



2022년 11월 9일

군산시 조례 제1999호

##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물 소비촉진과 수산물 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으로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개설한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등) 수산물종합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2. 소재지 : 군산시 내항2길 216(해망동 1011-21, 1011-22, 금동57-4, 57-5, 57-6번지) 일원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센터”란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를 말한다.
- 2. “사용자”란 센터 내 건물 또는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3. “점포”란 센터 내에서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 제2장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 ① 센터 내 점포를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군산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연장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최대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 ⑤ 점포의 위치는 연장 허가 시기에 맞춰 3년 주기로 공개적인 방법에 의해 순환 재배치하여야 한다. 단 2층 점포는 제외한다.

**제5조(사용자 선정)** ① 사용자 선정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 1.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 수시로 공실이 발생된 점포의 경우
- 2. 해당 점포별로 신청자가 미달된 경우
- 3. 그 밖에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개모집의 경우 사용자 선정 방법에 관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점포에 관한 권

리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 양도, 담보 설정, 임대 등을 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허가받은 점포를 직접 영업하여야 하고, 가족 및 직원을 통해 대리 영업할 수 없다.

**제7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센터의 시설물과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10일 이상 휴업할 경우 관리부서에 휴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즉시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주소, 연락처, 허가내용 등 변동사항 발생 시 10일 이내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점포 사용을 포기하거나 허가기간 내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사용 시설에 대한 방화 책임과 관리 의무를 지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⑥ 센터 내에 수족관이나 각종 냉각기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실외기는 실외의 정해진 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⑦ 사용자는 센터 및 상인회의 화합과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 시장의 승인 없이 기존 시설의 형태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허가취소 및 재계약 불허)** ①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취소 또는 재계약을 불허할 수 있다.

1. 제6조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할 때
2. 신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3. 허가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4. 시설물의 원상을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6.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 7. 센터의 질서 유지 등 공익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8. 그 밖에 시장이 정한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② 시설개선 등의 공익 목적이 있거나 시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취소 또는 재계약을 불허할 수 있다.

**제10조(보험가입)**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험금 수취인을 시장으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보험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증권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 또는 상인회에서 일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 또는 공공법인·단체에게 센터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관련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센터를 관리·운영한다.

③ 수탁자는 환경정비, 상거래 질서 확립, 건물의 유지관리, 활성화 등을 위해 관리인을 지정하여 센터에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 업무를 수행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 1. 관련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 2.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나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할 사유로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 제3장 운영위원회 및 상인회

제12조(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센터의 공공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어느 한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운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 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군산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2명 이내
2. 유통·경영·경제학계·시민단체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내
3. 센터 상인대표 2명 이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를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제척 등)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제척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안전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특화사업에 관한 사항
3. 경영전략 등 선진경영기법의 도입에 관한 사항
4. 시설개선을 포함한 환경개선 사항
5. 입점품목에 관한 사항
6. 입점자격 등 사용자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센터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산물특화단지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계(팀)장 또는 관리자로 한다.

- ④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 ⑤ 위원회 회의 개최 및 기타 운영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제16조(상인단체의 구성)** 사용자 등은 상인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상인회의 구성·운영에 대하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한다.

**제17조(자체운영규정)** ① 상인회 또는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자체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상인회장은 사용자에게 한하여 상인회 회칙 및 관련 법규에 의거 적법하게 선출하여야 한다.

### 제4장 사용료 및 운영관리비

**제18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매월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에 따른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연체료를 징수한다.

③ 사용료는 허가를 받는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선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청년상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⑤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 점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점포 사용 해지를 신고한 경우
3. 사용자가 사망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반환 신청을 해야 하며 반환금은 일할 계산한다.

⑦ 사용자가 시장의 허가를 얻어 휴업한다 할지라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에 따라 휴업을 명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제19조(보증금 등)** ① 시장은 체납된 사용료 징수 및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원상복구비 확보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보증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센터 사용을 폐쇄하거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사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의 체납액이나 시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고 반환한다.

**제20조(운영관리비)** 센터 유지관리에 필요한 수선유지비, 안전관리 용역

비, 공용전기료, 상·하수도료, 폐기물처리비, 각종 수수료 등의 운영관리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징수위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 사용료 및 운영관리비를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5장 사고·위생·화재예방

**제22조(배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센터 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1항에 의한 센터 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 납입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식품위생)** 센터 안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음식점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의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위생관리)** 시장은 보건위생상 또는 센터 환경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인들로 하여금 청소 또는 소독을 하도록 하거나 보건위생에 위해를 주는 물건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취사제한)** 센터 내에서는 취사를 하지 못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음식점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소방시설)** ① 시장 또는 수탁자가 소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소방시설과 장비를 갖추게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27조(소방안전관리자)** 센터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센터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1. 소방계획수립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 3. 소방훈련 및 교육
- 4.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 5. 화기 취급 감독

### 제6장 지도·감독

제28조(관리원) 시장 또는 수탁자는 센터 관리를 위하여 관리원을 둘 수 있다.

제29조(관리원 임무) 관리원은 시장 또는 수탁자의 명을 받아 센터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30조(야간경비) 시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의 보호나 재물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야간경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주거금지) 사용자는 센터 시설물이나 부지를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2조(점포의 배열) 시장 또는 수탁자는 센터의 활성화와 질서를 유지할 위해 업종과 점포배열을 지정할 수 있다.

제33조(도로사용금지) 사용자는 관리자의 사용허가 없이 센터 안의 도로·주차장·통로 상에 물건을 보관 또는 진열, 건조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34조(가격의 표시 등)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에게 판매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할 것과 원산지 표시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원상복구)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9조에 의하여 사용허가 취소가 되었을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배상시켜야 한다.

제36조(준용규정) 수산물종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수산물종합센터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조건」등을 준용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종전의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별표 1】

**군산수산물종합센터 사용료(제18조 관련)**

1. 사용료 요율

구분	대상	분류	기준	재산가격 적용기준	적 용 요 율
수산물 종합센터	본관동 (1층)	토지	년/㎡당	개별 공시지가	1,000분의 50
		건물	”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1,000분의 60
	본관동 (2층)	토지	”	개별 공시지가	1,000분의 50
		건물	”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1,000분의 40
	건어동	토지	”	개별 공시지가	1,000분의 50
		건물	”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1,000분의 60

가. 수산물종합센터 전체(본관동, 건어동)를 포함하여 임대료 산출기준을 정하고 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징수한다.

나. 점포 공용면적은 점포 전용면적의 30%를 적용한다.

다. 점포별 부지면적은 총 건축면적 × (점포별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건물에서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을 적용한다.

라. 점포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군 산 시 장



2022년 11월 9일

군산시 조례 제2000호

## 군산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군산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통협력공간”이란 군산시 내 지역사회혁신활동을 확산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운영하는 군산시 대학로 308 건물 (1층·2층) 및 이에 부속하였거나 관련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2. “지역사회혁신활동”이란 주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에서의 협력 등 혁신적인 방법과 절차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

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지역사회문제”란 군산시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 지역사회 활성화, 지역공동체의 복원 등 그 해결을 위해 민·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회 현안을 말한다.
4. “소통협력센터”란 소통협력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지역사회혁신활동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활동을 추진 및 지원하기 위하여 군산시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기능 및 시설)** ① 소통협력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해 조성 및 운영된다.

1. 주민 주도 지역사회혁신활동 확산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의 업무 공간
2. 지역사회혁신활동의 확산 및 지역사회문제의 해결 등을 위한 군산시 내·외의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의 상호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공간
3. 지역사회혁신활동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의 기획·수행·성과 등에 관한 연구 및 실험, 체험·홍보·행사·전시 공간 등
4. 그 밖에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사회혁신활동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사회적 가치의 실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사업, 활동 공간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소통협력공간에 포함하

여 조성·운영할 수 있다.

**제5조(소통협력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소통협력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소통협력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 1. 지역사회혁신활동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그 성과의 확산 등을 위한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연구 및 실험, 체험·홍보·행사·전시 등에 관한 지원 사무
- 2. 지역사회혁신활동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등에 관한 우수사례 및 인재의 발굴, 연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확산 지원 등에 관한 사무
- 3. 소통협력공간 내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무
- 4. 그 밖에 소통협력공간의 활성화에 있어 필요한 사무

③ 시장은 소통협력공간의 관리·운영 및 센터가 제2항의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적절한 관리·운영 및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소통협력센터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제5조제2항 사무를 민간의 창의와 자율에 기초하여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상호 대등한 당사자로서 협력(이하 “민관협력”이라 한다)하는 방식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사회혁신사업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등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이 인정되는 민간 기관이나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군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단, 이들 법령과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에 따를 수 있다.

③ 센터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소통협력공간의 운영 및 센터의 사무수행 등에 있어 창의와 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민관협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관리·운영,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산시 소통협력공간 운영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심의·의결한다.

1. 소통협력공간 및 센터 운영, 지역사회혁신사업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등을 위한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2.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계획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예·결산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혁신사업 및 사회문제 해결 프로그램의 발굴, 교육·홍보, 평가, 자문 등에 관한 주요 사항
5. 그 밖에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관리·운영, 센터의 운영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수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관리·운영, 센터의 운영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단, 위촉직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나, 추천 또는 모집위원 중 지역 한계 상 구성이 안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당연직 위원: 혁신·사회적 경제·문화·도시재생 등 관련 부서의 국장급 공무원 1명
- 2. 위촉직 위원: 전라북도 내 지역사회혁신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민관협력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은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보궐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역사회혁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등 비위 사실이 적발된 경우
- 4. 그 밖에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품위 손상, 회의에의 장기 불참 등이 적발된 경우

**제9조(제척·회피 등)** ① 협의회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친족(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이 당사자가 되는 안건
- 2. 위원이나 그 배우자, 친족(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이 속한 입주기관 등과 사업·프로그램 등에 관한 안건
- 3. 위원이나 그 배우자 본인, 또는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사안과 관련되는 안건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연1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정기회 또는 임시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그 협의 및 심의·의결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고,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의 위촉위원 및 자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회의 설치 등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소통협력공간의 활성화 및 지역사회혁신사

업의 수행, 지역사회문제의 해결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지역사회혁신사업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사업, 소통협력공간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소요비용 지원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이 조례 등에 근거하여 재정지원을 받아 취득한 재산이나 권리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양도·교환·대여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려는 경우 등에는 시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센터 또는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 입주기관 등에 대하여 센터의 업무 및 위탁사무의 처리, 제11조에 따른 재정적·행정적 지원의 사용 등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점검 결과 센터 또는 수탁기관의 업무 및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조치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 및 조례 등을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소통협력공간 및 관련 물품 등을 반환하고, 위탁료, 사용료, 지원금 등을 모두 정산·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민간부문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소통협력공간 및 지역사회혁신사업, 지역사회문제 해결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부문,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통협력공간 및 지역사회혁신사업, 지역사회문제 해결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유관부서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 유관부서가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종합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소통협력공간에서 진행된 지역사회혁신사업, 지역사회문제 해결사업 및 센터의 수행사무 등의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는 필요한 경우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한 후 군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군 산 시 장



2022년 11월 9일

군산시 조례 제2001호

##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아동”이란 을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보호자”란 을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아동학대”란 을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으로, “폭력 또는 가혹 행위”를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피해아동”이란 을 “피해아동”이란 법 제3호제8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이란 아동복지”를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7. “학대피해아동쉼터”란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하여 법 제52조제1

항4호 및 제53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산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학대”를 “시장은 학대”로, “부모를 포함한”을 “부모를 포함한”으로, “원조와”를 “지원과”로, “사업을 행”을 “사업을 수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 또는 시 아동학대 전담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동복지법」 제25조 2항”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수사기관 또는 시 아동학대 전담부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신고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중 “교육청, 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보호관련기관”을 “교육지원청, 보육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치료·보호, 부모 상담을 포함한 2차 학대를 방지하기”를 “치료·보호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중 “전문기관”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제25조 2항의”를 “제2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문기관”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li> <li>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li> <li>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li> <li>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 ----- -----.</li> <li>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 ----- ----- 폭력</li> </ol>

현 행	개 정 안
<p>·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p>	<p><u>이나 가혹행위</u>----- ----- -----.</p>
<p>4. <u>“피해아동”</u>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p>	<p>4. <u>“피해아동”</u>이란 법 제3호제8호에 따른 ----- -.</p>
<p>5. <u>“아동복지시설”</u>이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p>	<p>5. -----이란 ----- ----- -.</p>
<p>6. <u>“아동복지전담기관”</u>이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u>“아동보호전문기관”</u> 과 제48조에 따른 <u>“가정위탁지원센터”</u> 를 말한다.</p>	<p>6. <u>“아동보호전문기관”</u>이란 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p>
<p><u>&lt;신 설&gt;</u></p> <p>제3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p> <p>1. <u>아동을 매매하는 행위</u></p>	<p>7. <u>“학대피해아동쉼터”</u>란 피해 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하여 법 제52조제1항4호 및 제53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p>
<p><u>&lt;삭 제&gt;</u></p>	<p><u>&lt;삭 제&gt;</u></p>

현 행	개 정 안
2.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4.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책무) ① <u>군산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u></p> <p>1. <u>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u></p> <p>2. <u>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u></p> <p>3. <u>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의 구축 및 운영</u></p> <p>② <u>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학대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조사 및 가정에 대한 원조와 기타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u></p> <p>③ <u>시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와 감독을 연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u></p>	<p>제4조(책무) ① <u>시장</u>-----</p> <p>-----</p> <p>-----</p> <p>---.</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② <u>시장은 학대</u> -----</p> <p>----- 부</p> <p><u>모를 포함한</u> -----</p> <p>----- <u>지원과</u> -----</p> <p>----- <u>사업을 수행</u>-----</p> <p>-----.</p> <p>&lt;삭 제&gt;</p>
<p>제5조(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자의 의무) ① <u>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u></p>	<p>제5조(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자의 의무) ① -----</p> <p>----- 「<u>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u>」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 또는 시 <u>아동학대 전담부서</u>-----.</p>

현 행	개 정 안
<p>② 「아동복지법」 제25조 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p> <p>&lt;신 설&gt;</p> <p>제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u>교육청, 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보호관련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보호, 부모상담을 포함한 2차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 기관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u></p> <p>제7조(지역연대의 설치) ①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u>군산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u>」(이하 “<u>지역연대</u>”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p>	<p>② 「<u>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u>」 제10조제2항----- 수사기관 또는 시 아동학대 전담부서-----.</p> <p>③ 제1항 및 제2항 신고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 <u>교육지원청, 보육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u>-----</p> <p>--- <u>치료·보호를</u> -----</p> <p>-----.</p> <p>&lt;삭 제&gt;</p>

현행	개정안
<p>② 제1항에 따라 지역연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u>군산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u>」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8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② (생략)</p> <p>③ <u>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지역연대에 보고를 하고, 자문을 받아야 한다.</u></p> <p>④ (생략)</p> <p>제10조(교육) ① (생략)</p> <p>② 시장은 <u>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복지법」 제25조 2항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u></p> <p>③ 시장은 <u>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아동의 연령에 따른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u></p> <p>제13조(아동정책 모니터링) 시장은 <u>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 및 아동정책과 사업에 대한 시행 및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을 연1</u></p>	<p>제8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0조(교육)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아동보호전문기관</u>----- ----- <u>제26조에 따른</u> ----- ----- ----- -----.</p> <p>③ ----- <u>아동보호전문기관</u>----- ----- ----- -----.</p> <p>&lt;삭제&gt;</p>

현 행	개 정 안
<u>회 실시하며, 그 결과를 지역연대에 보고하고 처리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u>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군 산 시 장



2022년 11월 9일

군산시 조례 제2002호

##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출산지원금과 출산축하금” 을 “출산지원금” 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 본문 중 “지원금 및 축하금” 을 “지원금”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30만원, 둘째아는 100만원, 셋째아는 300만원, 넷째아는 500만원” 을 “100만원, 둘째아는 200만원, 셋째아는 400만원, 넷째아는 600만원” 으로, “1,000만원” 을 “1,500만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30만원” 을 “100만원”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0만원” 을 “200만원”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00만원 지급” 을 “200만원 지급” 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200만원” 을 “300만원” 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400만원” 을 “500만원” 으로, “150만원” 을 “250만원”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원금 및 축하금” 을 “지원금”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금” 을 “출산지원금” 으로, “지원금 및 축하금” 을 “지원금”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경우, 읍·면·동장은 축하금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

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을 “경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금 및 축하금을” 을 “지원금을” 로, “지원금 및 축하금 지급대장” 을 “지원금 지급대장” 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출산지원금 및 축하금 신청·접수대장” 을 “출산지원금신청·접수대장”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을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른 출산지원금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출생한 신생아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를 이 조례 별지 중 “별지 제1호 서식”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1호 서식(<개정2023.1.1.>))

(3쪽 중 1쪽)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대리 신청인) 정보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산모) 정보

출생자 정보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출산자와의 관계

지자체 서비스: 출산 지원금, 산후건강관리(산후조리)비용, 육아용품비

서비스명, 신청 구분, 전국 공통 서비스: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다자녀 (3명이상), 다자녀 (2명이상)

국민행복카드, 보호자(카드보유자): BC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급여 계좌: 성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 영아수당(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영아수당(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20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가족관계등록담당자 확인, 출생신고(주민등록) 및 가족관계사항, 부와 모의 거주기간, 다자녀, 확인자

(3쪽 중 2쪽)

<b>신청인 제출서류</b>	1.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원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4. 조제분류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실입소 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사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류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	--

<b>담당공무원 확인사항</b>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	--

<b>참고사항</b>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	---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출산 가구 전기로 결감과 다자녀 전기로 결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로 결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해산급여 대상여부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해산급여 대상여부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첫난임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류 지원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해당 카드사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 제2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 지원제공 계약 및 본인확인 업무, 이용권 적정급여 관리업무,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안내 및 확인(상당전화(TM)), 이용권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 제공
    - 이용권의 생성 및 본인부담금 청구 등 업무, 이용권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또는 결제내역 송·수신(SMS), 기저귀 및 조제분류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 제공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 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건강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 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건강 검진 적용이 됩니다.
    -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건강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에스알에서 제공하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회원탈퇴시까지, 제공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가족관계, 회원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 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서비스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서 정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 좌석이 조기 매진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의 영업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되거나 운영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당일에는 할인권 예약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승차권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승차권을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금액 회수 및 별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금액 회수, 부가운임 수수 및 할인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다자녀 지원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처리를 위해 다자녀 여부 등의 가족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별 서비스 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영아수당(현금)·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자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호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영아수당(현금)급여를 신청한 경우, 연령 도래시(만2세) 가정양육수당급여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 출산장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의 출산·양육에 경제적 도움을 주는 등 저출산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u>출산지원금과 출산축하금</u>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 <u>출산지원금</u> ----- ----- -----.</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생 략)</p> <p>3. “<u>출산축하금</u>” (이하 “<u>축하금</u>” 이라 한다)이란 <u>자녀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u></p> <p>4. (생 략)</p>	<p>제2조(용어의 정의) ----- -----.</p> <p>1. · 2.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p>4. (현행과 같음)</p>
<p>제3조(지원대상) <u>지원금 및 축하금</u> 지원대상은 군산시(이하 “시” 라고 한다)에 출생 신고한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거주</p>	<p>제3조(지원대상) <u>지원금</u> ----- ----- ----- -----.</p>

현 행	개 정 안
<p>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지난 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된다.</p>	<p>-----.</p>
<p>제4조(지원내용과 기준) ①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아는 <u>30만원</u>, 둘째아는 <u>100만원</u>, 셋째아는 <u>300만원</u>, 넷째아는 <u>500만원</u>, 다섯째아 이상은 <u>1,000만원</u>으로 한다.</p>	<p>제4조(지원내용과 기준) ①----- ----- <u>100만원</u>, 둘째아는 <u>200만원</u>, 셋째아는 <u>400만원</u>, 넷째아는 <u>600만원</u>----- --- <u>1,500만원</u>-----.</p>
<p>②제1항의 지원금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급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에는 지급하지 않는다.</p>	<p>②----- -----. ----- -----.</p>
<p>1. 첫째아 출산가정 : <u>30만원</u> 일시금 지급</p>	<p>1. ----- <u>100만원</u> ----- --</p>
<p>2. 둘째아 출산가정 : <u>100만원</u> 일시금 지급</p>	<p>2. ----- <u>200만원</u> ----- ---</p>
<p>3. 셋째아 출산가정 : 태어난 해 <u>100만원</u> 지급 후, 1년경과시마다 <u>100만원</u>씩 2년간 지급</p>	<p>3. ----- <u>200만원</u> 지급 ----- -----</p>
<p>4. 넷째아 출산가정 : 태어난 해 <u>200만원</u> 지급 후, 1년경과시마다 <u>100만원</u>씩 3년간 지급</p>	<p>4. ----- <u>300만원</u> ----- -----</p>
<p>5. 다섯째아 이상 출산가정 : 태어난 해 <u>400만원</u> 지급 후, 1년경과시마다 <u>150만원</u>씩 4년간 지급</p>	<p>5. ----- <u>500만원</u> ----- -----<u>250만원</u>-----</p>
<p>③ · ④ (생략)</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⑤<u>축하금은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출생아 한명당 예산의 범위에서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지원한다.</u></p>	<p>&lt;삭 제&gt;</p>
<p>⑥<u>출산축하금 지원기준은 2019. 1. 1일부터 출생한 신생아로 한다.</u></p>	<p>&lt;삭 제&gt;</p>
<p>제5조(지원신청) ①<u>지원금 및 축하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u></p>	<p>제5조(지원신청) ①<u>지원금</u> ----- ----- -----.</p>
<p>② (생 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지원절차) ①<u>관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 서식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금 신청·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지원금 및 축하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한다.</u></p>	<p>제6조(지원절차) ①----- ----- 출 산지원금 ----- ----- ----- 지원금 ----- -----.</p>
<p>② (생 략)</p>	<p>② (현행과 같음)</p>
<p>③<u>축하금의 경우 관할 읍·면·동장은 신청자가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별지 제3호 서식 출산축하금 지급대장에 기재 후 축하금을 지급하고, 매월 지원한 축하금 실적에 대해 출산축하금 지급대장과</u></p>	<p>&lt;삭 제&gt;</p>

현 행	개 정 안
<p><u>수불대장을 작성하여 다음 달 3일 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u></p> <p>제7조(환수조치) ①시장은 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u>경우, 읍·면·동장은 축하금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u></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u>지원금 및 축하금을 환수하였을 때에는 지원금 및 축하금 지급대장에 그 환수 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u></p> <p>제8조(대장관리) ①읍·면·동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 략)</li> <li>2. <u>출산지원금 및 축하금 신청·접수대장(별지 제2호 서식)</u></li> <li>3. <u>출산축하금 지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u></li> <li>4. <u>출산축하금 수불대장(별지 제4호 서식)</u></li> </ol> <p>②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p>	<p>제7조(환수조치) ①----- ----- ----- <u>경우</u> ----- ----- -----.</p> <p>②----- <u>지원금을</u> --- ----- <u>지원금 지급</u> <u>대장</u>----- -----.</p> <p>제8조(대장관리) ①-----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u>출산지원금신청·접수대장</u>----</li> <li>-----</li> </ol>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②-----</p>

현 행	개 정 안
<p>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1. (생 략)</p> <p>2. <u>출산축하금 배부 및 수령대장</u> (<u>별지 제6호 서식</u>)</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군 산 시 장



2022년 11월 9일

군산시 조례 제2003호

##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사용검사일**” 을 “**사용승인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호에**” 를 “**1에**” 로 한다.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세대 이상의 동이 다수 있는 경우에는 동당 600만원으로 산출한 금액과 별표 1에 의한 전체 세대수에 따른 지원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단, 「공동주택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제2호와**” 를 “**2와**” 로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건설하는**” 을 “**건설한**” 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2/3 또는 3/4 이상**” 을 “**2/3이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조금**” 을 “**보조금(국·도비 포함)**” 으로 하고 “**사업은 제**

외한다” 를 “사업 및 경비근로자 등 노동자 업무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은 제외한다” 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제3호의” 를 “3의” 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사업자 선정방법) 관리주체는 제8조에 및 제9조에 따른 총사업비(자부담 포함)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입찰에 의한 경쟁입찰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군산시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2회(재공고) 유찰시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별표 제1호서식 ~ 제3호서식의 제목을 별표1 ~ 3으로 하고 내용은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별지 제1호 서식]” 을 “[별지 제1호서식]” 으로 하고 “사용검사일” 을 “사용승인일” 로 “제11조 2항” 을 “제11조제2항” 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별지 제2호 서식]” 을 “[별지 제2호서식]” 으로 하고 “사용검사일” 을 “사용승인일” 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별지 제3호 서식]” 을 “[별지 제3호서식]” 으로 하고 “인감증명서 포함” 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별지 제4호 서식]” 을 “[별지 제4호서식]” 으로 하고 “2/3또는 3/4이상” 을 “2/3이상” 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별지 제5호 서식]” 을 “[별지 제5호서식]” 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별지 제6호 서식]” 을 “[별지 제6호서식]” 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별지 제7호 서식]” 을 “[별지 제7호서식]” 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별지 제8호 서식]” 을 “[별지 제8호서식]” 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별지 제9호 서식]” 을 “[별지 제9호서식]” 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별지 제10호 서식]” 을 “[별지 제10호서식]” 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별지 제11호 서식]” 을 “[별지 제11호서식]” 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별지 제12호 서식]” 을 “[별지 제12호서식]” 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별지 제13호 서식]” 을 “[별지 제13호서식]” 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별지 제14호 서식]” 을 “[별지 제14호서식]” 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별지 제15호 서식]” 을 “[별지 제15호서식]” 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별지 제16호 서식]” 을 “[별지 제16호서식]” 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별지 제17호 서식]” 을 “[별지 제17호서식]” 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별지 제18호 서식]” 을 “[별지 제18호서식]” 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별지 제19호 서식]” 을 “[별지 제19호서식]” 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별지 제20호 서식]” 을 “[별지 제20호서식]” 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① 지원 대상은 <u>사용검사일로</u> 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으로서 전용면적 60㎡이하(250세대미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이상인 단지에 한한다. 단,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적용을 받은 단지의 경우 공기업 소유를 제외한 주택 소유자 비율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단지별 지원금액은 3,000만원 이하로써 세대수 별 지원금액, 단지 구분 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제1호에 따른다.</p> <p>&lt;신설&gt;</p>	<p>제8조(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① ----- <u>사용승인일</u>-----</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p> <p>----- 1에 -----.</p> <p>④ <u>20세대 이상의 동이 다수 있는 경우에는 동당 600만원으로 산출한 금액과 별표 1에 의한 전체 세대수에 따른 지원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u></p>

현 행	개 정 안
<p>제9조(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별표 제 2호와 같다.</p>	<p><u>할 수 있다. 단, 「공동주택 관리 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u></p> <p>제9조(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① ----- ----- ----- ----- ----- 2와 같다.</p>
<p>제10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생 략) ② 제1항의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 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고 시장이 현지조사 및 구조안전성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으로 한다. 다만, 위험 정도가 심각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경과연수를 예외로 할 수 있으며 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및 민간이 <u>건설하</u> 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p>	<p>제10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u>건설한</u> ----- -----.</p>
<p>제11조(지원 사업 신청) ① (생 략) ② 제1항에 의한 지원 사업을 신</p>	<p>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지원 사업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p>

현 행	개 정 안
<p>청하고자 하는 관리 주체는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p> <p>1.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 1부(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입주자의 <u>2/3 또는 3/4 이상</u> 동의서)</p> <p>2. (생략)</p> <p>③ <u>보조금</u>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5년간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제외한다.</p> <p>제12조(지원 대상 결정) ① 제11조 제2항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시장은 별표 제3호의 평가 기준에 따라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결정한다.</p> <p>&lt;신설&gt;</p>	<p>----- ----- ----- ----- -----.</p> <p>1. ----- ----- ----- <u>2/3이상</u> ----- -----</p> <p>2. (현행과 같음)</p> <p>③ <u>보조금(국·도비 포함)</u> ----- ----- 산 업 및 경비근로자 등 노동자 업무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은 제외한 다.</p> <p>제12조(지원 대상 결정) ① ----- ----- ----- <u>3의</u> ----- ----- --.</p> <p>제13조의2(사업자 선정방법) 관리주 체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총사</p>

현 행	개 정 안
	<p><u>업비(자부담 포함)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군산시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2회(재공고) 유찰시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u></p>

### 신·구조문 대비표(별지 서식)

현 행	개 정 안																																																																																																																																																																																																																																																																																																																																														
<p><b>별지 제1호서식</b></p> <p><small>[별지 제1호서식]</small> <b>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신청서</b></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h colspan="10">신청자 및 단지현황</th></tr> <tr><td rowspan="2">신청자</td><td>성명</td><td colspan="7"></td><td>전화번호</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8"></td></tr> <tr><td rowspan="2">공동주택 단지현황</td><td>단지명</td><td colspan="5"></td><td>사업종류</td><td colspan="3"></td></tr> <tr><td>소재지</td><td colspan="7"></td></tr> <tr><td rowspan="2">건물면적별 수량</td><td>층</td><td>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세대</td><td>세대</td><td>세대</td><td>세대</td><td>세대</td><td>세대</td><td>세대</td><td>세대</td><td>세대</td></tr> <tr><th colspan="10">사업신청내용</th></tr> <tr><td>단위사업명</td><td colspan="9"></td></tr> <tr><td>사업내용 및 대상시설물개</td><td colspan="9"></td></tr> <tr><td rowspan="2">사업비</td><td>총</td><td>계</td><td>원</td><td>시 보조금</td><td>원</td><td>자부담금</td><td colspan="3">원</td></tr> <tr><td>사업량</td><td colspan="8"></td></tr> <tr><td>사업기간</td><td colspan="9">년 월 일 ~ 년 월 일</td></tr> <tr><td colspan="10">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1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td></tr> <tr><td colspan="10">신청인 : 임주자대표 (인)</td></tr> <tr><td colspan="10">군 산 시 장 귀하</td></tr> <tr><td colspan="10"><small>- 구비서류 : 1. 임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동의서(임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단지) 2. 사업계획서 (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내역서 등)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small></td></tr> </table>	신청자 및 단지현황										신청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공동주택 단지현황	단지명						사업종류				소재지								건물면적별 수량	층	계	㎡	㎡	㎡	㎡	㎡	㎡	㎡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사업신청내용										단위사업명										사업내용 및 대상시설물개										사업비	총	계	원	시 보조금	원	자부담금	원			사업량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1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임주자대표 (인)										군 산 시 장 귀하										<small>- 구비서류 : 1. 임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동의서(임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단지) 2. 사업계획서 (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내역서 등)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small>										<p><b>별지 제1호서식</b></p> <p><small>[별지 제1호서식]</small> <b>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신청서</b></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h colspan="10">신청자 및 단지현황</th></tr> <tr><td rowspan="2">신청자</td><td>성명</td><td colspan="7"></td><td>전화번호</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8"></td></tr> <tr><td rowspan="2">공동주택 단지현황</td><td>단지명</td><td colspan="5"></td><td>사업종류</td><td colspan="3"></td></tr> <tr><td>소재지</td><td colspan="7"></td></tr> <tr><td rowspan="2">건물면적별 수량</td><td>층</td><td>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세대</td><td>세대</td><td>세대</td><td>세대</td><td>세대</td><td>세대</td><td>세대</td><td>세대</td><td>세대</td></tr> <tr><th colspan="10">사업신청내용</th></tr> <tr><td>단위사업명</td><td colspan="9"></td></tr> <tr><td>사업내용 및 대상시설물개</td><td colspan="9"></td></tr> <tr><td rowspan="2">사업비</td><td>총</td><td>계</td><td>원</td><td>시 보조금</td><td>원</td><td>자부담금</td><td colspan="3">원</td></tr> <tr><td>사업량</td><td colspan="8"></td></tr> <tr><td>사업기간</td><td colspan="9">년 월 일 ~ 년 월 일</td></tr> <tr><td colspan="10">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1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td></tr> <tr><td colspan="10">신청인 : 임주자대표 (인)</td></tr> <tr><td colspan="10">군 산 시 장 귀하</td></tr> <tr><td colspan="10"><small>- 구비서류 : 1. 임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동의서(임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단지) 2. 사업계획서 (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내역서 등)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small></td></tr> </table>	신청자 및 단지현황										신청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공동주택 단지현황	단지명						사업종류				소재지								건물면적별 수량	층	계	㎡	㎡	㎡	㎡	㎡	㎡	㎡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사업신청내용										단위사업명										사업내용 및 대상시설물개										사업비	총	계	원	시 보조금	원	자부담금	원			사업량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1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임주자대표 (인)										군 산 시 장 귀하										<small>- 구비서류 : 1. 임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동의서(임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단지) 2. 사업계획서 (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내역서 등)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small>									
신청자 및 단지현황																																																																																																																																																																																																																																																																																																																																															
신청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공동주택 단지현황	단지명						사업종류																																																																																																																																																																																																																																																																																																																																								
	소재지																																																																																																																																																																																																																																																																																																																																														
건물면적별 수량	층	계	㎡	㎡	㎡	㎡	㎡	㎡	㎡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사업신청내용																																																																																																																																																																																																																																																																																																																																															
단위사업명																																																																																																																																																																																																																																																																																																																																															
사업내용 및 대상시설물개																																																																																																																																																																																																																																																																																																																																															
사업비	총	계	원	시 보조금	원	자부담금	원																																																																																																																																																																																																																																																																																																																																								
	사업량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1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임주자대표 (인)																																																																																																																																																																																																																																																																																																																																															
군 산 시 장 귀하																																																																																																																																																																																																																																																																																																																																															
<small>- 구비서류 : 1. 임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동의서(임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단지) 2. 사업계획서 (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내역서 등)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small>																																																																																																																																																																																																																																																																																																																																															
신청자 및 단지현황																																																																																																																																																																																																																																																																																																																																															
신청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공동주택 단지현황	단지명						사업종류																																																																																																																																																																																																																																																																																																																																								
	소재지																																																																																																																																																																																																																																																																																																																																														
건물면적별 수량	층	계	㎡	㎡	㎡	㎡	㎡	㎡	㎡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사업신청내용																																																																																																																																																																																																																																																																																																																																															
단위사업명																																																																																																																																																																																																																																																																																																																																															
사업내용 및 대상시설물개																																																																																																																																																																																																																																																																																																																																															
사업비	총	계	원	시 보조금	원	자부담금	원																																																																																																																																																																																																																																																																																																																																								
	사업량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1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임주자대표 (인)																																																																																																																																																																																																																																																																																																																																															
군 산 시 장 귀하																																																																																																																																																																																																																																																																																																																																															
<small>- 구비서류 : 1. 임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동의서(임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단지) 2. 사업계획서 (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내역서 등)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small>																																																																																																																																																																																																																																																																																																																																															
<p><b>별지 제2호서식</b></p> <p><small>[별지 제2호서식]</small> <b>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착수신고서</b></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h colspan="10">신청자 및 단지현황</th></tr> <tr><td rowspan="2">신청자</td><td>성명</td><td colspan="7"></td><td>전화번호</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8"></td></tr> <tr><td rowspan="2">공동주택 단지현황</td><td>단지명</td><td colspan="5"></td><td>사업종류</td><td colspan="3"></td></tr> <tr><td>소재지</td><td colspan="7"></td></tr> <tr><td rowspan="2">건물면적별 수량</td><td>층</td><td>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세대</td><td>세대</td><td>세대</td><td>세대</td><td>세대</td><td>세대</td><td>세대</td><td>세대</td><td>세대</td></tr> <tr><th colspan="10">사업신청내용</th></tr> <tr><td>단위사업명</td><td colspan="9"></td></tr> <tr><td>사업내용 및 대상시설물개</td><td colspan="9"></td></tr> <tr><td rowspan="2">사업비</td><td>총</td><td>계</td><td>원</td><td>시 보조금</td><td>원</td><td>자부담금</td><td colspan="3">원</td></tr> <tr><td>사업량</td><td colspan="8"></td></tr> <tr><td>사업기간</td><td colspan="9">년 월 일 ~ 년 월 일</td></tr> <tr><td colspan="10">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td></tr> <tr><td colspan="10">신청인 : 임주자대표 (인)</td></tr> <tr><td colspan="10">군 산 시 장 귀하</td></tr> <tr><td colspan="10"><small>- 구비서류 1. 도급계약서(내역서, 사업지침(특종 포함) 사본) 1부, 2. 도청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군산시 경관위원회가 검토 승인된 바를 세척계획안 1부.</small></td></tr> </table>	신청자 및 단지현황										신청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공동주택 단지현황	단지명						사업종류				소재지								건물면적별 수량	층	계	㎡	㎡	㎡	㎡	㎡	㎡	㎡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사업신청내용										단위사업명										사업내용 및 대상시설물개										사업비	총	계	원	시 보조금	원	자부담금	원			사업량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임주자대표 (인)										군 산 시 장 귀하										<small>- 구비서류 1. 도급계약서(내역서, 사업지침(특종 포함) 사본) 1부, 2. 도청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군산시 경관위원회가 검토 승인된 바를 세척계획안 1부.</small>										<p><b>별지 제2호서식</b></p> <p><small>[별지 제1호서식]</small> <b>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신청서</b></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h colspan="10">신청자 및 단지현황</th></tr> <tr><td rowspan="2">신청자</td><td>성명</td><td colspan="7"></td><td>전화번호</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8"></td></tr> <tr><td rowspan="2">공동주택 단지현황</td><td>단지명</td><td colspan="5"></td><td>사업종류</td><td colspan="3"></td></tr> <tr><td>소재지</td><td colspan="7"></td></tr> <tr><td rowspan="2">건물면적별 수량</td><td>층</td><td>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세대</td><td>세대</td><td>세대</td><td>세대</td><td>세대</td><td>세대</td><td>세대</td><td>세대</td><td>세대</td></tr> <tr><th colspan="10">사업신청내용</th></tr> <tr><td>단위사업명</td><td colspan="9"></td></tr> <tr><td>사업내용 및 대상시설물개</td><td colspan="9"></td></tr> <tr><td rowspan="2">사업비</td><td>총</td><td>계</td><td>원</td><td>시 보조금</td><td>원</td><td>자부담금</td><td colspan="3">원</td></tr> <tr><td>사업량</td><td colspan="8"></td></tr> <tr><td>사업기간</td><td colspan="9">년 월 일 ~ 년 월 일</td></tr> <tr><td colspan="10">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td></tr> <tr><td colspan="10">신청인 : 임주자대표 (인)</td></tr> <tr><td colspan="10">군 산 시 장 귀하</td></tr> <tr><td colspan="10"><small>- 구비서류 : 1. 임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동의서(임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단지) 2. 사업계획서 (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내역서 등)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small></td></tr> </table>	신청자 및 단지현황										신청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공동주택 단지현황	단지명						사업종류				소재지								건물면적별 수량	층	계	㎡	㎡	㎡	㎡	㎡	㎡	㎡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사업신청내용										단위사업명										사업내용 및 대상시설물개										사업비	총	계	원	시 보조금	원	자부담금	원			사업량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임주자대표 (인)										군 산 시 장 귀하										<small>- 구비서류 : 1. 임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동의서(임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단지) 2. 사업계획서 (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내역서 등)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small>									
신청자 및 단지현황																																																																																																																																																																																																																																																																																																																																															
신청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공동주택 단지현황	단지명						사업종류																																																																																																																																																																																																																																																																																																																																								
	소재지																																																																																																																																																																																																																																																																																																																																														
건물면적별 수량	층	계	㎡	㎡	㎡	㎡	㎡	㎡	㎡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사업신청내용																																																																																																																																																																																																																																																																																																																																															
단위사업명																																																																																																																																																																																																																																																																																																																																															
사업내용 및 대상시설물개																																																																																																																																																																																																																																																																																																																																															
사업비	총	계	원	시 보조금	원	자부담금	원																																																																																																																																																																																																																																																																																																																																								
	사업량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임주자대표 (인)																																																																																																																																																																																																																																																																																																																																															
군 산 시 장 귀하																																																																																																																																																																																																																																																																																																																																															
<small>- 구비서류 1. 도급계약서(내역서, 사업지침(특종 포함) 사본) 1부, 2. 도청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군산시 경관위원회가 검토 승인된 바를 세척계획안 1부.</small>																																																																																																																																																																																																																																																																																																																																															
신청자 및 단지현황																																																																																																																																																																																																																																																																																																																																															
신청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공동주택 단지현황	단지명						사업종류																																																																																																																																																																																																																																																																																																																																								
	소재지																																																																																																																																																																																																																																																																																																																																														
건물면적별 수량	층	계	㎡	㎡	㎡	㎡	㎡	㎡	㎡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사업신청내용																																																																																																																																																																																																																																																																																																																																															
단위사업명																																																																																																																																																																																																																																																																																																																																															
사업내용 및 대상시설물개																																																																																																																																																																																																																																																																																																																																															
사업비	총	계	원	시 보조금	원	자부담금	원																																																																																																																																																																																																																																																																																																																																								
	사업량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임주자대표 (인)																																																																																																																																																																																																																																																																																																																																															
군 산 시 장 귀하																																																																																																																																																																																																																																																																																																																																															
<small>- 구비서류 : 1. 임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동의서(임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단지) 2. 사업계획서 (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내역서 등)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small>																																																																																																																																																																																																																																																																																																																																															

현행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정산서

보조사업명 :  
 사업명 :  
 사업위치 :  
 사업기간 : 20 년 월 ~ 20 년 월  
 사업비 : 총 원  
 사업내용 :  
 정산내역 [단위 : 원]

단지명 및 대표자	사업비			보조금 반납액
	합계	보조금	자부담	
	원	원	원	원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보조사업자

[단지명]

[대표자]

(인)

군산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보조금 청구서 및 보조금 지급 위임장 (신청자 인감증명서 포함), 공사일지 통장사본 등 각1부
2. 공사완료확인서 (공공의물서 또는 입주인 2/3이상 동의서 등), 준공제 및 준공검사항, 전·후 사진첩 등 각1부
3. 정산내역관련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지부담이체증, 내역서 등), 하자보수보증증권 등 각1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면)

공동주택 공동채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단위	공동주택명		연락처	
	주소		동수/세대수	동 세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일	년 월 일	사용일	년 월 일

지원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단위:천원)			사업기간	
	총계	자부담	지원신청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총계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또는 관리인)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의결기구 대표)

(인)

공동채 활성화 단재장

(인)

군산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의결기구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 \* 단, 입주자대표회의나 의결기구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인 2/3또는 3/4이상 동의서
2.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3.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4.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개정안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정산서

보조사업명 :  
 사업명 :  
 사업위치 :  
 사업기간 : 20 년 월 ~ 20 년 월  
 사업비 : 총 원  
 사업내용 :  
 정산내역 [단위 : 원]

단지명 및 대표자	사업비			보조금 반납액
	합계	보조금	자부담	
	원	원	원	원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보조사업자

[단지명]

[대표자]

(인)

군산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보조금 청구서 및 보조금 지급 위임장 (신청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공사일지 통장사본 등 각1부
2. 공사완료확인서 (공공의물서 또는 입주인 2/3이상 동의서 등), 준공제 및 준공검사항, 전·후 사진첩 등 각1부
3. 정산내역관련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지부담이체증, 내역서 등), 하자보수보증증권 등 각1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면)

공동주택 공동채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단위	공동주택명		연락처	
	주소		동수/세대수	동 세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일	년 월 일	사용일	년 월 일

지원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단위:천원)			사업기간	
	총계	자부담	지원신청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총계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또는 관리인)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의결기구 대표)

(인)

공동채 활성화 단재장

(인)

군산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의결기구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 \* 단, 입주자대표회의나 의결기구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인 2/3이상 동의서
2.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3.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4.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현 행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 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

신청인	아파트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input type="checkbox"/> 입주자 <input type="checkbox"/> 사용자 <input type="checkbox"/> 관리주체 <input type="checkbox"/> 입주자대표회의 <input type="checkbox"/> 리모델링조합				
피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input type="checkbox"/> 입주자 <input type="checkbox"/> 사용자 <input type="checkbox"/> 관리주체 <input type="checkbox"/> 입주자대표회의 <input type="checkbox"/> 리모델링조합			
조정신청 내용				
분쟁발생 사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 및 군산시공동주택관리조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div> <b>군산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귀하</b>				
첨부서류 : 1. 대표자신청서류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개 정 안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

신청인	아파트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input type="checkbox"/> 입주자 <input type="checkbox"/> 사용자 <input type="checkbox"/> 관리주체 <input type="checkbox"/> 입주자대표회의 <input type="checkbox"/> 리모델링조합				
피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input type="checkbox"/> 입주자 <input type="checkbox"/> 사용자 <input type="checkbox"/> 관리주체 <input type="checkbox"/> 입주자대표회의 <input type="checkbox"/> 리모델링조합			
조정신청 내용				
분쟁발생 사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 및 군산시공동주택관리조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div> <b>군산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귀하</b>				
첨부서류 : 1. 대표자신청서류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결의결서**

조정진행					
신청인	아파트명				
	성명	전화번호			
	주소				
피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 내용					
조정결의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 및 군산시공동주택관리조례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b>군산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귀하</b> </div>					
직위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결의결서**

조정진행					
신청인	아파트명				
	성명	전화번호			
	주소				
피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 내용					
조정결의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 및 군산시공동주택관리조례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b>군산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귀하</b> </div>					
직위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현 행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 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의결통지서				
조정건명				
신청인	아파트명			
	성명		전화번호	
피신청인	주소			
	성명		전화번호	
신청일자	주소			
	조정일자			
조정신청내용				
조정의결내용				
<p>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 및 군산시공동주택관리조례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b>군산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b></p>				

개 정 안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의결통지서				
조정건명				
신청인	아파트명			
	성명		전화번호	
피신청인	주소			
	성명		전화번호	
신청일자	주소			
	조정일자			
조정신청내용				
조정의결내용				
<p>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 및 군산시공동주택관리조례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b>군산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b></p>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조정건명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조정신청내용				
출석대상자	성명	주소	연락처	비고 (참고인, 당사자)
출석일자	년 월 일 (○○:○○)			
출석장소				
<p>군산시공동주택관리조례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 하오니 군산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b>군산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b></p> <p><small>※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small></p>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조정건명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조정신청내용				
출석대상자	성명	주소	연락처	비고 (참고인, 당사자)
출석일자	년 월 일 (○○:○○)			
출석장소				
<p>군산시공동주택관리조례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 하오니 군산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b>군산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b></p> <p><small>※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small></p>				

현 행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거부중지)통보서			
조정권명			
신청일자			
신청인	성 명		연락처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연락처
	주 소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중지 사 유			
<p>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위 사유로 본인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군산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p>			

개 정 안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거부중지)통보서			
조정권명			
신청일자			
신청인	성 명		연락처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연락처
	주 소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중지 사 유			
<p>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위 사유로 본인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군산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p>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임대주택분쟁조정신청서			
신청인	아파트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input type="checkbox"/> 임차인 <input type="checkbox"/> 임차인대표자회의 <input type="checkbox"/> 임대사업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input type="checkbox"/> 임차인 <input type="checkbox"/> 임차인대표자회의 <input type="checkbox"/> 임대사업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조정신청 내 용		
분쟁발생 사 유			
당사자간 교섭결과			
<p>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및 군산시공동주택관리조례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군산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 귀하</p>			
첨부서류 : 1. 대표자 선정서류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임대주택분쟁조정신청서			
신청인	아파트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input type="checkbox"/> 임차인 <input type="checkbox"/> 임차인대표자회의 <input type="checkbox"/> 임대사업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input type="checkbox"/> 임차인 <input type="checkbox"/> 임차인대표자회의 <input type="checkbox"/> 임대사업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조정신청 내 용		
분쟁발생 사 유			
당사자간 교섭결과			
<p>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및 군산시공동주택관리조례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군산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 귀하</p>			
첨부서류 : 1. 대표자 선정서류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현 행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임대주택분쟁조정결서					
조정진명					
신청인	아파트명				
	성명	연락처			
피신청인	주소				
	성명	연락처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내용					
조정결정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및 군산시공동주택관리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 귀하					
직위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임대주택분쟁조정 의결통지서					
조정진명					
신청인	아파트명				
	성명	연락처			
피신청인	주소				
	성명	연락처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내용					
조정결정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7조 및 군산시공동주택관리조례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분쟁조정 신청사람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					

개 정 안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임대주택분쟁조정결서					
조정진명					
신청인	아파트명				
	성명	연락처			
피신청인	주소				
	성명	연락처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내용					
조정결정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및 군산시공동주택관리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 귀하					
직위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임대주택분쟁조정 의결통지서					
조정진명					
신청인	아파트명				
	성명	연락처			
피신청인	주소				
	성명	연락처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내용					
조정결정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7조 및 군산시공동주택관리조례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분쟁조정 신청사람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					

현 행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조정건명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조정 신청내용				
출석 대상자	성명	주소	연락처	비고 (참고인, 당사자)
출석일자	년 월 일 (○○:○○)			
출석장소				
<p>군산시공동주택관리조례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정회코자 출석요구 하오니 군산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b>군산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b></p> <p><small>*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small></p>				

개 정 안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조정건명	I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조정 신청내용				
출석 대상자	성명	주소	연락처	비고 (참고인, 당사자)
출석일자	년 월 일 (○○:○○)			
출석장소				
<p>군산시공동주택관리조례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정회코자 출석요구 하오니 군산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b>군산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b></p> <p><small>*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small></p>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임대주택분쟁조정(거부중지) 통보서				
조정건명				
신청일자				
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소			
피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소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중지 사유				
<p>군산시공동주택관리조례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위 사유로 본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b>군산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b></p>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임대주택분쟁조정(거부중지) 통보서				
조정건명				
신청일자				
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소			
피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소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중지 사유				
<p>군산시공동주택관리조례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위 사유로 본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b>군산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장</b></p>				

현 행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자문신청서			
[ <input type="checkbox"/> 공사 <input type="checkbox"/> 용역 <input type="checkbox"/> 회계 ]			
신청 단지	공동주택명	동...수	
	주소	세대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연락처	
자문신청 내 용	*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 시 별지 작성)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 지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등)			

개 정 안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공동주택관리 자문신청서			
[ <input type="checkbox"/> 공사 <input type="checkbox"/> 용역 <input type="checkbox"/> 회계 ]			
신청 단지	공동주택명	동...수	
	주소	세대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연락처	
자문신청 내 용	*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 시 별지 작성)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 지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등)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8호 서식]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

대상단지	단지명	연락처 (관리사무소)
	주소	
요청인 대표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직업
주소		
동의인수 (동의율)	동의인수	전세대수
감사대상	*입주자대표회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감사요청 사항·사유	*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일련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내용의 실용성을 높여 작성	
기 타	*감사요청 사항과 관련된 고소고발 소청 유무 및 경과가 될 수 있는 정보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83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군산시장 귀하		요청인 대표 (인)
첨부서류	1.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	

[별지 제18호서식]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

대상단지	단지명	연락처 (관리사무소)
	주소	
요청인 대표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직업
주소		
동의인수 (동의율)	동의인수	전세대수
감사대상	*입주자대표회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감사요청 사항·사유	*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일련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내용의 실용성을 높여 작성	
기 타	*감사요청 사항과 관련된 고소고발 소청 유무 및 경과가 될 수 있는 정보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83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군산시장 귀하		요청인 대표 (인)
첨부서류	1.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	



현행

개정안

별표 1

별표 1

[별표 1]

공동주택 관리비용 세대수별 지원기준

(제8조 제3항 관련)

(단위:천원)

세대수	지원액 (상한액)	비고
300세대 이상	30,000	
100~299세대	27,000	
20~99세대	24,000	
19세대 이하	세대당 1,200	

※ 주택단지의 구분은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공동주택 관리비용 세대수별 지원기준(제8조 제3항 관련)

(단위:천원)

세대수	지원액 (상한액)
300세대 이상	30,000
100세대 ~ 299세대	27,000
20세대 ~ 99세대	24,000
19세대 이하	세대당 1,200

• 비고

20세대 이상의 동이 다수 있는 경우에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가능  
(동당 600만원으로 산출한 금액과 전체 세대수에 따른 지원액 중 큰 금액)

※ 주택단지의 구분은 건축물대장(도보명주소)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별표 2

[별표 2]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기준

(제9조 제1항 관련)

1. 지원한도

지원사업	시 분담률	공동주택 분담률	비고(중감률)
1. 공동주택 주민 간 상생교류 및 공동협력사업	7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중액</li> <li>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중액</li> <li>500세대 미만 최후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중액</li> <li>소형 임대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중액</li> <li>공동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동포 시 안 내한 직할비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li> <li>중앙정보 및 전보도와 미정 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미정사업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li> </ul>
2. 공동주택 주민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70	30	
3.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	70	30	
4.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0	30	
5. 주민 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	70	30	
6.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가 보수	70	30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0	40	

※ 보조금 지원 상한액은 신청단지 규모의 구분 없이 8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지원제외 대상

- 가. 전년도 지원금 경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 나.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신청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 다.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사업
- 라.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6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 내 공사착공 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가능)
- 마. 그 밖에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

[별표 2]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기준(제9조 제1항 관련)

1. 지원한도

지원사업	시 분담률	공동주택 분담률	비고(중감률)
1. 공동주택 주민 간 상생교류 및 공동협력사업	7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중액</li> <li>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중액</li> <li>500세대 미만 최후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중액</li> <li>소형 임대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중액</li> <li>공동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동포 시 안 내한 직할비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li> <li>중앙정보 및 전보도와 미정 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미정사업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li> </ul>
2. 공동주택 주민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70	30	
3.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	70	30	
4.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0	30	
5. 주민 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	70	30	
6.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가 보수	70	30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0	40	

※ 보조금 지원 상한액은 신청단지 규모의 구분 없이 8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지원제외 대상

- 가. 전년도 지원금 경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 나.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신청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 다.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사업
- 라.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6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 내 공사착공 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가능)
- 마. 그 밖에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

현 행

별표 3

[별표 3]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평가기준  
(제12조 제1항 관련)

평가항목	배 점	비 고
계	100점	
① 최근 지원 경과년수 (지원년도 기준)	11년 초과	20점
	11년 이하	16점
	10년 이하	13점
	9년 이하	9점
	8년 이하	5점
	7년 이하	2점
	6년 이하	0점
② 준공 후 경과월수	40년 이상	20점
	15년	7.5점
산식 : $\frac{\text{경과월수}}{12\text{개월}} \times 0.5\text{점}$		
③ 전용면적별 세대비율	전용면적 60㎡이하 세대 100%	20점
	전용면적 60㎡이하 세대 75%	17점
	전용면적 60㎡이하 세대 60%	15점
	전용면적 60㎡이하 세대 45%	12점
	전용면적 60㎡이하 세대 30%	10점
④ 보조금 지원횟수	최초 지원	20점
	1회 지원	16점
	2회 지원	12점
	3회 지원	8점
	4회 이상 지원	4점
⑤ 사업의 필요성 (긴급성, 효과성, 주민수혜도 등)	20점	정성평가 (20점)

비고

- 평가결과 다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각종 안전점검 등에 따라 긴박한 안전상의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는 지원이력에 관계없이 지적 사항에 대한 보수·보강을 위해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이력에 포함한다.
- 정비계획수립신청 등 재건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간 지연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㉔항의 배점은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2자리까지 구한다.
- 지원대상 결정 후 지원신청을 포기하는 경우 지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우선 순위에 따라 다음 순위 신청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①항 최근 지원 경과년수 및 ④항 지원횟수는 2006년 이후 지원금액에 관계없이 당해사업(도비 지원사업 포함)으로 지원된 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건축법에 따라 준공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매년 해당사업 예산의 30%의 범위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개 정 안

별표 3

[별표 3]

(변경)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평가기준(제12조 제1항 관련)

평가항목	배 점	비 고
계	100점	
① 최근 지원 경과년수 (지원년도 기준)	11년 초과	20점
	11년 이하	16점
	10년 이하	13점
	9년 이하	9점
	8년 이하	5점
	7년 이하	2점
	6년 이하	0점
② 사용승인 후 경과월수	40년 이상	20점
	15년	7.5점
산식 : $\frac{\text{경과월수}}{12\text{개월}} \times 0.5\text{점}$		
③ 전용면적별 세대비율	전용면적 80㎡이하 세대 100%	20점
	전용면적 80㎡이하 세대 75% 이상	18점
	전용면적 80㎡이하 세대 60% 이상	16점
	전용면적 80㎡이하 세대 45% 이상	14점
	전용면적 80㎡이하 세대 30% 이상	12점
④ 보조금 지원횟수	최초 지원	20점
	1회 지원	15점
	2회 지원	10점
	3회 지원	5점
	4회 이상 지원	0점
⑤ 사업의 필요성 (긴급성, 효과성, 주민수혜도 등)	20점	정성평가 (20점)

\* 평가결과 동점인 경우 ㉔④①②③의 횡과순에 따른 고득점으로 한다.

비고

- 평가결과 다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각종 안전점검 등에 따라 긴박한 안전상의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는 지원이력에 관계없이 지적 사항에 대한 보수·보강을 위해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이력에 포함한다.
- 정비계획수립신청 등 재건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간 지연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㉔항의 배점은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2자리까지 구한다.
- 지원대상 결정 후 제15조에 따른 지원 결정을 취소하거나 관리주체가 지원신청을 포기하는 등으로 추가 지원대상 선정이 필요한 경우 지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우선 순위에 따라 다음 순위 신청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①항 최근 지원 경과년수 및 ④항 지원횟수는 2006년 이후 지원 금액에 관계없이 당해사업(도비 지원사업 포함)으로 지원된 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건축법에 따라 준공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매년 해당사업 예산의 30% 이하로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지원신청 미달로 인한 잔여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정할 수 있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2년 11월 9일

군산시 조례 제2004호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지원 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p> <p>1. · 2. (생 략)</p> <p>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p> <p>4. ~ 6. (생 략)</p>	<p>제5조(지원 제외 대상)</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p>3. ~ 5. (현행 제4호부터 제6호 까지와 같음)</p>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2년 11월 9일

군산시 조례 제2005호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4호 중 “생계·의료급여” 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 1월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4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u>생계·의료급여</u> 수급자</p> <p>5. ~ 8. (생략)</p> <p>② (생략)</p>	<p>제34조(요금 등의 감면) ①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u> ----- -----</p> <p>5. ~ 8.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의회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군 산 시 장



2022년 11월 9일

군산시 조례 제2006호

## 군산시의회 홍보 등에 관한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시민에게 의정활동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의정소식지·시의회홈페이지·소셜미디어(이하 “SNS”라 한다) 등을 말한다.
2. “소셜미디어”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 ① 군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② 의장은 의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의정소식지, SNS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에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4조(사업)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의정소식지 발행 및 배포
2. 의정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3.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4. 소셜미디어 운영
5.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제2장 홍보매체의 운영

제5조(홍보매체의 운영) 의장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1. 시민소통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경제, 문화, 관광, 환경, 교육, 안전 및 생활정보 등 시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의정·시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의정소식지) ① 군산시의회 의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발행인은 의장으로 한다.

②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③ 소식지의 배부처 및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정하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소식지에 원고를 제공하여 게재되거나 발행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홍보영상등 제작) 주요 의정활동, 의원 정보 등 홍보영상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제작·편집하여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제8조(소셜미디어 운영) ① 의장은 시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카카오톡 채널,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등의 SNS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소셜채널에 계정을 생성하거나 기존 소셜채널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수시로 콘텐츠를 제작·편집하여 소셜미디어에 송출 및 게시한다.

③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제작·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취재·촬영·편집·디자인·개발·유지보수·인쇄·배부 등을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3장 자료관리 및 이벤트 운영 등

제9조(자료 관리) 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상업성 광고 등 영리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③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이벤트 등) ① 의장은 시민의 의정 참여, 시민 상호 간 소통, 지역공

동체 및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의정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

- 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 2.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 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
-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② 의장은 시민참여 이벤트 등을 운영하는 경우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의정 홍보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제11조(설치) 의장은 시민의 의정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 홍보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구성 및 임기) ① 서포터즈의 규모는 20명 내외로 한다.

②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이용하며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을 의장이 위촉한다.

③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기능) 서포터즈는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 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군산시의회 의정홍보 콘텐츠 개발 및 제작
- 2. 군산시의회 의정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시민 불편사항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건의

## 3.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제14조(활동지원) 의장은 서포터즈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콘텐츠 제작을 위한 워크숍 진행
2. 영상·이미지 제작에 따른 편집료 및 원고료 지급 등

제15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포터즈를 해촉할 수 있다. 단, 제4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군산시의회의 위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의장이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군 산 시 장



2022년 11월 9일

군산시 규칙 제790호

##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번호)** ①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점포마다 각각 고유의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포 위치 표시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용허가 등 신청)**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점포 사용허가 신청 및 연장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제4조(허가 변경 등 신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및 보증금)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액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조례 제18조제6항과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보증금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보증금은 센터 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배치도(제2조 관련)**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본관동(1층) 배치도

재활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통 로																														
입구	52	51	50	49	48	47	46	45	44	43	42	41	40	39	38	37	36	35	34	33	32	31	30	홀							
					53	54	55	56													66	67	68	69					입구		
계단	화장실								계단															계단					휴게실		
					60	59	58	57	EPS	EV			61	62	63	64	65									75	74	73	72	71	70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본관동(2층) 배치도

실외기실												
1	2	3	4	5	6	7	8					
							홀		입구			
통 로												
데크	계단	화장실	9		EPS	EV	계단	10	11	화장실	계단	12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동 배치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통 로													
입구	13	14	15	16			21	22	23	24	25	입구	
		17	18	19	20	입구	26	27	28	29	30		

【별표 2】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점포사용 보증금(제5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보증금(점포당)		
	본관동 (1층)	본관동 (2층)	건어동
수산물종합센터	2,500,000	6,000,000	2,500,000

※ 점포를 분할하여 사용허가할 경우 분할된 점포 개수만큼 감액하여 받을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군산수산물종합센터 점포사용 **신규** 허가신청서  
**연장**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시장명	군산수산물종합센터	점포종류		
상 호		판매상품		
사용목적				
사용기간 (영업시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 시부터 : 시까지)			
신청원인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장 <input type="checkbox"/> 기타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  
(신규, 연장) 허가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수수료 • 신규 : 5,000원 • 연장 : 3,000원
------	---	---------------------------------------

【별지 제2호서식】

허가번호 - 호

점포사용허가증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시 장 명	군산수산물종합센터				
점포종류		점포번호		점포면적	m <sup>2</sup>
판매상품					
영업시간					
사용목적					
허가기간		연장횟수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점포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인

【별지 제3호서식】

허가사항 변경(휴업, 인적사항 등) 및 해지 신고서

- 시 장 명 : 군산 수산물종합센터
- 상호 및 번호 :
- 사용자(허가자) 주소 :
- 사용자(허가자) 성명 : 허가번호 :
- 변 경 사 항 :
  
- 변 경 내 용
  - 당초 :
  - 변경 :
  
- 변 경 사 유 :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점포사용허가증(분실시 분실확인서) -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군산시 폐기물매립장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군 산 시 장



2022년 11월 9일

군산시 규칙 제791호

## 군산시 폐기물매립장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폐기물매립장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생매립장**” 을 “**군산시 폐기물매립장**” 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26조**” 를 “**법 제25조**” 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조 제3항**” 을 “**법 제2조 제3호**”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2조제4항**” 을 “**법 제2조 제4호**” 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를 “**법 제13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14조**” 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반입시간)**” 을 “**(반입시간)**”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는 시간을 07:00~17:00까지로 한다.
- ②일요일 및 공휴일은 연중 반입종료 시간을 12:00로 한다.

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주민지원협의체 협의시 일요일 및 공휴일도 반입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 제49조” 를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이하 “조례” 라고 한다) 제43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기물관리조례 제51조” 를 “조례 제45조” 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세법 제27조” 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시행규칙 제45조” 를 “법 시행규칙 제43조”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별표 3)” 을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1항 규정(별표 1)” 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을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시행규칙 제45조” 를 “법 시행규칙 제63조”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 제44조” 를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이하 “조례” 라고 한다) 제42조” 로,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별표 4)” 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별표1)” 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보험강입금액” 을 “보험가입금액”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세징수법” 을 “지방세징수법” 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폐기물매립장 운영규칙 제5조)

납입고지서		
제 호	년도	일반회계
관		
항		
목		
납부자	업체명	
	대표자	
부과기간		
금 원정 (₩ 원)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 납입장소 군 산 시 금 고		
----- 20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인)		

영수필 통지서 (시민납세과 통보용)		
제 호	년도	일반회계
관		
항		
목		
납부자	업체명	
	대표자	
부과기간		
금 원정 (₩ 원)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 납입장소 군 산 시 금 고		
----- 20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인)		

영수필 통지서 (폐기물매출사업장용)		
제 호	년도	일반회계
관		
항		
목		
납부자	업체명	
	대표자	
부과기간		
금 원정 (₩ 원)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 납입장소 군 산 시 금 고		
----- 20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인)		

영 수 증		
제 호	년도	일반회계
관		
항		
목		
납부자	업체명	
	대표자	
부과기간		
금 원정 (₩ 원)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 납입장소 군 산 시 금 고		
----- 20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위생매립장</u>에 폐기물을 반입함에 있어 운영·관리상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군산시 폐기물매립장</u>----- ----- -----.</p>
<p>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제3조(용어의 정의) ----- ----- <u>각 호</u>----- -.</p>
<p>1. "운반업자"라 함은 <u>법 제26조</u>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득한 자중 사업장폐기물을 최종 처리하기 위하여 매립장에 반입하는 자를 말한다.</p>	<p>1. ----- <u>법 제25조</u>----- ----- -----.</p>
<p>2. "사업장 폐기물"이라 함은 <u>법 제2조제3항</u>에서 규정한 폐기물을 말한다.</p>	<p>2. ----- <u>법 제2조 제3호</u>-----.</p>
<p>3. "지정 폐기물"이라 함은 <u>법 제2조제4항</u>에서 규정한 폐기물을 말한다.</p>	<p>3. ----- <u>법 제2조 제4호</u>-----.</p>
<p>4. "처리"라 함은 <u>법 제12조</u> 및 <u>동법시행규칙 제6조</u>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매립을 위한 해체, 압축, 파쇄, 절단, 탈수, 건조등을 한 후 매립하는 것을 말한다.</p>	<p>4. ----- <u>법 제13조</u> 및 「<u>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u>」(이하 "<u>법 시행규칙</u>"이라 한다) <u>제14조</u>----- -----.</p>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반입시간) ①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는 시간을 하절기(매년 3월 1일~10월 31일)에는 일중05:30~17:00까지로 하며, 동절기(매년 11월 1일~2월 29일)에는 일중06:30~16:00까지로 한다.</p> <p>②일요일 및 공휴일은 년중 반입 종료 시간을 12:00로 한다.</p>	<p>제4조(반입시간) ①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는 시간을 07:00~17:00까지로 한다.</p> <p>②일요일 및 공휴일은 연중 반입 종료 시간을 12:00로 한다.</p> <p>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주민지원협의체 협의시 일요일 및 공휴일도 반입할 수 있다.</p>
<p>제5조(반입 수수료) ①반입수수료는 <u>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 제49조</u>의 규정에 의거 부과·징수한다.</p> <p>②부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매월 15일과 말일을 기준으로 월 2회 부과하며 납부기한은 <u>폐기물관리조례 제51조</u>의 규정에 의거 납입통지를 한 날부터 15일이내에 <u>군산시금고</u>에 납부한다.</p>	<p>제5조(반입 수수료) ①----- 「<u>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u>」(이하 “<u>조례</u>” 라고 한다) 제43조----- -----.</p> <p>②----- ----- ----- <u>조례 제45조</u>----- ----- ----- -----.</p>
<p>제6조(수수료 독촉) ①수수료를 정해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u>지방세법 제27조</u>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부과·징수한다.</p>	<p>제6조(수수료 독촉) ①----- ----- ----- 「<u>지방세징수법</u>」 제30조----- -----.</p>

현행	개정안
<p>② (생략)</p> <p>제7조(시험 의뢰) ①매일 반입되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 <u>군산시장</u>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시로 이를 채취하여 <u>법시행규칙 제45조</u>에 의거 시험 의뢰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시험결과 <u>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u> (별표 3)을 위반 초과할 시는 즉시 반입을 중지시키고, 관련부서에 시험결과를 통보한다.</p> <p>제8조(시험성적서 제출) ①운반업자는 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u>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u>에 의한 폐기물 성분별 유해물질 함유여부 시험성적서를 각 사업장별로 시장에게 년 1회(매년 3월까지)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시험성적서 제출시 시험분석기관은 <u>법시행규칙 제45조</u>에 의한 기관이어야 한다.</p> <p>제10조(건설폐기물 반입) ①<u>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제44조</u>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중 <u>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시험 의뢰) ①----- ----- ----- - <u>법 시행규칙 제43</u>----- -----.</p> <p>②----- <u>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1항 규정(별표 1)</u>----- ----- -----.</p> <p>제8조(시험성적서 제출) ①----- ----- <u>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항</u>----- ----- -----.</p> <p>②----- <u>법 시행규칙 제63</u>----- -----.</p> <p>제10조(건설폐기물 반입) ①「<u>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u>」(이하 “<u>조례</u>” 라고 한다) 제42조 ----- ----- 「<u>자원의 절약과 재</u></p>

현 행	개 정 안
<p>의 규정에 의한 지정 부산물은 매립장 반입을 금지시킨다.</p> <p>②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별표 4)에 의거 건설폐기물중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톤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매립장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14조(이행보조금) ①운반업자는 지급이행 보증금으로 월 평균 부과금액의 해당액을 현금, 유가증권 또는 이행보증 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월평균 부과금액의 해당액이 10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u>보험가입금액</u> 100만원이상 이행보증 보험증권으로 납부한다.</p> <p>②납부된 이행보증금은 업체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u>국세징수법</u>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처리한다.</p>	<p><u>활용촉진에 관한 법률</u> 제2조 제4호-----.</p> <p>② 「<u>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u>」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별표1)-----.</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4조(이행보조금) ① ----- ----- ----- ----- ----- <u>보험가입금액</u> ----- -----.</p> <p>②----- ----- ----- <u>지방세징수법</u> ----- -----.</p>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2년 11월 9일

군산시 규칙 제792호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규칙 폐지규칙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2년 11월 9일

군산시 규칙 제793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소장 및 지소장의 직급) ① (생 략) <u>&lt;신 설&gt;</u></p> <p>② · ③ (생 략)</p>	<p>제11조(소장 및 지소장의 직급) ① (현행과 같음)</p> <p><u>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u></p> <p>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p>

군산시 공고 제2022-2275호

「군산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9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개정에 따라 지자체 관리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료 산정방식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 등

3. 의견제출

「군산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19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항만해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항만해양과(전화 : 063-454-4789, FAX : 063-454-6016)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항만해양과 연안환경계(063-454-29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군산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1부.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조례 호

## 군산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배수펌프의 용량
  -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하천·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점용료 · 사용료의 산정방식**(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산정방식(단위 : 연간)
1. 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 · 호안(기슭·둑 침식 방지시설) · 소형선 부두(야적장을 포함한다) · 방파제 ·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로 매설을 포함한다)를 위한 점용·사용[하천·구거 부지(溝渠)를 주거용으로 점용·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나목 및 다목을 제외한 인공구조물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다만,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른 사업(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나. 해상 교량의 교각 상판(교각 면적은 제외한다), 해저터널(「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저케이블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로 한다. 다. 케이블카, 전력선 및 로프형 레저시설 등 공유수면과 맞닿지 않는 수면 상부를 점용·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조선용 선가대(선박을 땅 위로 끌어 올려 놓을 수 있는 구조물 및 설비) 또는 선박의 수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장안벽(艀裝岸壁), 선거(船渠) 등의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점용·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3. 물을 끌어 들이기 위한 점용·사용	가. 전기사업용수 m <sup>3</sup> /초당 연액 20만원 나. 가목 이외 용수 관의 지름 100mm 이하: 관의 지름 10mm당 월액 1만원 관의 지름 100mm 초과 200mm 이하: 월액 12만원 관의 지름 200mm 초과 300mm 이하: 월액 16만원 관의 지름 300mm 초과 400mm 이하: 월액 22만원 관의 지름 400mm 초과 500mm 이하: 월액 28만원 관의 지름 500mm 초과 600mm 이하: 월액 38만원 관의 지름 600mm 초과 700mm 이하: 월액 50만원

	<p>관의 지름 700mm 초과 800mm 이하: 월액 60만원          관의 지름 800mm 초과: 월 최대 취수 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천m<sup>3</sup>당 200원씩 적용한 금액</p> <p>초당 끌어들이는 물의 양 = <math>\frac{\text{관의 지름}^2 \times \text{관내유속(m/sec)}}{146^2 \times 60}</math></p>
<p>4.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매립용·성토용 또는 골재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채취를 위한 점용·사용</p>	<p>가. 시장이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도시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조사가격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li> <li>2)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가 조사한 가격</li> <li>3) 골재 관련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조사한 가격의 산술평균치</li> <li>4)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2개 이상의 가격조사기관에서 산출한 가격의 산술평균치</li> </ol> <p>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골재채취단지관리자가 전년도 10월 중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가격(조사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수 기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한 가격을 말한다)으로서 채취된 골재가 인근의 특별자치시·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군·구에서 판매된 도매가격 평균치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값을 곱한 값</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점용·사용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li> <li>2) 2021년 1월 1일 이후의 점용·사용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li> </ol> <p>다.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채취행위가 동시에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p>

	가목의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0
5. 식물의 재배 또는 벌채를 위한 점용·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다만, 인접한 토지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근의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가격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25까지 낮출 수 있다.
6.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다만,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으로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0.5로 한다.
7.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광물채취 및 탐사를 위한 점용·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다만, 광물채취행위가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로 하되, 광물을 채취할 때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흙·돌·모래·자갈을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가산적용한다.
8. 준설토를 해양에 배출하기 위한 점용·사용(「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배출해역에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준설토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량(m <sup>3</sup> )당 100원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한 목적 외의 점용·사용	가. 스케이트장·운동장·수영장·대기장·탈의장·골프장을 위한 점용·사용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나. 그 밖의 경우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점용·사용에 따른 간접 점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비 고

1. "토지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결정한다.
2.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3. 위 표 제4호가목의 도매가격은 채취지역에서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에 관한 가격조사는 둘 이상의 지역(채취지역 관할 특별자치시·시·군·구를 말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인접한 특별자치시·시·군·구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조사가격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해당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
4. 점용료·사용료를 정할 때에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일할(日割)로 계산한다.
5. 점용면적에 1㎡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군산시장이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한 결과 점용료·사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정수하지 아니한다.

군산시 공고 제2022-2289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9일

군 산 시 장



##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민선8기 시정운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 재정비
- 시민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서 신설

### 2. 주요내용

- 부서 신설 : 2과
  - 경제항만혁신국 어업진흥과
  -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 명칭 변경 : 4과
  - 경제항만혁신국 소상공인지원과 ⇒ 경제항만혁신국 지역경제활력과

- 경제향만혁신국 수산진흥과 ⇒ 경제향만혁신국 수산식품정책과
- 복지환경국 아동청소년과 ⇒ 복지환경국 아동정책과
-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 복지환경국 여성가족청소년과

###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입법예고 : 2022. 11. 9. ~ 11. 24. (15일, 기간단축)
- ※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2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 의견 제출할 곳
  - 우)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TEL 063-454-2253, FAX 063-454-6005)
-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행정지원과 인사계(063-454-22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회계과”를 “회계과, 교육지원과”로, “열린민원과, 교육지원과”를 “열린민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7호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4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소상공인지원과”를 “지역경제활력과”로, “수산진흥과”를 “수산식품정책과, 어업진흥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수산식품 정책

7. 어업진흥 육성

제7조제1항 중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를 “아동정책과, 여성가족청소년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아동 및 청소년”을 “아동”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다문화가족”을 “다문화가족, 청소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다목 중 “아동청소년과”를 “아동정책과”로 하고, “여성가족과”를 “여성가족청소년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 자치행정국에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무과, 시민납세과, <u>열린민원과</u>, <u>교육지원과</u>, 정보통신과를 둔다.</p> <p>②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3. (생략)</p> <p>4. ~ 6. (생략)</p> <p>7. (생략)</p> <p>8. (생략)</p>	<p>제5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 ----- - <u>회계과</u>, <u>교육지원과</u>----- <u>열린민원과</u>----- -----.</p> <p>②----- -----.</p> <p>1. ~ 3. (현행과 같음)</p> <p>5. ~ 7.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p> <p>4. (현행 제7호와 같음)</p> <p>8. (현행과 같음)</p>
<p>제6조(경제항만혁신국에 두는 과) (생략)</p> <p>① 경제항만혁신국에 <u>소상공인지원과</u>, 산업혁신과, 일자리정책과, 새만금에너지과, 항만해양과, <u>수산진흥과</u>를 둔다.</p> <p>② 경제항만혁신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5. (생략)</p> <p>6. <u>수산진흥 및 어업육성</u> .</p> <p><u>&lt;신 설&gt;</u></p>	<p>제6조(경제항만혁신국에 두는 과) (현행과 같음)</p> <p>① ----- <u>지역경제활력</u> <u>과</u>----- ----- <u>수산</u> <u>식품정책과</u>, <u>어업진흥과</u>----- -----.</p> <p>②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수산식품 정책</u></p> <p>7. <u>어업진흥 육성</u></p>

제7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  
 복지환경국에 복지정책과, 경  
 로장애인과 아동청소년과, 여  
 성가족과, 환경정책과, 자원순  
 환과, 산림녹지과를 둔다.  
 ② 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 (생략)  
 3. 아동정책 수립, 아동 및 청  
 소년 지원  
 4. 여성 정책, 자원봉사, 다문  
 화가족 지원  
 5. ~ 7. (생략)

제7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  
 -----  
 -- 아동정책과, 여성가족청소  
 년과-----  
 -----.  
 ② -----  
 ---.  
 1. · 2. (현행과 같음)  
 3. ----- 아동 -----  
 ---  
 4. ----- 다문화가  
 족, 청소년 -----  
 -----  
 5. ~ 7. (현행과 같음)

군산시 공고 제2022-2291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9일

군 산 시 장



##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과 직제 및 명칭 변경 등 조직개편 추진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부서별 이관사무 및 신설·조정사무의 정비를 통해 부서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안정된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부서 신설 : 2과
  - 경제항만혁신국 어업진흥과
    - 과장 직급 : 지방행정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 과장 직급 :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
- 분장사무 조정 : [별표 1] 분장사무표 조정

- ‘기구’ 개편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
- 분장사무 명확화로 효율적 업무 추진
- 그 외 조직변경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 및 개편 등

###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입법예고 : 2022. 11. 9. ~ 11. 24. (15일, 기간단축)
- ※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24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 의견 제출할 곳
  - 우)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TEL 063-454-2253, FAX 063-454-6005)
-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행정지원과 인사계(063-454-22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자택, 사무실 등)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행정지원과장·기획예산과장·회계과장·세무과장·시민납세과장·열린민원과장·교육지원과장은”을 “행정지원과장·기획예산과장·회계과장·교육지원과장·세무과장·시민납세과장·열린민원과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소상공인지원과장·산업혁신과장·일자리정책과장”을 “지역경제활력과장·산업혁신과장·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항만해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수산진흥과장”을 “항만해양과장·수산식품정책과장·어업진흥과장”으로 한다.

제9조 중 “복지정책과장·경로장애인과장·아동청소년과장·여성가족과장”을 “복지정책과장·경로장애인과장·아동정책과장·여성가족청소년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보건행정과”를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을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감염병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농업축산과장·먹거리정책과장”을 “농업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먹거리정책과장”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군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소상공인지원과”를 “지역경제활력과”로 한다.

② 군산시 여성가족과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 여성가족과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규칙”을 “군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여성가족과”를 “여성가족청소년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여성가족과”를 “여성가족청소년과”로 하고, “여성가족과장”을 “여성가족청소년과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여성가족과장”을 “여성가족청소년과장”으로 한다.

[별표 1] <개정 2022. . .>

분 장 사 무 표(제3조 관련)

[시 본청 소관]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공 보 담 당 관	공보업무 분 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관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조정</li> <li>○ 언론동향 파악 및 언론사(인)와 연계체계 유지</li> <li>○ 시 출입기자 등 언론인 취재 지원</li> <li>○ 브리핑룸 및 기자실 운영·관리</li> <li>○ 시보 발행 및 배부</li> <li>○ 고시 및 공고 관련 업무</li> <li>○ 정기간행물 등록(신규, 폐업) 및 관리</li> <li>○ 시정 주요시책 언론(신문·방송 등) 홍보(광고)</li> <li>○ 주요 시정 홍보 캠페인 광고</li> <li>○ 뉴스 서비스(수신) 관리(통신사 등)</li> <li>○ 시정 주요행사 촬영 및 자료보존</li> <li>○ 담당관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li>○ 언론사(신문·방송 등) 대담 및 인터뷰</li> <li>○ 타 부서 이외의 축사 작성</li> <li>○ 시정 홍보 보도자료 수감·발굴·작성 및 제공</li> <li>○ 시정 현안 및 역점사업 언론 기획특집 홍보</li> </ul>
	미디어홍보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디어홍보 시책 발굴</li> <li>○ 시 이미지 콘텐츠 제작 및 시정 전반 SNS 홍보·관리</li> <li>○ 시정 홍보 전광판 운영 및 관리</li> <li>○ 타 지자체 홍보매체 활용 시정 홍보(LED, 와이드조명 등)</li> <li>○ 대강당 음향시설 운영 및 관리</li> <li>○ 시정소식지(열린시정 열린군산) 발행 및 배부</li> <li>○ 시 홍보물(영상·책자 등) 제작</li> </ul>
감 사 담 당 관	감사업무 분 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관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li> <li>○ 도민감사관 운영 및 추진</li> <li>○ 시 행정의 감사</li> <li>○ 상급기관 감사수감 및 지시사항의 처리</li> <li>○ 사무 인계인수 입회(시장, 부시장)</li> <li>○ 감사자료 수집 및 제출</li> <li>○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li> <li>○ 소관사항에 대한 공무원의 징계의결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li> <li>○ 기타 타 법령에 의한 감사</li> <li>○ 담당관실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조사감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감사 및 특명감사 처리</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감사관 운영 및 시민감사 추진</li> <li>○ 공무원 비위조사 및 예방</li> <li>○ 비위관련 첩보 및 민원처리</li> <li>○ 상급기관 이첩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li> <li>○ 사정기관 통보사항 조사 처리</li> <li>○ 기동 감찰업무 (직무, 기강 등)</li> <li>○ 진정, 탄원사항 조사 처리</li> <li>○ 기타 비위발생 조사 처리</li> <li>○ 소관사항에 대한 공무원의 징계의결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li> </ul>
	기술감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공사, 용역, 물품)</li> <li>○ 특명사항 등 조사 (토목, 건축 분야 등)</li> <li>○ 민간보조사업 일상감사</li> <li>○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및 현장점검</li> <li>○ 기술분야 감사 및 조사</li> <li>○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운영</li> <li>○ 주요사업 사전감사 실시</li> </ul>
	납세자보호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li> <li>○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li> <li>○ 납세자권리현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li> <li>○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li> <li>○ 기한의 연장신청, 가산세 감면신청,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li> <li>○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건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마을세무사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시세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접수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지방세 과세전적부심 및 불복 건에 대한 의견 제시</li> <li>○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기타 납세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li> </ul>
행정지원 과 장	총 무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과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li> <li>○ 의전 및 의식 행사</li> <li>○ 청원 전체조회 운영</li> <li>○ 청내 간부회의 운영</li> <li>○ 국소관 근평관리</li> <li>○ 보안문서 관리 통제</li> <li>○ 보안교육 및 보안감사</li> <li>○ 본청·사업소의 공직기강 및 복무단속</li> <li>○ 본청 당직실운영 및 당직명령</li> <li>○ 본청·사업소공무원의 청원서 처리</li> <li>○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업무관한 사항</li> <li>○ 직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li> <li>○ <b>직원 보육료 지원 &lt;삭제&gt;</b></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원 체력증진 행사 &lt;삭제&gt;</li> <li>○ 청우회 운영</li> <li>○ 본청 청원경찰 지도 감독</li> <li>○ 청사방호</li> <li>○ 직소민원 관리</li> <li>○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li>○ 기타 타국·타과·타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p>시 정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참여 플랫폼 운영 &lt;삭제&gt;</li> <li>○ 지방행정 시책의 추진</li> <li>○ 읍·면·동 행정 지도감독 및 복무 단속</li> <li>○ 시 행정 구역에 관한 사항</li> <li>○ 읍·면·동장의 청원서 처리</li> <li>○ 주요 시정행사</li> <li>○ 읍·면·동 관계회의 조정 통제</li> <li>○ 읍·면·동 행정실적 평가</li> <li>○ 행정동향 및 여론행정 관리</li> <li>○ 시민의 장 및 모범시민상 표창</li> <li>○ 선거 및 국민투표</li> <li>○ 각종 위원회 조정 총괄</li> <li>○ 평통 및 바르게살기운동 업무 지원 협조</li> <li>○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 민간단체 관리</li> <li>○ 한국자유총연맹 관련사항</li> <li>○ 북한이탈 주민 거주지 보호</li> <li>○ 과거사정리 업무추진</li> <li>○ 시 읍면동간 사무의 조정</li> <li>○ 기타 기능전환과 관련된 사무 전반</li> <li>○ 반상회 운영 &lt;삭제&gt;</li> <li>○ 통 리 반 설치 운영</li> <li>○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업무</li> <li>○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업무</li> <li>○ 비상사태하의 주민통제, 소산 및 수송 계획</li> <li>○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li> <li>○ 주민자치센터 행정, 재정적 지원</li> <li>○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도점검 등</li> <li>○ 외국인 명예통장 운영 &lt;신설&gt;</li> <li>○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lt;신설&gt;</li> <li>○ 읍면동 청사신축 계획수립 및 추진 &lt;신설&gt;</li> <li>○ 기타 주민자치센터 홍보 등</li> </ul>
	<p>인 사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의 임·면</li> <li>○ 공무원의 포상·서훈</li> <li>○ 인사(징계)위원회 운영</li> <li>○ 공무원 근무평정 및 경력평정, 승진 및 전보</li> <li>○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 정·현원 관리</li> <li>○ 기구 신설·폐지, 분장사무</li> <li>○ 인사 통계</li> <li>○ 인사기록카드 관리 및 전산업무</li> <li>○ 공무원 호봉 확정</li> <li>○ 공무원 연금 업무</li> <li>○ 공무원 건강보험 관리 &lt;수정&gt;</li> <li>○ 지방행정공제회 업무 &lt;수정&gt;</li> <li>○ 공무원 관계 증명 발급</li> <li>○ 공무원근로자 인사관리(채용, 교육, 임금, 유지, 퇴직)</li> <li>○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li> </ul>
	<p>인구정책 업무분야 &lt;신설&gt; &lt;소속변경&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정책 관련업무 총괄 및 기획조정</li> <li>○ 인구정책 자체 종합계획 수립</li> <li>○ 인구관련 각종 정보 및 자료 취합</li> <li>○ 저출산 인구감소계획수립 및 시책발굴</li> <li>○ 저출산 인식개선교육 및 홍보</li> <li>○ 지역인구통계진단</li> <li>○ 지자체 관련부서 사업연계 및 기획</li> <li>○ 중앙-지자체-민간연계 협력체계 구축</li> <li>○ 지역맞춤형 시책 개발</li> <li>○ 시군구간, 시군구-민간연계 협력체계 구축</li> <li>○ 조례 및 위원회 등 제도적 기반 구축</li> <li>○ 지자체 평가 대응</li> </ul>
	<p>노조소통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단체 관리 및 간담회</li> <li>○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시행 및 협약사항 이행관리</li> <li>○ 공무원 노사관계 연수·교육·홍보</li> <li>○ 건전한 공직사회 노사문화 확립을 위한 시책 추진</li> <li>○ 공직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단체보험포함)</li> <li>○ 공직자 휴양시설(콘도) 운영</li> <li>○ 직원 보육료 지원 &lt;신설&gt;</li> <li>○ 청원 한마음 행사 &lt;신설&gt;</li> <li>○ 기간제근로자 관리 총괄</li> <li>○ 공무원노동조합 노사협의회(간담회) 추진</li> <li>○ 공무원근로자 단체교섭 시행 및 협약신고 총괄</li> <li>○ 공무원근로자 임금교섭 시행 및 이행관리 총괄</li> <li>○ 공무원노동조합 행사지원</li> <li>○ 기타 공무원단체에 관련한 업무</li> </ul>
	<p>기록관리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기록물의 수발 및 통제</li> <li>○ 수신 전자문서 해당부서 배포</li> <li>○ 공인관리</li> <li>○ 발간실 운영</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li> <li>○ 기록물 서고 및 행정자료실 관리</li> <li>○ 일반 및 등기 우편물 관리</li> <li>○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li> <li>○ 소관 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li> <li>○ 기록물 분류기준표의 관리</li> <li>○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통보</li> <li>○ 미등록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li> <li>○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폐기 관리</li> <li>○ 기록물관리 지도·교육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li> <li>○ 군산시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지원</li> <li>○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li> <li>○ 기록관리시스템 설치 및 운영</li> <li>○ 주요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및 검색·열람 제공</li> <li>○ 그밖에 기록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li> </ul>
	<p style="color: red;">청사관리 업무분야 &lt;삭제&gt; &lt;소속변경&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사 유지관리</li> <li>○ 전기, 위생, 냉·난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li> <li>○ 공무실의 운영</li> <li>○ 분청 청사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li> <li>○ 청내 소방훈련 및 자체방화관리</li> <li>○ 분청 청사 청소 및 소독관리</li> </ul>
<p>기획예산 과 장</p>	<p>기 획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 방침과 시정 목표의 책정</li> <li>○ 시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li> <li>○ 중장기 계획의 수립 조정</li> <li>○ 주요업무계획 및 기본 운영계획의 수립</li> <li>○ 정부혁신 계획 수립 및 시책발굴</li> <li>○ 대통령·총리·장관·지사·시장 지시사항 처리 및 이행사항 점검</li> <li>○ 공약사항(대통령·지사·시장) 관리</li> <li>○ 적극행정 업무 추진</li> <li>○ 시정 조정위원회 운영</li> <li>○ 군산시 상징물 관리</li> <li>○ 시민제안제도 운영</li> <li>○ 시정계획 및 시정연설 작성</li> <li>○ 시책개발 업무추진</li> <li>○ 국가사업 발굴 및 예산확보추진 총괄</li> <li>○ 과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li> <li>○ 서울·세종 사무소 운영 총괄업무 &lt;수정&gt;</li> <li>○ 지역발전 사업에 관한 사항</li> <li>○ 지역진흥재단 운영지원 &lt;삭제&gt;</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분권 및 이양업무에 관한 사항</li> <li>○ 행정제도개선 및 지식행정 관련</li> <li>○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lt;수정&gt;</li> <li>○ 명예시민 업무 &lt;신설&gt;</li> <li>○ 지자체 생산성 대상 업무추진 &lt;신설&gt;</li> <li>○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p>예 산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 재정계획 수립 및 조정 통제</li> <li>○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li> <li>○ 예산집행계획 수립 및 예산의 배정</li> <li>○ 예산집행의 지원</li> <li>○ 지방채 및 채무부담행위 승인 신청과 집계</li> <li>○ 국·도비 보조금 관리</li> <li>○ 지방교부세 [보통, 특별(재난안전·지역현안·시책)] 신청 및 관리</li> <li>○ 기금 관리</li> <li>○ 이월예산 편성 및 추진상황 점검 &lt;수정&gt;</li> <li>○ 용역과제 사전심의회 운영</li> <li>○ 일반예산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제도 운영</li> <li>○ 예산편성 외 예산과정에 주민참여</li> <li>○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lt;수정&gt;</li> <li>○ 제도홍보 및 주민예산교육, 홈페이지 운영</li> <li>○ 주민참여예산 시군구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li> <li>○ 주요재정사업평가</li> <li>○ 예산의 성과 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li> <li>○ 성인지 예산서 작성</li> <li>○ 재정분석 및 예산개요 작성</li> <li>○ 지방재정 공시</li> <li>○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원</li> <li>○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관리</li> <li>○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운영</li> <li>○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li> <li>○ 지방보조금 업무 추진</li> </ul>
	<p>인구정책 업무분야 &lt;삭제&gt; &lt;소속변경&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정책 관련업무 총괄 및 기획조정</li> <li>○ 인구정책 자체 종합계획 수립</li> <li>○ 인구관련 각종 정보 및 자료 취합</li> <li>○ 저출산 인구감소계획수립 및 시책발굴</li> <li>○ 저출산 인식개선교육 및 홍보</li> <li>○ 지역인구통계진단</li> <li>○ 지자체 관련부서 사업연계 및 기획</li> <li>○ 중앙-지자체-민간연계 협력체계 구축</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맞춤형 시책 개발</li> <li>○ 시군구간, 시군구-민간연계 협력체계 구축</li> <li>○ 조례 및 위원회 등 제도적 기반 구축</li> <li>○ 지자체 평가 대응</li> </ul>
	<p>규제심사 업무분야 &lt;삭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li> <li>○ 행정규제개혁 업무</li> <li>○ 규제관련 정부정책 추진</li> <li>○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li> <li>○ 규제개혁위원회 운영</li> <li>○ 기업 규제애로 청취 및 개선과제 발굴</li> <li>○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 등 발굴 및 개선</li> <li>○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li> <li>○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대응</li> <li>○ 주요업무 자체평가 업무</li> <li>○ 지자체 합동평가 업무</li> <li>○ 시정주요시책(사업)의 추진상황 확인평가</li> <li>○ 이월사업(명사, 사고) 추진상황 점검</li> <li>○ 지자체 생산성 대상 업무추진</li> <li>○ J-VPS(실적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li> <li>○ 자체평가 위원회 운영 및 관리</li> <li>○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관리</li> </ul>
	<p>법무성과 업무분야 &lt;명칭변경&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 행정 종합기획 조정</li> <li>○ 조례·규칙의 심사 및 공포</li> <li>○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 &lt;수정&gt;</li> <li>○ 훈령 예규 등 중요 문서의 심사</li> <li>○ 법제 자료의 조사 및 수집 연구</li> <li>○ 법규의 편찬 &lt;삭제&gt;</li> <li>○ 법령 및 관보의 배부</li> <li>○ 소송 사무의 검토 및 통제</li> <li>○ 소송사건의 연락 및 통제</li> <li>○ 행정 심판 업무</li> <li>○ 입법 및 행정 예고</li> <li>○ 시 의회 운영지원</li> <li>○ 의회자료 제출 및 협의에 관한 사항</li> <li>○ 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재의요구</li> <li>○ 의회 운영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조사</li> <li>○ 의회운영 제도개선 연구 등</li> <li>○ 의정비 관련업무</li> <li>○ 고문·마을 변호사 제도 운영, 무료법률상담소 운영</li> <li>○ 남북교류 업무추진</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GO 관리&lt;삭제&gt;</li> <li>○ 청원 업무 전반 &lt;신설&gt;</li> <li>○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lt;신설&gt;</li> <li>○ 행정규제개혁 업무 &lt;신설&gt;</li> <li>○ 규제관련 정부정책 추진 &lt;신설&gt;</li> <li>○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lt;신설&gt;</li> <li>○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lt;신설&gt;</li> <li>○ 기업 규제애로 청취 및 개선과제 발굴 &lt;신설&gt;</li> <li>○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 등 발굴 및 개선 &lt;신설&gt;</li> <li>○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lt;신설&gt;</li> <li>○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대응 &lt;신설&gt;</li> <li>○ 지자체 합동평가 업무&lt;신설&gt;</li> <li>○ J-VPS(실적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lt;신설&gt;</li> <li>○ 시정주요시책(사업)의 추진상황 확인평가&lt;신설&gt;</li> <li>○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관리 &lt;신설&gt;</li> <li>○ 성과관리(BSC) 운영 및 평가관리&lt;신설&gt;</li> <li>○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및 관리&lt;신설&gt;</li> </ul>
	국제협력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류 외국인 지원 및 개발도상국 원조사업</li> <li>○ 국제기구 가입 및 활동</li> <li>○ 국제 행사 유치 및 지원</li> <li>○ 국외 자치단체교류 총괄</li> <li>○ 직원 해외 직무연수, 청원해외배낭연수</li> <li>○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관련 국제화 업무 &lt;수정&gt;</li> <li>○ 한미 친선 협의회 관련 업무</li> <li>○ 공무국외 출장 허가 및 여비 관리 &lt;수정&gt;</li> <li>○ 민간인 외국어 통역봉사단 운영</li> <li>○ 교류 지역 교민(한인회) 관련 업무 &lt;삭제&gt;</li> <li>○ 교류지역 투자 유치 및 통상 지원 &lt;삭제&gt;</li> <li>○ 해외 교류 지역 한인회 등 인적네트워크 구축 &lt;수정&gt;</li> <li>○ 해외 교류 지역과의 직원 교류 &lt;수정&gt;</li> <li>○ 해외 교류 지역과의 학생 및 민간 교류 지원 &lt;수정&gt;</li> <li>○ 해외 교류 지역 여행객 유치 &lt;수정&gt;</li> <li>○ 군산 중국사무소 운영 &lt;수정&gt;</li> <li>○ 타부서 국제업무 지원(통·번역 등) &lt;수정&gt;</li> <li>○ 국제교류도시 발굴 &lt;신설&gt;</li> <li>○ 남북교류 업무추진 &lt;신설&gt;</li> </ul>
	고향사랑기부 업무분야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향사랑 기부자 및 기부금 관리 &lt;신설&gt;</li> <li>○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관리 &lt;신설&gt;</li> <li>○ 고향사랑기금 운용 &lt;신설&gt;</li> <li>○ 고향사랑기부제도 홍보 &lt;신설&gt;</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lt;신설&gt;</li> <li>○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답례품 선정위원회 운영 &lt;신설&gt;</li> <li>○ 국내자매도시 관련업무 &lt;신설&gt;</li> <li>○ 재정향우회 관련업무 &lt;신설&gt;</li> </ul>
회계과장	경 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li> <li>○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공기업 특별회계 제외) &lt;수정&gt;</li> <li>○ 국·도비 지출 및 정산 &lt;수정&gt;</li> <li>○ 일상경비 교부 및 정산 &lt;수정&gt;</li> <li>○ 지출계산서 심사 및 보고 &lt;수정&gt;</li> <li>○ 회계연도 결산서 작성</li> <li>○ 원천세 징수 불입 및 부가가치세 신고 &lt;수정&gt;</li> <li>○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 정리</li> <li>○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 및 회계정보시스템 운영 &lt;수정&gt;</li> <li>○ 재정상태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산, 부채실사 &lt;수정&gt;</li> <li>○ 인건비 및 연말정산 업무 추진 &lt;수정&gt;</li> <li>○ 자금 관리 및 배정</li> <li>○ 과내 다른 업무분야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계 약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공사, 용역 입찰 및 계약 &lt;수정&gt;</li> <li>○ 물품의 제조, 구매, 수선, 임차계약 &lt;수정&gt;</li> <li>○ 공사 준공검사 및 물품검수 입회 &lt;수정&gt;</li> <li>○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lt;신설&gt;</li> <li>○ 공사, 용역, 물품납품 실적증명서 발급 &lt;신설&gt;</li> <li>○ 공사하도급 승인 &lt;신설&gt;</li> <li>○ 부정당업자 제재 &lt;신설&gt;</li> <li>○ 지연배상금 부과 결정 &lt;신설&gt;</li> <li>○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 &lt;수정&gt;</li> <li>○ 물품 정수책정 및 배정 &lt;삭제&gt;</li> <li>○ 행정장비 관리 및 관리전환 &lt;삭제&gt;</li> <li>○ 관용차량 관리 &lt;수정&gt;</li> </ul>
	재산관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유재산(일반재산)의 관리 취득 및 처분</li> <li>○ 공유재산(일반재산)의 관리 처분 및 등기 &lt;수정&gt;</li> <li>○ 시유재산(일반재산)의 대부 &lt;수정&gt;</li> <li>○ 은닉 공유재산(일반재산)의 조사 및 환수</li> <li>○ 공유재산(일반재산)의 대부료 과징 &lt;수정&gt;</li> <li>○ 재산 수입에 관한 사항(일반재산)</li> <li>○ 시유재산 시민 공유공간 발굴 및 운영</li> </ul>
	청사관리 업무분야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사 유지관리</li> <li>○ 전기, 위생, 냉·난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li> <li>○ 공무실의 운영</li> <li>○ 본청 청사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소속변경> <업무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내 소방훈련 및 자체방화관리</li> <li>○ 본청 청사 청소 및 소독관리</li> <li>○ 읍면동 청사 보수 업무지원 &lt;신설&gt;</li> </ul>
교육지원 과 장 <직제순변경>	교육지원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고·대학교 교육관련 사업</li> <li>○ 대안학습 관련 사업</li> <li>○ 청소년 진로교육사업</li> <li>○ 혁신교육특구 사업 지원</li> <li>○ 외국어 교육 사업 지원</li> <li>○ 초·중·고 방과후 학습 지원</li> <li>○ 맞춤형 과학 프로그램 지원</li> <li>○ 교육발전진흥재단 및 교육관련 협의회 운영 및 지원</li> <li>○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 지원</li> <li>○ 공무원 교육대상 선발 및 지원</li> <li>○ 공무원 교육훈련 종합계획 수립 및 자체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li> <li>○ 공무원 상시학습 기본계획 수립 및 시스템 관리</li> <li>○ 희망스터디사업 추진</li> </ul>
	평생교육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지원</li> <li>○ 교육관련단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li> <li>○ 산.학.관 협력사업 추진</li> <li>○ 평생학습도시 추진</li> <li>○ 군산시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운영 관리</li> <li>○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동아리 운영 및 지원</li> <li>○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 운영 관리</li> <li>○ 찾아가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li> <li>○ 군산시 문해학습 운영 및 지원</li> </ul>
	특수학습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운영 및 지원</li> <li>○ 발달장애인 연간 운영계획 수립</li> <li>○ 발달장애인 평생프로그램 개발·운영</li> <li>○ 발달장애인 평생학습 관련 사업 계획 및 지원</li> </ul>
세무과장	세 정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 소관 행정 및 세정업무의 종합 기획 조정</li> <li>○ 지방세 관계제도 연구 및 운영</li> <li>○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부과</li> <li>○ 주민세(균등분, 종업원분, 재산분) 신고분 처리 및 부과</li> <li>○ 세무전산실 운영 및 지방세정보화 추진</li> <li>○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및 관리</li> <li>○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지방소득세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및 경정, 결정 부과</li> <li>○ 거주자의 지방소득세 신고접수 및 납부서 발급 업무 처리</li> <li>○ 법인 지방소득세(확정 수정 경정 결정 특별징수세액정산) 부과</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 및 부과</li> <li>○ 지방소득세 부과 및 비과세·감면 관련 조사</li> </ul>
	과 표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고시</li> <li>○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검증처리 및 결정고시, 공동주택 가격 이의신청 접수</li> <li>○ 건물시가표준액 결정고시, 기타물건(차량, 기계장비, 선박등) 가격조사 및 시가표준액 결정고시</li> <li>○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체증명 발급</li> </ul>
	재 산 세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세(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부과</li> <li>○ 건축물 및 토지 현황 조사</li> <li>○ 재산세대장 관리 및 정비</li> <li>○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및 부과</li> <li>○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li> <li>○ 재산세 과세내역 및 재산 조회</li> </ul>
	도 세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세·등록면허세 신고분 처리 및 부과(차량분은 제외, 이하 같음)</li> <li>○ 취득세, 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li> <li>○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li> <li>○ 취득세, 등록면허세 세무민원창구 운영</li> </ul>
	세무조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 세무조사</li> <li>○ 과점주주 미신고분 부과 및 사후관리</li> </ul>
시민납세 과 장	납세지원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징수업무 종합기획 조정</li> <li>○ 체납지방세 징수 및 총괄 관리</li> <li>○ 관허사업제한 및 체납정보등록,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형사고발, 기타 행정규제 처분</li> <li>○ 고액체납자 관리 및 체납처분</li> <li>○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법정관리 체납법인 관리</li> <li>○ 독촉장·최고장 발부</li> <li>○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 하는 사항</li> </ul>
	체납관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납세 징수</li> <li>○ 부동산·자동차 압류 및 해제</li> <li>○ 채권(예금,보험,급여,보증금,보상금,증권등) 압류 및 해제</li> <li>○ 동산 및 기타재산(선박,항공기,건설기계,전세권, 각종회원권, 무체재산권 등) 압류 및 해제</li> <li>○ 체납처분유예</li> <li>○ 독촉장 송달(공시송달 포함)</li> </ul>
	징수조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납세 징수</li> <li>○ 공매(부동산,자동차,동산,기타재산) 및 결손처분</li> <li>○ 법원 경매배당금 교부청구 및 수령</li> <li>○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장 송달(공시송달 포함)</li> </ul>
	수납관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 지방세, 수납(소인)관리</li> <li>○ 국·도세 불입 및 지방세입 결산</li> <li>○ 가산금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li> <li>○ 지방세 과오납 환부 및 충당</li> <li>○ 지방세 현금영수증 관리, 지방세 제증명 발급</li> <li>○ 지방세 전자금융(신용카드포함) 수납 정리</li> <li>○ 타지역 온라인 송금 및 자동이체 수납정리</li> </ul>
	세외수입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외수입 총괄 관리</li> <li>○ 세외수입 수납 관리</li> <li>○ 수입증지 관리</li> <li>○ 세입 결산</li> <li>○ 시 금고 계약 및 검사</li> <li>○ 기부금품의 모집 업무</li> <li>○ 세외수입 과오납 환부</li> </ul>
	세외수입징수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년도 체납세외수입 징수 및 총괄관리</li> <li>○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 공개제도 운영</li> <li>○ 관허사업제한 및 체납정보등록,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기타 행정규제 처분</li> <li>○ 체납고지서 발부</li> <li>○ 체납자 재산조회 및 현지 실태조사</li> <li>○ 체납자 금융자산 및 기타 채권압류 및 해제</li> <li>○ 급여 및 부동산, 차량압류 및 해제</li> <li>○ 경·공매, 교부청구,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li> <li>○ 대금지급 정지</li> <li>○ 체납 결손자료 신용정보회사 제공(신용불량등록) 등</li> </ul>
열린민원 과 장	민원정책 업무분야 <업무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li> <li>○ 민원행정 지도 감독</li> <li>○ 민원행정 제도 개선</li> <li>○ 주민편의 시책발굴 운영</li> <li>○ 민원실 환경개선</li> <li>○ 행정사 신고 및 지도감독</li> <li>○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li>○ 민원1회 방문처리 종합 관리</li> <li>○ 민원서류 수발 통제</li> <li>○ 민원불편 신고센터 운영</li> <li>○ 창구민원 처리</li> <li>○ 민원실 전용 공인관리</li> <li>○ 원스톱민원행정서비스 운영</li> <li>○ 온라인 민원 접수, 처리</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운영</li> <li>○ 120생활민원 접수 및 현지확인 등 종합관리</li> <li>○ <b>교환실 운영 관리&lt;신설&gt;</b></li> <li>○ 명절연휴종합상황실운영</li> </ul>
	주민여권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권관련 접수·심사 등 일반업무</li> <li>○ 여권관련 수입대체경비, 영수필증 관리</li> <li>○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및 주민등록 지도 감독</li> <li>○ 인감증명발급 및 인감업무 지도감독</li> <li>○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및 업무지도 감독</li> <li>○ 외국인등록, 관리에 관한사항</li> </ul>
	가족관계등록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관계등록 제 신고, 기록, 교합, 정리</li> <li>○ 등록사항별증명서 및 제적등·초본 열람, 발급</li> <li>○ 결격사유조회 및 회보</li> <li>○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 각종 부채관리</li> <li>○ 제적부 및 제적색인부, 각종 부채관리</li> <li>○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오류사항 정비</li> <li>○ 수형인명표 관리</li> <li>○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목록 및 건수표 작성 관할법원제출</li> <li>○ 가족관계등록부 총괄 및 사무개선 추진</li> <li>○ 가족관계등록 소송업무</li> <li>○ 행복출산 및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운영</li> </ul>
교육지원 과 장 <삭제> <직제순변경>	교육지원 업무분야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고대학교 교육관련 사업</li> <li>○ 대안학습 관련 사업</li> <li>○ 청소년 진로교육사업</li> <li>○ 혁신교육특구 사업 지원</li> <li>○ 외국어 교육 사업 지원</li> <li>○ 초중고 방과후 학습 지원</li> <li>○ 맞춤형 과학 프로그램 지원</li> <li>○ 교육발전진흥재단 및 교육관련 협의회 운영 및 지원</li> <li>○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 지원</li> <li>○ 공무원 교육대상 선발 및 지원</li> <li>○ 공무원 교육훈련 종합계획 수립 및 자체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li> <li>○ 공무원 상시학습 기본계획 수립 및 시스템 관리</li> <li>○ 희망스터디사업 추진</li> </ul>
	평생교육 업무분야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지원</li> <li>○ 교육관련단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li> <li>○ 산.학.관 협력사업 추진</li> <li>○ 평생학습도시 추진</li> <li>○ 군산시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운영 관리</li> <li>○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동아리 운영 및 지원</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 운영 관리</li> <li>○ 찾아가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li> <li>○ 군산시 문해학습 운영 및 지원</li> </ul>
정보통신 과 장	특수학습 업무분야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운영 및 지원</li> <li>○ 발달장애인 연간 운영계획 수립</li> <li>○ 발달장애인 평생프로그램 개발운영</li> <li>○ 발달장애인 평생학습 관련 사업 계획 및 지원</li> </ul>
	정보기획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산시 정보화 사업 종합 계획 수립 및 시행</li> <li>○ 군산시 정보화 조례 관리 &lt;수정&gt;</li> <li>○ 신규 정보화 사업 정보화위원회 사전 심의 &lt;삭제&gt;</li> <li>○ 정보화위원회 운영 관리 &lt;수정&gt;</li> <li>○ 유비쿼터스 업무 수행 및 정보화 평가분석 &lt;삭제&gt;</li> <li>○ 군산시 정보화 지원사업 발굴 및 추진</li> <li>○ 정보화마을 운영 관리 &lt;수정&gt;</li> <li>○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 추진 &lt;삭제&gt;</li> <li>○ 산학연관 공동연계 정보화 사업 추진</li> <li>○ 사회단체 보조 사업 추진 &lt;삭제&gt;</li> <li>○ 행정 업무용 전산장비 보급 시행</li> <li>○ 서버기반 데스크탑 가상화 시스템 운영 관리 &lt;위치변경&gt;</li> <li>○ 행정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및 운영 관리</li> <li>○ 군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리</li> <li>○ 청원 정보 활용 능력 평가 시행 &lt;삭제&gt;</li> <li>○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 해소 사업추진 &lt;위치변경&gt;</li> <li>○ 정보화 교육 계획 수립 시행 및 교육장 관리 &lt;위치변경&gt;</li> <li>○ 정보통신 연찬회</li> <li>○ 공공데이터 발굴 및 제공·개방 &lt;수정&gt;</li> <li>○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lt;신설&gt;</li> <li>○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사업 추진 &lt;신설&gt;</li> <li>○ 빅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분석 &lt;신설&gt;</li> <li>○ 군산시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 관리 &lt;위치변경&gt;</li> <li>○ 군산시 웹서버 등 장비 유지 관리</li> <li>○ 군산시 DNS 시스템 운영 관리 &lt;위치변경&gt;</li> <li>○ 예산·회계·감사·급여·수당·물품관리등 일반사무 &lt;위치변경&gt;</li> <li>○ 타 부서 정보화 사업 지원 &lt;위치변경&gt;</li> <li>○ 과 소관 일반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li> </ul>
	정보개발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종합정보시스템(새울C/S) 구축 및 운영 관리</li> <li>○ 공통기반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관리</li> <li>○ 온-나라 문서관리시스템 운영 관리</li> <li>○ 전자정부디렉토리시스템(LDAP) 운영</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부서 운영 정보시스템 서버 운영관리 &lt;삭제&gt;</li> <li>○ 행정전자서명 등록 및 인증관리</li> <li>○ 정보화사업 사전협의</li> <li>○ 서울행정시스템 및 연계시스템 운영 관리</li> <li>○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포털 운영 관리</li> <li>○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과제 발굴 및 구축</li> <li>○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운영 관리</li> <li>○ 스마트 소통시스템 운영 관리 &lt;신설&gt;</li> </ul>
	정보보호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산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정책 수립</li> <li>○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관리</li> <li>○ 정보통신보안 감사 및 지도점검실시</li> <li>○ 정보통신·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 시행</li> <li>○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 보급 및 관리</li> <li>○ 정보통신보안·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관리</li> <li>○ 정보통신사업 보안성 검토</li> <li>○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운영</li> <li>○ 정보통신보안시스템 서버취약점 점검</li> <li>○ 정보보안 관리 실태 평가</li> <li>○ 전산실 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li> <li>○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li> <li>○ 개인정보보호 처리방침 수립 및 이행실태 점검</li> <li>○ 개인정보보호관리 수준 진단 평가</li> <li>○ 개인정보 유출, 재해, 재난 대응계획 수립 및 관리</li> <li>○ 개인정보파일 및 보유현황 관리</li> <li>○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및 관리</li> <li>○ 개인정보 영향평가 업무 추진</li> <li>○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계획 수립 및 시행</li> <li>○ I-pin 이용기관 및 방문기관 담당자관리 &lt;삭제&gt;</li> </ul>
	정보통신 업무분야 <업무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관리</li> <li>○ 네트워크(업무망·인터넷망)구축 및 운영관리</li> <li>○ 정보통신시설·장비 도입 보급</li> <li>○ 정보 통신관리 예산 운영</li> <li>○ 분청 및 산하 기관 정보통신시설 계획수립 시행</li> <li>○ 각종 통신회선 및 일반전화 사용료등 공공요금 관리 운영</li> <li>○ 통신망 및 그에 따른 S/W등 운영 보급 교육</li> <li>○ 통신 보안관리</li> <li>○ 농어촌 지역 정보통신망 및 시설 구축 추진</li> <li>○ 재난통신망 지원</li> <li>○ 민방공 경보 통신 지원</li> <li>○ 기타 통신에 관한 지원 및 보급</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li> <li>○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검토 민원업무</li> <li>○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 검토 민원업무</li> <li>○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감독 지원</li> <li>○ 정보통신공사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지원</li> <li>○ 원격근무 지원 관리</li> <li>○ 무선인터넷 구축 및 운영 관리</li> <li>○ 정보통신실 관리 운영</li> <li>○ 자가통신망 신증설 계획 수립 및 운영 관리</li> <li>○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리</li> <li>○ IP전화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리 &lt;수정&gt;</li> <li>○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운영 관리</li> <li>○ 영상회의 시스템 운영 관리</li> <li>○ 방송공동수신설비 운영 관리</li> <li>○ 행정방송(영상) 송출시스템 운영 관리 &lt;수정&gt;</li> <li>○ IP음성동보 방송 송출시스템 운영 관리</li> <li>○ 전자팩스 시스템 운영 관리</li> <li>○ 교환실 운영관리&lt;삭제&gt;</li> <li>○ 통화녹취시스템 운영 관리</li> </ul>
<p>지역경제활력 과 장 &lt;명칭변경&gt;</p>	<p>지역경제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li> <li>○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 기획 조정</li> <li>○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li> <li>○ 군산새만금 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 지원</li> <li>○ 새만금 군산 산업전시관 시설관리</li> <li>○ 물류지원센터 시설관리 &lt;신설&gt;</li> <li>○ 물가조사 및 안정지도 단속</li> <li>○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관리 &lt;수정&gt;</li> <li>○ 소비자 보호 및 고발센터 운영</li> <li>○ 서민금융정책 홍보 및 지원</li> <li>○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li> <li>○ 대부업 등록 및 관리감독</li> <li>○ 새마을금고 지도 및 육성</li> <li>○ 통계조사의 종합기획 및 기본 통계 정비</li> <li>○ 통계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발간</li> <li>○ 인구주택 총조사</li> <li>○ 주민등록인구통계 작성 및 경제통계 기획조정</li> <li>○ 주요 지역경제 동향 파악 및 분석</li> <li>○ 경기분석 및 경제관련 지표 조사</li> <li>○ 지역내 총생산 추계조사</li> <li>○ 인구동태조사 및 각종 통계조사의 실시</li> <li>○ 농업총조사 및 총사업체, 광공업 고용구조 등 통계조사</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국내 타과 및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상권지원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권 활성화 방안 수립 및 추진</li> <li>○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전담기구 설치</li> <li>○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 운영</li> <li>○ 소상공인 특성화 공간 추진 및 운영</li> <li>○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li> <li>○ 상권활성화 재단 운영</li> <li>○ 영세상인 카드수수료 지원</li> <li>○ 소상공인 관련 단체·위원회 운영 지원</li> <li>○ 소상공인 지원 심의회 운영</li> <li>○ 특화거리 심의회 운영</li> </ul>
	지역화폐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관리</li> <li>○ 모바일상품권 플랫폼 구축 및 운영</li> <li>○ 골목상권 지원 등 지역상품권 연계 사업 추진</li> <li>○ 상품권 가맹점 관리 및 운영 &lt;신설&gt;</li> <li>○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 운영 관리 &lt;신설&gt;</li> <li>○ 상품권 판매대행점 관리 및 운영 &lt;신설&gt;</li> <li>○ 상품권 부정유통 관리 및 운영 &lt;신설&gt;</li> </ul>
	유통혁신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분야 활성화방안 수립</li> <li>○ <b>물류지원센터 시설관리 &lt;삭제&gt;</b></li> <li>○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 구축</li> <li>○ 군산시 공공배달앱 구축 및 운영</li> <li>○ 온라인 상품유통 업무</li> <li>○ 대규모 점포 등록 관리</li> <li>○ 공산품 품질관리 시책 종합기획 조정</li> <li>○ 공산품 품질관리 및 불법공산품 유통 단속</li> <li>○ 공산품 사전검사 위반상품 단속 및 조치</li> <li>○ 위조상품 유통 단속</li> <li>○ 전화권유, 방문, 통신판매 신고처리</li> <li>○ 계량업무 지도 감독</li> <li>○ 상거래 질서 확립</li> <li>○ 제조담배 소매인 지정 및 취소</li> <li>○ 가격 표시업소 지정</li> <li>○ 유통상생발전위원회 운영</li> </ul>
전통시장활성화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 개설허가 및 관리</li> <li>○ <b>공설시장 운영·관리 및 사용료 부과 징수관리 &lt;수정&gt;</b></li> <li>○ <b>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lt;수정&gt;</b></li> <li>○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li> <li>○ <b>전통시장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lt;수정&gt;</b></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시장 상인회 지도 감독 등 &lt;신설&gt;</li> <li>○ 상권르네상스사업 추진 &lt;수정&gt;</li> </ul>
<p>산업혁신 과 장</p>	<p>투자유치 업무분야 &lt;업무조정&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업무</li> <li>○ 새만금지역 투자유치 업무</li> <li>○ 새만금 한중경협특구조성 행정지원</li> <li>○ 새만금 국가별 경협특구조성 행정지원</li> <li>○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li> <li>○ 군산시투자위원회 운영</li> <li>○ 투자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li> <li>○ 투자기업 세제지원</li> <li>○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및 운영</li> <li>○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 업무</li> <li>○ 중소기업 지원시책 발굴·추진</li> <li>○ 중소기업 제품 전시회 및 설명회</li> <li>○ 기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 업무</li> <li>○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사업</li> <li>○ 중소벤처기업 지원업무</li> <li>○ 군산자유무역지역 지원업무</li> <li>○ 기업애로시책 종합계획 수립</li> <li>○ 기업불편 및 기업상담민원 처리</li> <li>○ 공공주도형 펀드 조성&lt;신설&gt;</li> <li>○ 펀드 관리 및 운용계획 수립·시행&lt;신설&gt;</li> <li>○ 금융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 추진&lt;신설&gt;</li> </ul>
	<p>과학기술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li> <li>○ 과학기술진흥 및 지역특화사업 육성 지원</li> <li>○ 산·학·연·관 공동협력사업 지원</li> <li>○ 전북새만금산학융합지구 사업 지원</li> <li>○ 플라즈마산업 육성 지원</li> <li>○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li> <li>○ 탄소산업 육성 지원</li> </ul>
	<p>미래산업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상용차 포함), 건설기계, 조선산업 육성 및 기반구축</li> <li>○ 자동차·건설기계·조선산업(R&amp;D) 지원</li> <li>○ 건설기계부품연구원 협력사업 추진</li> <li>○ 자동차융합기술원 협력사업 추진</li> <li>○ 전북자동차포럼 지원</li> <li>○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북분원 지원</li> <li>○ 전국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지원</li> <li>○ 뿌리산업 핵심기술 R&amp;D 기반 구축</li> </ul>
	<p>산단관리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공단지 입주계약(변경)</li> <li>○ 농공단지 기반시설 신설 및 정비 사업</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p>&lt;명칭변경&gt; &lt;업무조정&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수립 및 변경</li> <li>○ 산업(농공)단지 공장용지 분양</li> <li>○ 산업단지내 기반시설 신설 및 정비 사업</li> <li>○ 일반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수립 및 변경</li> <li>○ 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li> <li>○ 산업단지 특별회계 관리</li> <li>○ 농공단지 운영관리</li> <li>○ 공장등록 관리업무 및 지도감독</li> <li>○ 공장가동 상황파악 및 제조업체 실태조사</li> <li>○ 공장설립 및 사업계획 승인, 공장등록(변경)</li> <li>○ 산업단지 대개조 업무 기획 및 추진&lt;신설&gt;</li> <li>○ 스마트 그린산단 업무 추진&lt;신설&gt;</li> </ul>
	<p>공공투자 업무분야 &lt;삭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주도형 펀드 조성</li> <li>○ 펀드 관리 및 운용계획 수립·시행</li> <li>○ 금융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 추진</li> </ul>
<p>일자리정책 과 장</p>	<p>군산형일자리 업무분야 &lt;업무조정&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산형일자리 협약이행 추진</li> <li>○ 군산형일자리 상생협의회 및 실무추진위 운영</li> <li>○ 군산형일자리 공동교섭 추진, 선진형 임금체계 도입 및 적용</li> <li>○ 군산형일자리 컨설팅사업 추진</li> <li>○ 군산형일자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li> <li>○ 군산형일자리 이행과제점검 및 평가</li> <li>○ 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li> <li>○ 과 소관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li> <li>○ 주요업무보고 및 의회 업무 관련 전반</li> <li>○ 일자리기획 업무 총괄</li> <li>○ 지역 일자리 창출계획 수립 및 추진 &lt;삭제&gt;</li> <li>○ 지역 일자리 공시제 추진</li> <li>○ 일자리사업 발굴 및 지원 &lt;삭제&gt;</li> <li>○ 일자리 창출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li> <li>○ 지역 일자리 및 고용동향 &lt;삭제&gt;</li> <li>○ 고용위기지역 선정·지원 업무 &lt;수정&gt;</li> <li>○ 고용동향(통계) 분석 및 자료 작성 &lt;신설&gt;</li> <li>○ 군산시 명장 선정·지원 사업 &lt;신설&gt;</li> <li>○ 일자리창출 우수 중소기업 선정·지원 사업 &lt;신설&gt;</li> <li>○ 군산형일자리 인센티브지원 사업추진</li> <li>○ 군산형일자리 공동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 지원</li> <li>○ 군산형일자리 상생기금 지원</li> <li>○ 전기차클러스터 인력양성사업</li> <li>○ 전기차 판로촉진</li> <li>○ 거점 직업훈련기관 지원사업</li> <li>○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li> <li>○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p>일자리지원 업무분야 &lt;삭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산형일자리 인센티브지원 사업추진</li> <li>○ 군산형일자리 공동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li> <li>○ 군산형일자리 상생기금 지원</li> <li>○ 전기차클러스터 인력양성사업</li> <li>○ 전기차 판로촉진</li> <li>○ 거점 직업훈련기관 지원사업</li> <li>○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li> <li>○ 전문컨설팅트 재도약 사업</li> <li>○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li> </ul>
	<p>청년정책 업무분야 &lt;명칭변경&gt; &lt;직제순변경&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lt;신설&gt;</li> <li>○ 청년센터(청년뜰) 운영 &lt;수정&gt;</li> <li>○ 청년 정책 위원회 운영 &lt;신설&gt;</li> <li>○ 청년 협의체 운영 &lt;신설&gt;</li> <li>○ 청년의 날 행사 운영 &lt;신설&gt;</li> <li>○ 청년 지역 정착 지원 시책 발굴 &lt;신설&gt;</li> <li>○ 청년 정책 사업 발굴 및 활성화 지원 &lt;신설&gt;</li> <li>○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 &lt;신설&gt;</li> <li>○ 청년 마을만들기 사업 &lt;신설&gt;</li> <li>○ 청년활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lt;신설&gt;</li> <li>○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군산형 청년수당) &lt;수정&gt;</li> <li>○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전북형 청년수당) &lt;신설&gt;</li> <li>○ 청년 역량 강화 지원 &lt;수정&gt;</li> <li>○ 청년 일자리 계획 수립 및 추진 &lt;수정&gt;</li> <li>○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li> <li>○ 청년해외취업연수 지원 사업 &lt;수정&gt;</li> <li>○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 &lt;수정&gt;</li> <li>○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lt;신설&gt;</li> <li>○ 공공부문 청년멘토 사업 &lt;신설&gt;</li> <li>○ 대학생 행정체험캠프 사업(공공일굼터 대학생일자리사업) &lt;신설&gt;</li> <li>○ 청년 구직 활동 지원</li> </ul>
	<p>창업지원 업무분야 &lt;직제순변경&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센터(청년뜰) 운영 &lt;수정&gt;</li> <li>○ 창업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조정</li> <li>○ 창업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li> <li>○ 창업지원사업 추진 및 창업특화공간 운영 &lt;신설&gt;</li> <li>○ 창업박람회 등 공약사업 추진 &lt;신설&gt;</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청년 활력수당 사업 &lt;신설&gt;</li> <li>○ 청년일자리 관련 산학연계 사업(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lt;신설&gt;</li> <li>○ 창업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li> <li>○ 창업기업 업종, 형태, 애로사항 등 실태조사 추진 &lt;수정&gt;</li> <li>○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성과 및 사후관리 &lt;수정&gt;</li> <li>○ 창업정보 제공, 창업 문화 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lt;수정&gt;</li> </ul>
	<p>고용노사 업무분야 &lt;직제순변경&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노사 업무 종합기획 조정 &lt;신설&gt;</li> <li>○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lt;수정&gt;</li> <li>○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lt;신설&gt;</li> <li>○ 취업박람회 관련업무</li> <li>○ 일자리 정보센터 운영 &lt;수정&gt;</li> <li>○ 직업안내소 지도감독 및 종사자 교육</li> <li>○ 공공근로 질적 향상</li> <li>○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및 활성화</li> <li>○ 노동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노동정책 및 시스템 구축</li> <li>○ 노동단체 보조사업 지원</li> <li>○ 생활임금제도 운영</li> <li>○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원</li> <li>○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및 지도감독 &lt;수정&gt;</li> <li>○ 노동조합의 설립, 변경, 해산, 노동쟁의 지도</li> <li>○ 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관리 &lt;수정&gt;</li> <li>○ 노동자 안전강화</li> <li>○ 일모아시스템 사업자권한 승인 및 관리 &lt;신설&gt;</li> </ul>
	<p>사회적경제 업무분야 &lt;직제순변경&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경제활성화 지원 및 육성 &lt;수정&gt;</li> <li>○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li> <li>○ 사회적기업 시책 개발</li> <li>○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지원 &lt;수정&gt;</li> <li>○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운영</li> <li>○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lt;수정&gt;</li> <li>○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도·점검 관리 &lt;수정&gt;</li> <li>○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사업개발, 사회보험, 지역특화) &lt;수정&gt;</li> <li>○ 사회적경제기업 청년혁신가 지원사업</li> <li>○ 사회적경제기업 인프라 지원사업</li> <li>○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lt;수정&gt;</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기업 지도·감독 &lt;수정&gt;</li> <li>○ 협동조합 설립, 변경, 해산 신고 처리</li> <li>○ 협동조합 지원체계·네트워크 구축, 홍보</li> <li>○ 사회적경제기업 판로개척 및 우선구매 지원 &lt;수정&gt;</li> <li>○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자료 구축</li> <li>○ 군산형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지원</li> </ul>
	<p>청년일자리 업무분야 &lt;삭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일자리 정책 수립</li> <li>○ 청년센터 운영</li> <li>○ 청년취업 지원</li> <li>○ 청년구직활동지원</li> <li>○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li> <li>○ 청년해외취업연수 사업 지원</li> <li>○ 지역대학 연계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li> <li>○ 청년역량강화 지원 사업</li> <li>○ 청년 실업자 대책 및 일자리컨설팅</li> </ul>
	<p>창업지원 업무분야 &lt;삭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지원센터 운영</li> <li>○ 창업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조정</li> <li>○ 창업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li> <li>○ 창업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li> <li>○ 창업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등</li> <li>○ 창업정보의 제공·관리계획의 수립·시행</li> <li>○ 창업 관련 성과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창업 문화 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li> </ul>
<p>새만금에너지 과 장</p>	<p>신재생에너지 업무분야 &lt;명칭변경&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재생에너지 산업 업무 전반</li> <li>○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정책 발굴</li> <li>○ 신재생에너지 R&amp;D</li> <li>○ 신재생에너지 산업 인프라 구축</li> <li>○ 신재생에너지 특화 및 융·복합 개발 사업</li> <li>○ 에너지 신산업 추진</li> <li>○ 에너지 계획 수립</li> <li>○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lt;수정&gt;</li> <li>○ 시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육상수상태양광, 해상풍력) 사업 개발 및 지원 &lt;삭제&gt;</li> <li>○ 시민발전주식회사 운영지원 &lt;삭제&gt;</li> <li>○ 새만금 그린산단(RE100) 업무지원</li> </ul>
	<p>새만금정책개발 업무분야 &lt;명칭변경&gt; &lt;업무조정&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만금 행정지원 총괄기획 및 조정</li> <li>○ 새만금 행정구역 관련 업무 (소송 대응, 행정체계 협의 등)</li> <li>○ 새만금 관할구역 결정 대응 T/F 구성 및 운영</li> <li>○ 새만금특별법 관련 업무</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만금위원회 대응 및 새만금개발청 협조 업무</li> <li>○ 새만금 팸투어 사업 지원 &lt;수정&gt;</li> <li>○ 새만금 홍보협의체 활동 등 홍보 업무</li> <li>○ 군산시 새만금발전협의회 운영 및 관련조례 관리</li> <li>○ 새만금 기본계획(MP)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 관련 업무</li> <li>○ 새만금지역내 각종 개발사업 추진 및 인허가 등 협의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변도시, 도료(동서·남북), 철도, 신시아미지구, 고군산군도지구 등</li> </ul> </li> <li>○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설치사업 (협약, 행정지원 등)</li> <li>○ 새만금 어린이랜드 관리·운영</li> <li>○ 새만금 사업관리 협의회 등 사업분야 관련업무</li> </ul>
	<p>새만금개발지원 업무분야 &lt;삭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만금 기본계획(MP)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 관련 업무</li> <li>○ 새만금지역내 각종 개발사업 추진 및 인허가 등 협의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변도시, 도료(동서·남북), 철도, 신시아미지구, 고군산군도지구 등</li> </ul> </li> <li>○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설치사업 (협약, 행정지원 등)</li> <li>○ 새만금 어린이랜드 관리·운영</li> <li>○ 새만금 사업관리 협의회 등 사업분야 관련업무</li> </ul>
	<p>에너지기획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 자립마을 모델 개발 및 조성</li> <li>○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지원</li> <li>○ 에너지 빈곤층 신재생에너지 보급</li> <li>○ 소수력발전, 염분차발전 사업 등</li> <li>○ 신재생에너지 국·도비 공모사업 기획 추진</li> <li>○ 공공청사 및 경로당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li> <li>○ 도서발전소(관리도, 방축도) 관리 및 운영업무</li> <li>○ 도서발전소(관리도, 방축도) 시설물 유지보수</li> <li>○ 시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육상수상태양광) 사업 개발 및 지원 &lt;신설&gt;</li> <li>○ 시민발전주식회사 운영지원 &lt;신설&gt;</li> </ul>
	<p>에너지관리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재난 대응</li> <li>○ 에너지 절약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홍보 &lt;삭제&gt;</li> <li>○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li> <li>○ 연료 수급대책 및 조정</li> <li>○ 석유류에 대한 업무 전반</li> <li>○ 연탄 품질관리 지도</li> <li>○ 연탄 수송업자 및 판매소 지도 관리</li> <li>○ 가스안전관리 계획 수립</li> <li>○ 가스업체 안전점검 사후관리</li> <li>○ 고압가스(판매, 저장, 제조업, 충전) 허가 및 변경 허가</li> <li>○ 액화 석유가스 집단 공급 사업 허가</li> <li>○ 도시가스 시설 공사계획 승인</li> <li>○ 특정 고압가스 사용 신고</li> <li>○ 도시가스 시설 자금융자 관련 업무</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스시설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li> <li>○ 액화 석유가스 사용 신고</li> <li>○ LPG 사용 시설 체적판매제 시행 추진</li> <li>○ 가스안전관리 계도 홍보</li> <li>○ 기타 가스 안전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 명령</li> <li>○ 전기사업 인·허가 및 사전심사 업무</li> <li>○ 전기공사업체 면허신청 등에 관한 업무</li> <li>○ 기타 전기관계 업무</li> <li>○ 광업권 협의 및 관리</li> <li>○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li> </ul>
<p>항만해양 과 장</p>	<p>항만물류 업무분야 &lt;명칭변경&gt; &lt;업무조정&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운·항만 정책의 수집분석 지원</li> <li>○ 군산항 홍보 및 활성화 협의회 추진</li> <li>○ 항만 배후단지 개발 및 조성</li> <li>○ 항만업체 창업지원 및 육성</li> <li>○ 중앙정책 수집분석 및 대책건의</li> <li>○ 항만준설 협의 및 건의 등 항만시설 지원</li> <li>○ 군산항 시설 활성화 업무 추진</li> <li>○ 새만금 신항만 지원 업무</li> <li>○ 금란도 개발 및 활성화</li> <li>○ 군산항 수출입 물류활성화 업무 추진</li> <li>○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li> <li>○ 군산항 물동량 통계조사 및 분석</li> <li>○ 국제여객선 운항지원</li> <li>○ 수출입 정기항로 개설 및 다변화 추진</li> <li>○ 군산 컨테이너터미널 관련업무</li> <li>○ 군산항 물류활성화 중장기 계획 수립</li> <li>○ 물류창고업 등록</li> <li>○ 물류단지 조성사업</li> <li>○ 과내 다른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p>물류지원 업무분야 &lt;삭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산항 수출입 물류활성화 업무 추진</li> <li>○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li> <li>○ 군산항 물동량 통계조사 및 분석</li> <li>○ 국제여객선 운항지원</li> <li>○ 수출입 정기항로 개설 및 다변화 추진</li> <li>○ 군산 컨테이너터미널 관련업무</li> <li>○ 군산항 물류활성화 중장기 계획 수립</li> <li>○ 물류창고업 등록</li> <li>○ 물류단지 조성사업</li> </ul>
	<p>해양레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항, 주변공간 개발 협의 및 지원</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리나항 업무추진</li> <li>○ 해양레저 SOC 사업 업무추진</li> <li>○ 선유도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li> <li>○ 선유도 해수욕장 안전 및 시설물 관리</li> <li>○ 해양레저스포츠체험교실</li> <li>○ 해양레저스포츠교육프로그램 보조사업</li> <li>○ 해양레저 각종 행사 추진 업무</li> <li>○ 해양레저 관련 시책 및 주요사업 추진</li> <li>○ 해양레저시설 관리</li> <li>○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안전관리</li> </ul>
	연안환경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오염 방지 종합대책 수립</li> <li>○ 해양시설 지도 점검</li> <li>○ 해양오염 방제장비 및 기기 관리</li> <li>○ 오·폐수 해양유입 감시 및 감독</li> <li>○ 오염원 무단방류 및 투기행위 단속</li> <li>○ 해양오염 배출업소 지도 단속</li> <li>○ 해양오염 피해 보상업무 추진</li> <li>○ 해파리 제거대책 및 관리</li> <li>○ 해양쓰레기 정화사업</li> <li>○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li> <li>○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시설</li> <li>○ 유류피해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사업</li> <li>○ 어촌마을 해양환경 정비사업</li> <li>○ 적조피해예방 및 관리</li> <li>○ 연안관리 업무전반</li> <li>○ 연안관리 지역내 정비, 개발사업 시행, 협의</li> <li>○ 공유수면 관리 업무전반</li> <li>○ 공유수면 불법 및 금지 행위 단속</li> </ul>
	섬개발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지역 주민 숙원사업 추진</li> <li>○ 도서종합개발사업 계획수립</li> <li>○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li> <li>○ 도서개발사업 주민소득사업 관리</li> <li>○ 도서개발사업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li> <li>○ 도서 내 시설물현황 관리 및 통계</li> <li>○ 기타 무인도서 등 도서개발관련 업무</li> </ul>
	어항시설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지방, 정주, 소규모 어항 유지 관리</li> <li>○ 어항 시설 사업 허가·신고수리</li> <li>○ 국가, 지방, 정주, 어항시설사용(점용) 허가·신고</li> <li>○ 어항내 폐유저장시설 및 관리</li> <li>○ 국가, 지방, 정주, 소규모어항 시설사업 추진</li> <li>○ 어항관련 손실보상 추진, 과태료 부과·징수</li> <li>○ 어항시설 사용·점용료 징수</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수산식품정책 과 장 <명칭변경>	수산정책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촌뉴딜300사업 추진</li> <li>○ 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li> <li>○ 수산업 및 수산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시행</li> <li>○ 수산식품 산업의 육성 및 진흥 &lt;신설&gt;</li> <li>○ 기후 및 해양생태계 변화대응 수산분야 인프라 확충 및 정책 수립 &lt;신설&gt;</li> <li>○ 수산식품산업 육성시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 &lt;신설&gt;</li> <li>○ 수산식품산업 통계 정보의 분석 및 제공 &lt;신설&gt;</li> <li>○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lt;신설&gt;</li> <li>○ 수산식품산업 컨설팅에 관한 업무 &lt;신설&gt;</li> <li>○ 수산식품 R&amp;D 및 시제품개발방향 등 육성계획 수립 &lt;신설&gt;</li> <li>○ 수산식품산업 먹거리 위원회 구성 운영 &lt;신설&gt;</li> <li>○ 지역특화수산물 선정 및 특화거리조성, 활성화 지원 &lt;신설&gt;</li> <li>○ 지역특화 수산물 홍보축제(행사) 개최 &lt;신설&gt;</li> <li>○ 수산푸드 플랜수립 및 수산식품산업발전 실행용역 추진 &lt;신설&gt;</li> <li>○ 수산분야 정부지원사업 심의 및 통합추진</li> <li>○ 수산조정위원회 운영 및 관리</li> <li>○ 수산업에 관한 금융 통계 조사</li> <li>○ 수산관련 단체 지원 및 관리</li> <li>○ 수산업경영인(후계자 및 전업어가) 관리 및 행사</li> <li>○ 수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업무 &lt;신설&gt;</li> <li>○ 수산분야 충무실시계획 수립. 시행 &lt;수정&gt;</li> <li>○ 연안여객선 운임비 및 운항 지원</li> <li>○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및 운영관리</li> <li>○ 비안도 도선운항 업무추진</li> <li>○ 수산 및 수산식품산업 관련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li> <li>○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수산식품산업 업무분야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책수립</li> <li>○ 수산식품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 및 시설 지원사업 추진</li> <li>○ 수산식품산업단지육성 조례제정 및 운영 지침 수립</li> <li>○ 스마트 수산식품산업 표준모델 및 실행계획 수립</li> <li>○ 수산식품산업단지 수출 관련업무 통합지원 및 컨설팅</li> <li>○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추진</li> <li>○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li> <li>○ 스마트 팩토리자동화 생산공장 구축 및 운영</li> <li>○ 스마트 팩토리공장 원물및 판매전략 등 실행계획 수립</li> <li>○ 수산식품 R&amp;D센터 연구분석 및 가공장비 시장수요조사 및 장비 구축 계획수립 추진</li> <li>○ 협력지원센터 운영방안 및 조성 등 활성화방안 수립</li> <li>○ 스마트아파트형 가공공장 조성 및 입주 등 운영관리</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연구용역·운영체계 등 설립 추진</li> <li>○ 재단법인 조례제정 및 연구인력 채용 등 운영</li> <li>○ 수산식품 유관기관 협력방안 수립 및 연구인력 운영추진</li> <li>○ 총사업비관리 유관기관(조달청·기재부) 행정절차 협의</li> <li>○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관리계획 및 운영 추진</li> <li>○ 새만금 해수인배수시설 해역이용협의 및 기반조성 사업</li> <li>○ 해수인배수 폐수처리시설 조성 및 운영방안 추진</li> <li>○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종합단지(이하 ‘수산식품단지’) 투자유치</li> <li>○ 수산식품단지 입주공고 및 사업제안서·설명회 관리</li> <li>○ 수산식품단지 개발청 협의 입주심사 등 투자협약 체결</li> <li>○ 수산식품단지 입주계약 체결 및 분양계약 행정절차 관리</li> <li>○ 수산식품단지 대급납부 및 토지사용 승락신청 관리</li> <li>○ 수산식품단지 공장설립 및 공장등록(변경) 입력 및 운영관리</li> <li>○ 수산식품단지 계약변경 및 재계약·입주해지 등 사후관리</li> <li>○ 수산식품단지 환경관리 및 안전관리 등 사후관리 운영 등</li> </ul>
	<p>양식산업 업무분야 &lt;삭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해 양식어장 개발</li> <li>○ 어장이용 개발계획 수립·시행</li> <li>○ 내수면 어업 종합개발 관리</li> <li>○ 천해, 내수면 어업권 사후 관리</li> <li>○ 내수면 어업계 및 낚시터 운영</li> <li>○ 천해 및 내수면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행정처분</li> <li>○ 수산증식 사업 계획수립·시행</li> <li>○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li> <li>○ 김 산업 발전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지원</li> <li>○ 양식시설 현대화지원(용자)사업 추진 및 관리</li> <li>○ 어장정화사업 및 어장 청소</li> <li>○ 어업권 원부 및 어장도 발급</li> <li>○ 바다숲 조성사업</li> <li>○ 신품종 양식 기술개발 및 보급</li> <li>○ 바다숲 조성사업</li> <li>○ 양식장 관리선 지정 및 승인</li> <li>○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및 관리</li> <li>○ 내수면 어업 지원사업 및 특화개발</li> <li>○ 유어장 지정 및 관리</li> <li>○ 대규모 양식단지(해삼서식장) 조성 및 관리</li> <li>○ 수산종자(육·해상) 생산업 허가 및 육성사업</li> </ul>
	<p>자원관리 업무분야 &lt;삭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해 및 내수면 어업지도단속계획 수립</li> <li>○ 해면·내수면 불법 어로행위 단속</li> <li>○ 불법어업 행정처분</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칙어선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관리</li> <li>○ 불법어업감시 CCTV 지원사업</li> <li>○ 불법어업 철거사업 및 행정대집행</li> <li>○ 어업지도선 운영 관리</li> <li>○ 어업관리 및 안전조업 지도</li> <li>○ 어업 재해대책 및 복구계획 수립</li> <li>○ 어선, 어선원, 어업인 재해보험 지원사업</li> <li>○ 어선대행신고소 운영관리</li> <li>○ 수산자원 관리시행계획 수립</li> <li>○ 수산자원 관리수면 및 보호수면 지정</li> <li>○ 수산자원 조성 사업</li> <li>○ 수산종자(해면, 내수면)매입 방류 및 자원조성</li> <li>○ 자율관리어업 육성</li> <li>○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관 지정 및 사후관리</li> <li>○ 기타 어업지도에 관한 업무 전반</li> </ul>
	<p>어선어업 업무분야 &lt;삭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선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li> <li>○ 어선어업 업종별 협회 민원조정</li> <li>○ 총 허용 어획량(TAC) 조정 및 관리</li> <li>○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li> <li>○ 친환경(어선)에너지 절감장비 지원사업</li> <li>○ 소형어선 장비지원사업</li> <li>○ 연근해어업 선진화 장비 지원사업</li> <li>○ 어선사고예방 및 안전장비 지원사업</li> <li>○ 연근해어업 지원(편익)시설 설치사업</li> <li>○ 태(폭)풍 피해어선 복구 사업</li> <li>○ 어선 손실보상 및 분쟁 조정</li> <li>○ 어선등록 및 어선건조(개조) 허가</li> <li>○ 미수검어선 방지대책 추진</li> <li>○ 어선법 관련 과태료 부과 및 관리</li> <li>○ 어선원부 관리 및 발급</li> <li>○ 어선 압류 및 근저당 설정·해제</li> <li>○ 어선관리시스템 운영</li> <li>○ 연근해어업 허가 및 관리</li> <li>○ 어업허가 관련 과태료 부과 및 관리</li> <li>○ 연근해어업 허가어선 실태조사</li> <li>○ 한중일 어업협정 입어관리</li> <li>○ 어획물 운반업 등록</li> <li>○ 어선분야 시험어업 및 연구·교습어업 허가</li> <li>○ 낚시어선업 신고 및 관리</li> <li>○ 낚시어선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업신고(맨손,나잠 등) 수리 및 관리</li> </ul>
	수산물유통가공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물 유통 및 가공산업 종합계획 수립 추진</li> <li>○ 수산물 유통.가공산업 육성 시책발굴 추진 &lt;신설&gt;</li> <li>○ 수산물 유통.가공 관련단체 지원 및 관리 &lt;신설&gt;</li> <li>○ 수산물 지역전략사업 육성지원 &lt;수정&gt;</li> <li>○ 수산물 가공산업의 현대화 지원에 관한 업무 &lt;수정&gt;</li> <li>○ 수산물 위판장 설치·시설개선사업 및 관리 &lt;수정&gt;</li> <li>○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li> <li>○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건립사업</li> <li>○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보급지원사업</li> <li>○ 수산물 위생어상자 보급지원사업</li> <li>○ 수산물가공품 HACCP 인증 및 활성화 지원사업</li> <li>○ 수산물 가공업체 역량강화 지원사업 &lt;신설&gt;</li> <li>○ 수산물 유통사업 활성화 정책지원(어선 얼음구입 등) &lt;신설&gt;</li> <li>○ 수산물 부산물 처리지원사업 &lt;신설&gt;</li> <li>○ 수산물 지역특화 신상품개발지원사업 &lt;신설&gt;</li> <li>○ 수산물 특산품, 관광상품 개발, 육성관리</li> <li>○ 수산물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업무</li> <li>○ 수산물 인증(이력)제 정착사업</li> <li>○ 수산물 원산지 이매패류 증명서 발급 및 지도단속</li> <li>○ 수산물 안정성 조사 및 가격안정 대책추진</li> <li>○ 소금산업 진흥 및 염제조 허가 등 운영관리</li> <li>○ 수산물 가공업(냉동냉장업) 신고 및 관리</li> <li>○ 어업법인 설립 및 등록관리</li> <li>○ 군산 수산물 브랜드 개발 및 육성업무</li> <li>○ 수산물 및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시행</li> <li>○ 해외시장 개척지원(수출상담, 박람회 등)</li> <li>○ 학교 등 공공급식 수산물 납품업체 품질 지원</li> <li>○ 수산물 유통.가공 관련단체 지원 및 육성</li> <li>○ 수산물(수협) 위판상황 및 가격동향 관리</li> <li>○ 수산연구가공거점단지 운영 및 입주업체 관리(특화팀)</li> <li>○ 수산연구가공거점단지 활성화 및 시설개선(특화팀)</li> <li>○ 수산물 거점단지 입주업체 품질향상 지원(특화팀)</li> <li>○ 수산물종합센터 시설 및 운영관리 총괄 (특화팀)</li> <li>○ 수산물종합센터 사용료 부과 및 징수 (특화팀)</li> <li>○ 수산물종합센터 활성화 (특화팀)</li> <li>○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특화팀)</li> <li>○ 해가람 상표지정 가공업체 지도 및 관리 (특화팀)</li> <li>○ 수산물 특화단지 유통·가공업체 역량강화 지원 (특화팀)</li> <li>○ 수산물 특화단지 주변 환경개선 및 정비 (특화팀)</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어업진흥 과 장	어업정책 업무분야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업진흥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li> <li>○ 어업진흥 종합발전 시행계획 수립·시행</li> <li>○ 해양공간 적합성 계획 수립</li> <li>○ 어업진흥 시책발굴 및 평가·목표관리</li> <li>○ 어업분야 지원사업 심의 통합추진</li> <li>○ 어업관련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li> <li>○ 어촌계 설립인가 및 관리</li> <li>○ 귀어·귀촌 지원사업 및 사후관리</li> <li>○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사업</li> <li>○ 어업도우미 지원사업</li> <li>○ 어업경영체 등록 및 지원</li> <li>○ 어가 자녀학자금 지원 및 부채 대책 추진</li> <li>○ 어민 취업확대 대책 계획수립 추진</li> <li>○ 어업인 복지증진 및 의료지원에 관한 업무</li> <li>○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및 공익직불제 지원</li> <li>○ 어민공익수당 지원</li> <li>○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제 지원</li> <li>○ EEZ 골재채취 및 수산교부금 지원</li> <li>○ 연근해어업 제도 조정 및 운영</li> <li>○ 연근해어업 경영개선 등 경쟁력강화에 관한 업무</li> <li>○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관한 업무</li> <li>○ 어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에 관한 업무</li> <li>○ 어업의 분쟁조정에 관한 업무</li> <li>○ 한중일 어업협정 입어관리에 관한 업무</li> <li>○ 어업협정 대체어장 자원 및 조업동향 조사에 관한 업무</li> <li>○ 연근해어업 조업상황 보고 지도관리</li> <li>○ 총허용어획량 기반 어업규제 완화 사업에 관한 업무</li> <li>○ 연근해어업 어구·어법의 관리</li> <li>○ 어구생산업 및 판매업 운영관리</li> <li>○ 연근해어업 관련단체 지원 및 관리</li> <li>○ 어업진흥분야 충무실시계획 수립·시행</li> <li>○ 과 소관 예산편성 및 운영관리</li> <li>○ 업무보고 및 의회업무 관련 전반</li> <li>○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양식산업 업무분야 <신설> <소속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식산업발전 시행계획 수립 추진</li> <li>○ 어장·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수립·시행</li> <li>○ 내수면어업 종합개발계획 수립 추진</li> <li>○ 대규모 양식단지 조성 및 관리</li> <li>○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li> <li>○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양식어업·어장 개발 보급</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산업 발전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 지원</li> <li>○ 천해 어업·양식업 면허·허가·신고 등 인허가에 관한 업무</li> <li>○ 내수면어업 면허·허가·신고 등 인허가에 관한 업무</li> <li>○ 양식어장 어업장비 임대활용 지원</li> <li>○ 어업·양식업 어업권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li> <li>○ 어장·양식장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업무</li> <li>○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 심의 시행</li> <li>○ 양식어업 현대화지원 사업 및 관리</li> <li>○ 양식어업 재해대책 및 복구 지원</li> <li>○ 어장관리 시행계획 수립 추진</li> <li>○ 어장정화·정비업 운영관리</li> <li>○ 친환경(인증) 부표 보급 등 어장관리 지원</li> <li>○ 어장·양식장 관리선 지정 및 승인</li> <li>○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및 관리</li> <li>○ 내수면어업 친환경 시설 및 특화개발 지원</li> <li>○ 내수면어업 어업권 사후관리</li> <li>○ 내수면 어업계 설립 운영 및 관리</li> <li>○ 수산종자 생산업 허가 및 육성사업</li> <li>○ 유어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li> <li>○ 수산생물 질병 및 방역 관리대책에 관한 업무</li> <li>○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및 관리</li> <li>○ 양식수산물 자조금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li> <li>○ 양식어업 관련단체 지원 및 관리</li> <li>○ 어업권 원부 및 어장도 발급</li> </ul>
	<p>어업자원 업무분야 &lt;신설&gt; &lt;명칭변경&gt; &lt;소속변경&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자원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li> <li>○ 연안어장 수산자원 조성 사업</li> <li>○ 수산종자(해면·내수면) 매입 방류 및 자원조성</li> <li>○ 수산자원 관리수면 및 보호수면 지정</li> <li>○ 수산자원 서식환경 조성·관리(인공어초,바다목장,바다숲 등)</li> <li>○ 친환경 수산생물 산란장 조성에 관한 업무</li> <li>○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li> <li>○ 총허용어획량(TAC) 등 수산자원회복 제도에 관한 업무</li> <li>○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관 지정 및 관리</li> <li>○ 해양포유류 등 자원의 보존에 관한 업무</li> <li>○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에 관한 업무</li> <li>○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li> <li>○ 천해 및 내수면 어업지도단속계획 수립</li> <li>○ 해면·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단속 및 처리</li> <li>○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관리</li> <li>○ 범칙어선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관리</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어업감시 CCTV 지원사업</li> <li>○ 불법어업 철거사업 및 행정대집행</li> <li>○ 어업자협약 및 어업조정 등 어업질서 유지에 관한 업무</li> <li>○ 어선·어선원·어업인 재해보험 지원</li> <li>○ 어업분야 자연재난 예방대책 및 조사에 관한 업무</li> <li>○ 어업지도선 운영 관리</li> <li>○ 자원관리 관련단체 지원 및 관리</li> <li>○ 기타 어업지도에 관한 업무 전반</li> </ul>
	<p>어선어업 업무분야 &lt;신설&gt; &lt;소속변경&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선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li> <li>○ 친환경어선 에너지 절감장비 지원 사업</li> <li>○ 소형어선 안전장비 지원 사업</li> <li>○ 연근해어선 선진화 장비 지원 사업</li> <li>○ 어선사고예방 시스템구축 지원 사업</li> <li>○ 연근해어업 허가·신고 등 인·허</li> <li>○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업무</li> <li>○ 연근해어업 분야 시험·연구·교습어업 허가</li> <li>○ 어업 관계법령 위반행위 과태료 처분 및 관리</li> <li>○ 연근해어업 허가어선 실태조사</li> <li>○ 연근해 어선어업 편익시설 설치 사업</li> <li>○ 어선어업 안전조업 지도 및 관리</li> <li>○ 어선위치정보 보고에 관한 업무</li> <li>○ 어업인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업무</li> <li>○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업무</li> <li>○ 태풍대비 소형어선 안전관리 지원 사업</li> <li>○ 자연재난(태·폭풍) 피해어선 복구 사업</li> <li>○ 어선 손실보상 및 분쟁 조정</li> <li>○ 어선등록 및 어선건조·개조 허가 및 관리</li> <li>○ 어선검사 미이행 방지대책 추진</li> <li>○ 어선법 관련 과태료 부과 및 관리</li> <li>○ 어선원부 관리 및 발급</li> <li>○ 어선 압류 및 근저당 설정·해제</li> <li>○ 어선관리시스템 운영 및 통계 관리</li> <li>○ 낚시어선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li> <li>○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지원 및 육성</li> <li>○ 낚시어선·낚시터업 인허가 및 관리</li> <li>○ 낚시터 안전관리·자원보호 감시원 운영에 관한 업무</li> <li>○ 어선 관련단체 지원 및 관리</li> </ul>
<p>문화예술 과 장</p>	<p>문화정책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과 소관 행정 종합 기획 조정</li> <li>○ 지방문화의 진흥</li> <li>○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문화단체의 지원 및 문화 행사 지원</li> <li>○ 지방문화원 지원 및 지도감독</li> <li>○ 향교 일요학교 운영 및 지원</li> <li>○ 향토 춘추계 석전대제 및 유도회</li> <li>○ 시사편찬</li> <li>○ 군산시 역사자료</li> <li>○ 문화복지 증진 시설물</li> <li>○ 문화복지 증진 시설물 건립추진</li> <li>○ 문화산업 지원 및 육성</li> <li>○ 군산 예술콘텐츠스테이션 구축 및 운영 지원</li> <li>○ 군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li> <li>○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및 운영</li> <li>○ 영화촬영 유치 및 영상 제작 지원</li> <li>○ 역사영화제 개최 및 영화산업 육성</li> <li>○ 주민밀착형 소규모 문화시설 확충</li> <li>○ 문화복지 주요시책 발굴</li> <li>○ 문화 영상업무</li> <li>○ 출판사 및 인쇄소 신고, 지도감독</li> <li>○ 공연장 등록신고 및 지도감독</li> <li>○ 종무업무</li> <li>○ 국어책임관 업무추진</li> <li>○ 기타 국내 타과 및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예술진흥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예술의 진흥</li> <li>○ 지방예술 진흥업무 기획</li> <li>○ 지방 예술단체의 지원</li> <li>○ 각종 예술행사 지원</li> <li>○ 예술업무 전반</li> <li>○ 예총단체 지원 및 지도감독</li> <li>○ 진포예술제 추진 미술장식품 업무</li> <li>○ 예술관람 시설물 건립 추진</li> <li>○ 문화바우처 지원사업</li> <li>○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및 지원사업</li> <li>○ 문화예술의 거리(시민예술촌)조성사업</li> <li>○ 지역특성화예술 교육지원사업</li> <li>○ 각종 예술제 및 사회단체 지원</li> </ul>
	문화재활용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활용 전반에 관한 사항</li> <li>○ 문화재활용 정책개발 및 계획수립</li> <li>○ 문화재활용 공모사업 및 컨설팅 업무</li> <li>○ 문화재활용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li> <li>○ 문화재청 공모사업 추진</li> <li>○ 문화재활용사업 국고보조사업 예산 확보</li> <li>○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기획개발, 관리, 운영</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생문화재사업 프로그램 기획개발, 관리, 운영</li> <li>○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프로그램 기획개발, 관리, 운영</li> <li>○ 서원향교문화재 활용사업 관리, 운영</li> <li>○ 문화재 기획업무 및 콘텐츠 개발</li> <li>○ 문화재 해설사, 문화재공연단 등 양성, 관리, 운영</li> <li>○ 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유지 관리</li> </ul>
	문화재시설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시설 분야 기획업무</li> <li>○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사업 총괄 추진</li> <li>○ 근대역사문화공간 조례 제정 및 운용</li> <li>○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존계획 수립</li> <li>○ 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 및 활용</li> <li>○ 근대문화중심도시 사업추진 관리</li> <li>○ 근대마을조성사업 추진</li> <li>○ 근대역사체험공간 임대 및 시설관리</li> <li>○ 문화재(국가, 등록, 도) 지정 및 해제</li> <li>○ 문화재(국가, 등록, 도) 보수정비 및 유지관리</li> <li>○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조성 및 관련업무</li> <li>○ 명승(선유도 망주봉 일원) 보상 및 정비</li> <li>○ 중요문화재 특별관리반 운영</li> <li>○ 문화재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업무</li> <li>○ 문화재 매매업소 허가 및 관리</li> <li>○ 매장문화재 관련업무</li> <li>○ 향토문화유산 지정, 발굴조사 및 해제</li> <li>○ 천연기념물 지정 및 해제</li> <li>○ 전통사찰 지정 및 해제</li> <li>○ 전통사찰 보수정비</li> <li>○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li> <li>○ 기타 문화재시설 관련 업무추진</li> </ul>
관광진흥 과 장	관광마케팅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소관 행정 종합기획 조정</li> <li>○ 관광진흥 종합계획수립 및 관광마케팅 전반</li> <li>○ 대표관광지 육성사업</li> <li>○ 시간여행 BI 상품(여행상품) 및 기념품 개발 육성</li> <li>○ 스토리텔링 콘텐츠 발굴</li> <li>○ 국내외 홍보마케팅(국내외 관광전, 팸투어 등)</li> <li>○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원</li> <li>○ TPO 관련 업무</li> <li>○ 관광홍보물 제작</li> <li>○ 관광안내체계 구축 및 관리</li> <li>○ 관광업체(여행업 및 관광편의시설업)관리</li> <li>○ 문화관광해설사 및 역사문화탐방 지도사 육성 지도관리</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통역안내원 선발 지도관리</li> <li>○ 군산시티투어버스 운영, 관리</li> <li>○ 관광협력사업(금강권관광협의회 등)</li> <li>○ 스마트관광 플랫폼 구축</li> <li>○ 관광소프트웨어 발굴 및 추진</li> <li>○ 전북관광 투어패스 구축</li> <li>○ 관광안내 홍보</li> <li>○ 관광객통계</li> <li>○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li> <li>○ 관광사업 면허등록의 실효 확인</li> <li>○ 슬로시티 관련 업무 추진</li> <li>○ 과내 다른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축제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 및 행사 전반</li> <li>○ 축제위원회 운영, 관리</li> <li>○ 축제심사 평가</li> <li>○ 축제기획 및 홍보운영</li> <li>○ 군산시간여행축제 추진</li> <li>○ 해맞이 행사 추진</li> <li>○ 선유도해수욕장 썸머페스티벌</li> <li>○ 군산관광스탬프투어 운영</li> <li>○ 여행주간 운영</li> <li>○ 구불길 운영, 관리</li> <li>○ 초원사진관 및 임피역 운영</li> <li>○ 시간여행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관리</li> <li>○ 시간여행축제 시민참여 공모사업 추진</li> <li>○ 시간여행축제 연구용역 추진</li> <li>○ 전북1000리길 사업 추진</li> <li>○ 기타 관광분야 행사추진 및 지원</li> </ul>
	관광개발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수립 추진</li> <li>○ 관광자원 및 관광지 개발사업추진</li> <li>○ 생태.녹색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li> <li>○ 동서연해안 관광벨트 구축업무 추진</li> <li>○ 은파관광지 개발 업무</li> <li>○ 해양관광지관련 개발계획수립 및 SOC지원</li> <li>○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기본계획수립 및 협의</li> <li>○ 선유도해수욕장 관광편의시설 관리</li> <li>○ 고군산군도 관광편의시설 유지관리 업무</li> <li>○ 관광호텔업무 추진</li> <li>○ 금강호 관광지 개발</li> <li>○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추진</li> </ul>
	관광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안내관 정비 및 관리업무 추진</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안내소 유지관리</li> <li>○ 관광편의 시설업무</li> <li>○ 은파관광지 유지관리(보수설계 및 시설물관리)</li> <li>○ 은파관광지 내 경관조명 및 전기시설 관리</li> <li>○ 관광지내 가로등 시설관리</li> <li>○ 은파관광지 내 습지 및 조경관리</li> <li>○ 은파관광지 내 야외무대 대관 및 운영관리</li> <li>○ 은파물빛다리 유지관리(경관조명, 데크, 음악분수)</li> <li>○ 청암산 오토캠핑장 시설 관리</li> <li>○ 기타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추진</li> <li>○ 유원시설업 등록,신고 및 지도</li> </ul>
도시재생 과 장	재생기획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내 일반서무 및 각종 업무보고 총괄</li> <li>○ 일반회계 예산편성 및 관리(사업별 정산총괄)</li> <li>○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li> <li>○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및 변경</li> <li>○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가공모 대응전략 수립(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형)</li> <li>○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li> <li>○ 도시재생 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li> <li>○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li> <li>○ 도시재생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li> <li>○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li> <li>○ 도시재생지원(현장)센터 인력 구성 및 운영</li> <li>○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 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건축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포함)</li> <li>○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 계획 수립</li> <li>○ 도시재생특별재생지역 지정 및 활성화 계획 수립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li> <li>○ 주민제안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li> <li>○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일반근린형) 시행 및 정산</li> <li>○ 도시재생인정제도 사업 발굴 및 공모대응</li> <li>○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사업 발굴 및 시행</li> <li>○ 도시재생활성화 구역 내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li> <li>○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지범지구) 발굴 및 사업시행</li> <li>○ 기능복합형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사업 시행</li> <li>○ 도시재생활성화 구역 내 마을기업, 협동조합 관리</li> <li>○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li> <li>○ 중장기 생활SOC 공급계획 수립 및 대응 &lt;신설&gt;</li> <li>○ 노면열차 등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연계를 통한 도시재생기반시설 확충 방안 계획수립 &lt;신설&gt;</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p>도시활성화 업무분야 &lt;명칭변경&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재생 사업 중 단위사업(축제, 주민공모사업, 역량강화, 거버넌스) 시행 및 정산 &lt;신설&gt;</li> <li>○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선도지역,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li> <li>○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및 도시재생사업 평가 총괄</li> <li>○ 도시재생활성화지역(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사업시행 및 정산</li> <li>○ 도시재생활성화 지역(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내 마을기업, 협동조합 육성 사업발굴 및 시행</li> <li>○ 국토교통부 예비 사회적 사회적 기업 경제조직 구성 및 지원(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li> <li>○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주민공모·제안사업 시행</li> <li>○ 도시재생특별재생지역 활성화 사업 시행 및 정산</li> <li>○ 도시재생활성화 구역 내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원사업 시행</li> <li>○ 도시재생법 제26조의 2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관한 사업 시행</li> </ul>
	<p>주거재생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해제</li> <li>- 토지 및 지장물 조사, 손실보상</li> <li>- 주거환경개선 현지개량사업</li> <li>-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공동주택 사업 행정지원</li> <li>-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유지 매매, 양여 관리</li> <li>- 주거환경지구내 시유지 대부료 부과 및 징수</li> <li>-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유지 및 관리</li> </ul> </li> <li>○ 고지대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지구 지정·해제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도시재생뉴딜사업 지구 내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동네살리기형, 주거지지원형</li> <li>- 단위사업별 보상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시행</li> <li>-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자율주택정비사업(주거지지원형)</li> <li>-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주거지 재생사업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li> </ul> </li> <li>○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자율주택정비사업</li> <li>○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지역 생활여건 사업 사업 시행 및 정산&lt;신설&gt;</li> </ul> </li> <li>○ 시민문화회관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 및 정산, 유지관리 &lt;신설&gt;</li> </ul>
	<p>재생전략 업무분야 &lt;명칭변경&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지역 생활여건 사업 사업 시행 및 정산&lt;삭제&gt;</li> </ul> </li> <li>○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발굴 및 사업시행&lt;신설&gt;</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업무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트램 도입 추진&lt;신설&gt;</li> <li>○ 도시재생 인정사업(시민문화회관 경암동 등) 시행 및 정산&lt;신설&gt;</li> <li>○ 도시재생예비사업(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연차별 국가공모 대응 수립</li> <li>○ 도시재생예비사업(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 주민공모·제안사업 평가 및 시행</li> <li>- 소규모 도시재생대학 및 역량강화사업 추진</li> <li>- 마을기업, 협동조합 육성 등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사업발굴시행</li> <li>- 주민참여 프로젝트 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li> </ul> </li> <li>○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li> <li>○ 도시재생사업 주요 시설물 유지관리</li> </ul>
체육진흥 과 장	체육진흥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육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li> <li>○ 시민생활체육 활성화 시책수립 및 지원</li> <li>○ 전국(국제)대회유치 및 체육행사 지원</li> <li>○ 군산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지원 및 지도감독</li> <li>○ 체육시설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li> <li>○ 체육시설업 등록신고 및 지도감독</li> <li>○ 군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li> <li>○ 스포츠마케팅</li> <li>○ 월명체육센터 및 국민체력100인증센터 운영·관리</li> <li>○ 장애인체육관 시설관리 및 운영</li> <li>○ 소규모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공모 및 해양스포츠대회 유치사업</li> </ul>
	운 영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명종합경기장 체육시설 대관 및 운영</li> <li>○ 월명종합경기장 체육행사, 경기운영, 경기용품 등 관리</li> <li>○ 임대 공공 체육시설 비품 및 재산 관리</li> <li>○ 월명종합경기장 조경 및 환경정비</li> <li>○ 벚꽃맞이 행사지원</li> <li>○ 월명종합경기장 외 체육시설물 대관 및 운영 (실내배드민턴장, 각종 경기장 등)</li> <li>○ 월명종합경기장 외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li> </ul>
	수영장관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명수영장 운영 및 관리</li> <li>○ 소룡동 야외수영장 운영 및 관리</li> <li>○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li> <li>○ 새만금해양레포츠센터 관리 운영</li> </ul>
	시 설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체육시설 건립 및 예산관리</li> <li>○ 월명체육센터 및 서군산복합체육센터 건립</li> <li>○ 월명종합경기장 체육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li> <li>○ 월명종합경기장 체육시설 전기, 기계설비 분야</li> <li>○ 월명종합경기장 시특법 관리업무</li> </ul>
	국민체육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육시설 대관 및 운영</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영장 및 각 경기장 유지보수 및 관리</li> <li>○ 운영비품 및 용품 등 관리</li> <li>○ 이용객 보건 및 안전관리</li> </ul>
위생행정 과 장	위생행정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 소관 행정 종합기획</li> <li>○ 예산회계 편성 및 관리 등 과 서무업무</li> <li>○ 위생행정 종합계획 수립&lt;수정&gt;</li> <li>○ 이·미용사 면허 관리</li> <li>○ 공중위생업소 신고·관리 및 행정처분&lt;수정&gt;</li> <li>○ 공중위생관련업소 지도 단속&lt;삭제&gt;</li> <li>○ 공중위생업소 등 지원&lt;신설&gt;</li> <li>○ 위생용품 등 제조업 신고·관리 및 행정처분&lt;수정&gt;</li> <li>○ 공중위생업소 및 노래연습장 위생교육 관리&lt;수정&gt;</li> <li>○ 다중이용시설(약수터) 위생 관리</li> <li>○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 등록·관리 및 행정처분&lt;수정&gt;</li> <li>○ 노래연습장 등록·관리 및 행정처분&lt;수정&gt;</li> <li>○ 게임제공업,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PC방)등록관리 및 지도단속&lt;삭제&gt;</li> <li>○ 문화컨텐츠업소(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일반게임 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등) 등록·관리 및 행정처분 &lt;신설&gt;</li> <li>○ 음반,비디오,게임물 판매업 등록관리 및 지도단속&lt;삭제&gt;</li> <li>○ 시청물 제공업 등록관리 및 지도단속&lt;삭제&gt;</li> <li>○ 공중위생, 문화컨텐츠 관련 업소 지도단속&lt;삭제&gt;</li> <li>○ 공중위생, 문화컨텐츠 관련 업소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lt;삭제&gt;</li> <li>○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관리</li> <li>○ 음식 특화거리 조성 및 음식 관광산업 육성&lt;삭제&gt;</li> <li>○ 짬뽕특화사업 업무 전반&lt;수정&gt;</li> <li>○ 향토 전통 음식 발굴 육성&lt;삭제&gt;</li> <li>○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식품위생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위생 종합계획 수립</li> <li>○ 식품 접객업 허가 및 신고 관리&lt;삭제&gt;</li> <li>○ 식품 접객업(일반음식점, 휴흥·단란주점) 허가·신고 관리 및 행정처분(신설)</li> <li>○ 식품위생(일반음식점, 휴흥·단란주점) 관련단체 지도 관리&lt;수정&gt;</li> <li>○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등 지원</li> <li>○ 음식문화 개선 업무 및 지원&lt;수정&gt;</li> <li>○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관리&lt;삭제&gt;</li> <li>○ 모범업소 지정 관리</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li> <li>○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 관리&lt;삭제&gt;</li> <li>○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지도단속 및 무허가 관리</li> <li>○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과징금·과태료 부과·징수&lt;삭제&gt;</li> <li>○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통보 및 사후관리</li> <li>○ 위생등급 업소 지정 관리</li> <li>○ 군산 맛집 지정 관리</li> <li>○ 향토전통·대표음식 발굴·육성&lt;신설&gt;</li> <li>○ 식품접객업소 행정소송&lt;삭제&gt;</li> </ul>
	식품안전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안전 기본계획 수립 시행</li> <li>○ 위해식품 관리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li> <li>○ 식품제조·가공업소등 등록(신고)·관리 및 위생등급제 운영&lt;수정&gt;</li> <li>○ 식품제조·가공업소등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징수</li> <li>○ 식품첨가물 및 용기포장류 제조업 등록(신고)·관리&lt;수정&gt;</li> <li>○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수거검사 등 &lt;신설&gt;</li> <li>○ 식품접객업소(제과점) 영업 신고·관리 및 행정처분 &lt;신설&gt;</li> <li>○ 식품위생(제과점) 관련단체 지도·관리&lt;신설&gt;</li> <li>○ 공유주방 등록 관리 및 행정처분&lt;신설&gt;</li> <li>○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신고·관리 및 행정처분&lt;수정&gt;</li> <li>○ HACCP, 유전자재조합식품 위생지도 관리&lt;수정&gt;</li> <li>○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관리 및 행정처분&lt;수정&gt;</li> <li>○ 시니어감시원 관리&lt;신설&gt;</li> <li>○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및 지도관리</li> </ul>
	유통식품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li> <li>○ 식중독 예방관리</li> <li>○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관리 및 행정처분 관리&lt;신설&gt;</li> <li>○ 식품위생(휴게음식점) 관련단체 지도·관리&lt;신설&gt;</li> <li>○ 식품소분·판매업 등 신고·관리 및 행정처분&lt;수정&gt;</li> <li>○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관리 및 위생지도 관리&lt;수정&gt;</li> <li>○ 유통식품 위생관리 지도 및 안전성 수거 검사 등</li> <li>○ 부정불량식품 지도·관리&lt;신설&gt;</li> <li>○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운영 관리&lt;수정&gt;</li> <li>○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 전반</li> <li>○ 조리사 면허 발급 및 영양사 관리</li> <li>○ 집단급식소 및 식품소분·판매업 행정처분 및 과태료 징수 &lt;삭제&gt;</li> </ul>
복지정책	복지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과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과 장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과 예산 및 회계 업무전반</li> <li>○ 군경묘지 현충 시설물 관리 및 국가유공자 안장사무</li> <li>○ 주민생활지원서비스종합계획 수립·조정</li> <li>○ 3.1절, 현충일행사</li> <li>○ 노숙인시설업무</li> <li>○ 재해구호(이재민 실태조사, 구호금품 지급)등</li> <li>○ 사회복지무 요원 관리</li> <li>○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li> <li>○ 행정재산 시설 및 물품 관리</li> <li>○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li> <li>○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및 시행결과 평가</li> <li>○ 사회복지관련 행사 추진</li> <li>○ 기타 국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지역복지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li> <li>○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li> <li>○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li> <li>○ 종합사회복지관 운영</li> <li>○ 이웃돕기 및 후원결연</li> <li>○ 복지자원 서비스 제공기관간 연계</li> <li>○ 지역자원의 발굴·동원·연계·관리</li> <li>○ 사회복지공동모금회관련 업무 지원</li> <li>○ 사회복지협의회 보조금 지원</li> </ul>
	기초생활 업무분야 <업무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결정 및 통지</li> <li>○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생계,해산장제,교육)</li> <li>○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징수 및 관리</li> <li>○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지원</li> <li>○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li> <li>○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li> <li>○ 의료급여부당이득금(구상금)부과 및 체납관리</li> <li>○ 의료급여 진료비 정산 및 환수</li> <li>○ 의료급여 중복·이중청구 관리</li> <li>○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운영</li> <li>○ 의료급여 사후관리(의료급여보상금, 환급금, 향암면역 초과자 및 사망 후 관리, 중복투약자 관리)</li> <li>○ 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지원</li> <li>○ 의료급여수급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li> <li>○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틀니·임플란트 등록 지원</li> <li>○ 의료급여대상자 자격 관리</li> <li>○ 의료급여 대지급금 지원 및 관리</li> <li>○ 의료급여대상자 사례관리</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지원</li> <li>○ 의료급여 상해요인 조사관리</li> <li>○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보장구지원 관리</li> <li>○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관리</li> <li>○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및 조건부과</li> <li>○ 자활사업대상자 관리(자활지원계획)</li> <li>○ 자활사업 참여 결과 조건불이행자 결정 및 관리</li> <li>○ 조건부수급자 맞춤형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사업</li> <li>○ 근로빈곤층 취업우선 지원 사업</li> <li>○ 자활근로사업(시운영, 민간위탁)운영</li> <li>○ 자활기업 지원 사업</li> <li>○ 지역자활센터 지원 및 지도 점검</li> <li>○ 자산형성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희망 I, II 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li> </ul> </li> <li>○ 자활기금 융자 및 상환 관리</li> <li>○ 차상위 자활보장결정 및 통지</li> </ul>
	희망복지지원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복지 업무전반</li> <li>○ 군산시 희망 129센터 운영·관리</li> <li>○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li> <li>○ 통합사례관리사 운영·관리</li> <li>○ 읍면동 복지사업 지원·관리</li> <li>○ 지역보호체계 운영·관리</li> <li>○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li> <li>○ 민간기관 긴급복지 지원 업무 전반</li> <li>○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 운영</li> <li>○ 지역자원 연계 사업 운영</li> </ul>
	통합조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규신청자 공적자료 요청</li> <li>○ 추가 제출서류 징구 및 실태조사 실시</li> <li>○ 조사결과 반영</li> <li>○ 보장결정 이전 조사 관련 소명처리</li> <li>○ 타부처 업무 조사(보훈청, 교육부 등)</li> </ul>
	통합관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급여 및 서비스 대상자 수시 및 정기 확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자료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li> <li>- 부양의무자 및 부정수급자 조사 등</li> </ul> </li> <li>○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재산변동, 가구원 인적변동 등</li> </ul> </li> </ul>
경로장애인 과 장	경로복지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li> <li>○ 일반서무, 예산, 회계, 경리, 재산관리 등</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로복지 업무기획 및 업무전반</li> <li>○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추진</li> <li>○ 기초연금 보장결정 및 지원</li> <li>○ 경로식당 운영 및 재가노인식사 배달사업 추진</li> <li>○ 노인건강진단 사업</li> <li>○ 거동불편 노인보행보조기 지원</li> <li>○ 대한노인회 운영지원</li> <li>○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지원</li> <li>○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li> <li>○ 노인 교실 신고 및 운영지원</li> <li>○ 노인복지기금관리 및 운영</li> <li>○ 실종 및 가출 노인 관리</li> <li>○ 어버이날 행사 및 경로효친 업무 추진</li> <li>○ 노인의 날 행사추진</li> <li>○ 경로복지 관련 법인 관리</li> <li>○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li> <li>○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지원</li> <li>○ 경로우대시책 추진</li> <li>○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li> <li>○ 기타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p>경로시설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복지시설업무 기획 및 업무 총괄</li> <li>○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 운영지원</li> <li>○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운영지원</li> <li>○ 노인재가복지시설 설치 운영지원</li> <li>○ 노인복지시설 입.퇴소 운영관리</li> <li>○ 경로당 설치 및 변경 신고</li> <li>○ 경로당 운영 지원</li> <li>○ 경로당 집기 지원</li> <li>○ 경로당 신축, 증축, 개축, 개보수사업 추진</li> <li>○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추진</li> <li>○ 노인재가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추진</li> <li>○ 노인시설관련 사회복지법인 관리</li> <li>○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관리</li> <li>○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관리</li> </ul>
	<p>장애인복지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단체 지원 및 관리</li> <li>○ 장애인단체 기능보강사업 추진</li> <li>○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li> <li>○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진</li> <li>○ 장애연금, 수당(아동수당) 지원</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등록 및 심판청구·재판정 관리</li> <li>○ 장애통합카드관리 교부 및 관리</li> <li>○ 장애인 민관협의체 관리</li> <li>○ 장애인 의료비 및 등록진단비 지원</li> <li>○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li> <li>○ 장애인가정 출산지원비 지원</li> <li>○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추진</li> <li>○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 및 서비스 연계</li> <li>○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li> <li>○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li> <li>○ 장애인 신문 구독료 지원</li> <li>○ 재가여성장애인CCTV, 지적장애인 배회감지지 설치지원 &lt;신설&gt;</li> <li>○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교부사업 &lt;신설&gt;</li> </ul>
	<p>장애인시설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li> <li>○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li> <li>○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li> <li>○ 장애인 복지시설 입·퇴소 관리</li> <li>○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li> <li>○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li> <li>○ 장애인주차표지 교부 및 관리</li> <li>○ 장애인 편의시설 건축협의 및 지원센터 지원</li> <li>○ 재가여성장애인 CCTV, 지적장애인 배회감지기 설치지원 &lt;삭제&gt;</li> <li>○ 장애인 시설 생계비 지원</li> <li>○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교부사업 &lt;삭제&gt;</li> <li>○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li> </ul>
	<p>사회서비스 업무분야 &lt;명칭변경&gt; &lt;업무조정&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 추진 &lt;수정&gt;</li> <li>○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 추진 &lt;삭제&gt;</li> <li>○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li> <li>○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서비스 사업 추진 &lt;수정&gt;</li> <li>○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추진</li> <li>○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사업 추진</li> <li>○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추진 &lt;신설&gt;</li> <li>○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 &lt;신설&gt;</li> <li>○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추진 &lt;신설&gt;</li> <li>○ 언어발달지원사업 추진 &lt;신설&gt;</li> <li>○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지정), 휴폐업 관리 &lt;신설&gt;</li> <li>○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점검 및 지도관리 &lt;신설&gt;</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사회서비스 관련 업무 &lt;신설&gt;</li> <li>○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및 조건부과 &lt;삭제&gt;</li> <li>○ 자활사업대상자 관리(자활지원계획) &lt;삭제&gt;</li> <li>○ 자활사업 참여 결과 조건불이행자 결정 및 관리 &lt;삭제&gt;</li> <li>○ 조건부수급자 맞춤형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사업 &lt;삭제&gt;</li> <li>○ 근로빈곤층 취업우선 지원 사업 &lt;삭제&gt;</li> <li>○ 자활근로사업(시운영, 민간위탁)운영 &lt;삭제&gt;</li> <li>○ 자활기업 지원 사업 &lt;삭제&gt;</li> <li>○ 지역자활센터 지원 및 지도 점검 &lt;삭제&gt;</li> <li>○ 자산형성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희망 I, II 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li> </ul> </li> <li>○ 자활기금 융자 및 상환 관리</li> <li>○ 차상위 자활보장결정 및 통지</li> </ul>
	장묘시설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사시설 기획업무</li> <li>○ 화장장 및 봉안당 운영 관리</li> <li>○ 매·화장 및 묘지에 관한 업무</li> <li>○ 공·사설 봉안당 및 자연장에 관한 업무</li> <li>○ 공·사설 공원묘지에 관한 사무</li> <li>○ 장례식장 설치 신고 및 지도점검</li> <li>○ 장사시설 주변 지역주민 지원기금 관련 업무</li> </ul>
아동정책 과 장 <명칭변경>	아동정책 업무분야 <업무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정책 총괄기획 및 조정</li> <li>○ 아동친화 주요업무 계획 수립</li> <li>○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li> <li>○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업무</li> <li>○ 아동영향평가제도 업무</li> <li>○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li> <li>○ 영유아 상해보험 추진</li> <li>○ 부모학교 운영</li> <li>○ 아동행복예산서</li> <li>○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li> <li>○ 생생직업체험교실 운영</li> <li>○ 어린이 숲체험 놀이교실 운영</li> <li>○ 어린이 놀이터 놀이수업 운영</li> <li>○ 어린이 숲속 걷기대회</li> <li>○ 가천 그림그리기대회 지원</li> <li>○ 어린이장난감도서관 운영(소통)</li> <li>○ 새만금어린이랜드 프로그램 지원</li> <li>○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li> <li>○ 어린이공연장(극장) 관리 및 운영&lt;삭제&gt;</li> </ul>
	보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정책 수립</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관리</li> <li>○ 어린이집 수급계획 수립</li> <li>○ 어린이집 신규인가 및 변경인가</li> <li>○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li> <li>○ 어린이집 설치 사전상담</li> <li>○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 및 재위탁</li> <li>○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위탁 취소</li> <li>○ 어린이집 평가인증</li> <li>○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 및 회의 소집</li> <li>○ 어린이집 예산·결산 승인</li> <li>○ 어린이집 정기(수시) 지도점검</li> <li>○ 어린이집 시정 및 변경 명령</li> <li>○ 어린이집 행정처분(운영정지·폐쇄)</li> <li>○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li> <li>○ 보육교사 자격정지·자격취소</li> <li>○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청문</li> <li>○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및 징수</li> <li>○ 어린이집 행정쟁송</li> <li>○ 어린이집 현황 분기보고</li> <li>○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li> <li>○ 보육료 등 보조금 예산 지원 및 정산</li> <li>○ 영유아복지대상자 보장결정 및 자격대상 변동관리</li> <li>○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현대화사업</li> <li>○ 직장어린이집 설치</li> <li>○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및 시범사업 운영</li> <li>○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li> <li>○ 어린이집연합회 행사지원 및 관리</li> <li>○ 야간연장 어린이집 지정관리</li> <li>○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임면관리</li> <li>○ 경력(재직)증명서 발급</li> <li>○ 가정양육수당 지급</li> </ul>
	아동복지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관련업무 기획 및 운영전반</li> <li>○ 사회복지법인(아동) 및 시설 지도 감독</li> <li>○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li> <li>○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관리</li> <li>○ 학대피해아동 운영·관리</li> <li>○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li> <li>○ 경계성 지능아동 자립지원</li> <li>○ 요보호아동 시설 입·퇴소 및 사후관리</li> <li>○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양육상황 점검</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급식지원 및 관리(방학중, 학기중, 공휴일)</li> <li>○ 아동수당 대상자 결정 및 지원</li> <li>○ 디딤씨앗통장 발급·해지</li> <li>○ 입양아동 및 입양기관 지원</li> <li>○ 가정위탁아동 보호</li> <li>○ 어린이날 행사 추진</li> </ul>
	아동보호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보호 업무 전반</li> <li>○ 아동보호체계 개편</li> <li>○ 아동학대 조사 업무</li> <li>○ 아동학대 긴급전화 운영</li> <li>○ 아동학대 신고접수</li> <li>○ 아동학대 응급조치, 즉각분리</li> <li>○ 아동학대 현장조사</li> <li>○ 아동학대 사례판단(사례회의)</li> <li>○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li> <li>○ 아동학대 사례관리 지도·감독</li> <li>○ 아동학대 사례종결</li> <li>○ 아동학대행위자 수사의뢰</li> <li>○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li> <li>○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li> <li>○ 정보연계협의체 운영</li> <li>○ 아동학대 예방사업</li> <li>○ e아동행복지원사업</li> <li>○ 아동학대 통계작성</li> </ul>
	드림스타트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드림스타트 운영 총괄</li> <li>○ 드림스타트센터 청사 관리</li> <li>○ 취약아동 통합사례관리</li> <li>○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채용 및 관리</li> <li>○ 지원체계 구성 운영 및 지역자원 연계</li> <li>○ 인지/언어 분야 서비스기획 및 프로그램 진행 및 개발</li> <li>○ 정서/행동 분야 서비스기획 및 프로그램 진행 및 개발</li> <li>○ 신체/건강 분야 서비스기획 및 프로그램 진행 및 개발</li> <li>○ 지역아동센터 지원운영 총괄</li> <li>○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보조금 지원 및 정산 (기본운영비, 특성별 지원보조금 등)</li> <li>○ 지역아동센터 정기·수시 지도감독</li> <li>○ 지역아동센터 관련업무 행정쟁송</li> <li>○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 지원 및 정산</li> <li>○ 지역아동센터 급식 실태점검</li> <li>○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관련 업무전반</li> <li>○ 부모/가족 분야 서비스기획 및 프로그램 진행 및 개발</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맘스카페 운영 및 관리</li> <li>○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입·퇴소보고(돌봄결정) 승인</li> <li>○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돌봄결정 통지</li> <li>○ 지역아동센터 예산·결산 승인</li> <li>○ 지역아동센터 신규 설치 및 이전 등 컨설팅</li> <li>○ 지역아동센터 휴업·폐업·재개 신고</li> <li>○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관리</li> <li>○ 지역아동센터 행사지원 및 관리</li> <li>○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및 관리</li> </ul>
<p>여성가족청소년 과 장 &lt;명칭변경&gt;</p>	<p>여성정책 업무분야 &lt;업무조정&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li> <li>○ 시설물 유지 관리</li> <li>○ 일반 서무, 예산, 회계, 경리, 재산관리 등</li> <li>○ 여성 복지 업무 기획 조정</li> <li>○ 저소득 한부모가족 관리 및 지원</li> <li>○ 여성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 감독</li> <li>○ 여성권리 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시책 개발</li> <li>○ 여성 정책 개발 종합 기획</li> <li>○ 여성 정책 시행개선 및 평가 분석</li> <li>○ 여성관련 각종행사 지원</li> <li>○ 여성안전 인프라 구축</li> <li>○ 양성평등위원회(양성평등감독관제) 구성 및 운영</li> <li>○ 여성단체 지도 육성</li> <li>○ 양성평등기금 관리</li> <li>○ 한부모가족복지시설(법인)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li> </ul>
	<p>청 소 년 업무분야 &lt;삭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 및 참여활성화 프로그램 운영</li> <li>○ 군산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li> <li>○ 청소년 인권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li> <li>○ 청소년 정책·분석 평가</li> <li>○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li> <li>○ 청소년 동반자 및 안전망 사업추진</li> <li>○ 군산시 청소년상 및 모범청소년 유공자 포상</li> <li>○ 청소년 정책제안 의견수렴 및 모바일 앱 관리</li> <li>○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li> <li>○ 청소년육성위원회, 학교폭력·학교밖 위원회 운영</li> <li>○ 학교밖 청소년 자립지원 및 복지증진</li> <li>○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li> <li>○ 청소년수련시설 위탁관리및운영지원</li> <li>○ 청소년문화행사 및 동아리활동 운영 지원</li> <li>○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관리</li> <li>○ 청소년 위생용품 무상지원</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li> <li>○ 저녁(오후)돌봄교실 사업지원</li> <li>○ 성별영향평가 운영</li> <li>○ 자원봉사센터 관리 및 사업지원</li> <li>○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운영</li> <li>○ 자원봉사단체의 지원</li> <li>○ 자원봉사 홍보 및 교육</li> <li>○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지원</li> <li>○ 자원봉사자 관리 및 수요처 연계 지원</li> <li>○ 공무원 자원봉사 활동 운영</li> <li>○ 이동목욕차량 운영</li> <li>○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여성지원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상담 업무 기획 및 운영전반</li> <li>○ 성·가정폭력 보호시설지원 및 상담지원</li> <li>○ 피해자치료 전담의료 기관업무 및 응급키트관리</li> <li>○ 요보호 여성관리 및 보호</li> <li>○ 여성 교육 종합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li> <li>○ 여성 기술 기능 교육</li> <li>○ 취미 교실 운영</li> <li>○ 여성 사회 교육</li> <li>○ 교육 기자재 관리</li> <li>○ 교육성과의 분석 평가</li> <li>○ 교육 수료자 사후 관리</li> <li>○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수납</li> <li>○ 아동여성 보호 연대운영</li> <li>○ 성·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설치,변경,폐지신고</li> <li>○ 보호시설 입.퇴소관리</li> <li>○ 보장시설수급자 책정 및 생계비 지원</li> <li>○ 성매매예방 교육</li> <li>○ 공유재산 관리(월명동 18-14)</li> <li>○ 여성 취업지원사업 운영</li> <li>○ 그 밖의 여성교육에 관한 사항</li> <li>○ 직장 성희롱예방</li> <li>○ 인력개발센터운영</li> <li>○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li> <li>○ 결혼이민여성지역일자리 취업연계</li> </ul>
	자원봉사 업무분야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봉사센터 관리 및 사업지원</li> <li>○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운영</li> <li>○ 자원봉사단체의 지원</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봉사 홍보 및 교육</li> <li>○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지원</li> <li>○ 자원봉사자 관리 및 수요처 연계 지원</li> <li>○ 공무원 자원봉사 활동 운영</li> <li>○ 이동목욕차량 운영</li> </ul>
	<p>가족다문화지원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 취업 지원 및 취업정보 제공</li> <li>○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지원사업</li> <li>○ 다문화가족 관련 축제 및 행사 지원</li> <li>○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개발</li> <li>○ 결혼이주여성 방문교육사업</li> <li>○ 다문화 가정 현황 및 통계관리</li> <li>○ 그밖에 다문화 정책에 관한 사항</li> <li>○ 출산 업무 총괄 및 기획 조정 &lt;삭제&gt;</li> <li>○ 출산지원금 지원 및 관련 조례 제·개정</li> <li>○ 출산장려 홍보, 대외협력 및 민간활동 지원 &lt;삭제&gt;</li> <li>○ 출산 대책관련 시책 개발추진 및 홍보 &lt;삭제&gt;</li> <li>○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구성 운영 및 관리 &lt;삭제&gt;</li> <li>○ 국내·국제 결혼 중개업소 신고등록 및 지도감독</li> <li>○ 군산시가족센터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lt;수정&gt;</li> <li>○ 군산시가족센터 위탁 관리 &lt;수정&gt;</li> <li>○ 아이돌보미 사업 지원</li> <li>○ 아이돌봄 지원대상 결정통지</li> <li>○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관리</li> <li>○ 군산 생활SOC 복합화 가족센터 건립사업 &lt;신설&gt;</li> <li>○ 첫만남이용권 사업 &lt;신설&gt;</li> </ul>
	<p>청 소 년 업무분야 &lt;신설&gt; &lt;소속변경&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 및 참여활성화 프로그램 운영</li> <li>○ 군산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li> <li>○ 청소년 인권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 및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건립</li> <li>○ 청소년 정책·분석 평가</li> <li>○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li> <li>○ 청소년 동반자 및 안전망 사업추진</li> <li>○ 군산시 청소년상 및 모범청소년 유공자 포상</li> <li>○ 청소년 정책제안 의견수렴 및 청소년 참여 예산제 운영</li> <li>○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li> <li>○ 청소년육성위원회, 학교폭력·학교밖 위원회 운영</li> <li>○ 학교밖 청소년 자립지원 및 복지증진</li> <li>○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li> <li>○ 청소년수련시설 위탁관리및운영지원</li> <li>○ 청소년문화행사 및 동아리활동 지원</li> <li>○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관리</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li> <li>○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lt;신설&gt;</li> <li>○ 자매도시 청소년 상호 문화교류 사업 &lt;신설&gt;</li> <li>○ 청소년증 발급 관리 &lt;신설&gt;</li> <li>○ 청소년 참여위원회, 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지원 &lt;신설&gt;</li> <li>○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지원 및 과징금 부과·징수·포상금 지급&lt;신설&gt;</li> <li>○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제 운영 &lt;신설&gt;</li> <li>○ 청소년 컴퓨터 운영지원 &lt;신설&gt;</li> <li>○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지원 &lt;신설&gt;</li> <li>○ 청소년 스트레스 해소 박람회 운영·추진 &lt;신설&gt;</li> </ul>
<p>환경정책 과 장</p>	<p>환경정책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 소관 행정 종합기획</li> <li>○ 환경정책 종합계획 수립 &lt;수정&gt;</li> <li>○ 환경보전 홍보교육 및 행사관련 업무</li> <li>○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li> <li>○ 환경 체험교육 프로그램 지원 운영 &lt;삭제&gt;</li> <li>○ 사회단체 환경사업 지원 및 관리</li> <li>○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관리</li> <li>○ 직도사격장 환경영향 조사</li> <li>○ 군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li> <li>○ 군산비행장 소음 및 토양오염관련 제반</li> <li>○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li> <li>○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p>기후환경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수립 &lt;신설&gt;</li> <li>○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종합계획 수립 &lt;수정&gt;</li> <li>○ 수소차 구매지원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lt;수정&gt;</li> <li>○ 탄소포인트제 운영</li> <li>○ 저탄소녹색성장 총괄업무 &lt;삭제&gt;</li> <li>○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추진</li> <li>○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전개</li> <li>○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및 관리 &lt;삭제&gt;</li> <li>○ 환경신문고 관련업무 &lt;삭제&gt;</li> <li>○ 석면건축물관리 및 석면피해구제 업무</li> <li>○ 어린이 활동공간 지도점검</li> <li>○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업무</li> <li>○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업무</li> <li>○ 비산먼지, 소음·진동 생활민원 처리</li> <li>○ 비산먼지, 특정공사 신고 및 지도단속</li> <li>○ 다중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련 업무</li> </ul>
	<p>환경관리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 수립 &lt;수정&gt;</li> <li>○ 환경관련법 위반시설 수사 및 사건 송치 &lt;수정&gt;</li> <li>○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 및 지도단속 &lt;수정&gt;</li> <li>○ 타 부서 환경관계법 적법성 검토 협의 &lt;수정&gt;</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취저감을 위한 소통협의체 구성 운영</li> <li>○ 대기 및 소음 민원사항 접수 및 처리 &lt;삭제&gt;</li> <li>○ 유해화학물질 사고 현장출동 및 초기대응 &lt;수정&gt;</li> <li>○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관리) &lt;수정&gt;</li> <li>○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 업무</li> <li>○ 석탄발전소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강화 및 시민감시단 운영 &lt;삭제&gt;</li> <li>○ 환경기술협의회 관리</li> <li>○ 화물물질 위해관리계획서 검토의견 작성 &lt;신설&gt;</li> <li>○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lt;신설&gt;</li> <li>○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수립 &lt;신설&gt;</li> <li>○ 화학물질 배출저감사업장 관리 &lt;신설&gt;</li> <li>○ 환경감시용 드론 장비 관리 운영 &lt;신설&gt;</li> <li>○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lt;신설&gt;</li> <li>○ 환경신문고(128) 운영 및 배출시설 민원처리 &lt;신설&gt;</li> <li>○ 대기오염물질 이동측정차량 운영 관리 &lt;신설&gt;</li> <li>○ 대기오염물질 측정장비 운용 데이터 관리 &lt;신설&gt;</li> <li>○ 악취배출원 조사 현황 파악 및 민원처리 &lt;신설&gt;</li> <li>○ 악취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lt;신설&gt;</li> <li>○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관리 &lt;신설&gt;</li> <li>○ 기타수질오염과 설치 신고 및 지도점검 &lt;신설&gt;</li> </ul>
	수질보전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계 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li> <li>○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제반사항 추진 &lt;수정&gt;</li> <li>○ 전국오염원 조사 관련 업무 &lt;수정&gt;</li> <li>○ 수질오염측정망(하천, 호소) 운영 &lt;수정&gt;</li> <li>○ 금강수계관리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 &lt;수정&gt;</li> <li>○ 동군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lt;수정&gt;</li> <li>○ 동군산산업단지 입주기업 폐수처리 관련 협의 &lt;수정&gt;</li> <li>○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 관리 &lt;신설&gt;</li> <li>○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사업 시·군 평가 업무 &lt;신설&gt;</li> <li>○ 수질오염사고 방제 및 원인조사</li> <li>○ 가축분뇨 관리 계획 수립 및 추진 &lt;수정&gt;</li> <li>○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lt;수정&gt;</li> <li>○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허가 업무 &lt;수정&gt;</li> <li>○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li> <li>○ 악취방제단 운영 및 악취 모니터링 &lt;신설&gt;</li> <li>○ 새만금내측 생태환경모니터링 추진(삭제)</li> </ul>
	생태환경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환경 보전계획 수립</li> <li>○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li> <li>○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기획 조정</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마당 조성사업 관리</li> <li>○ 어린이 생태놀이터 조성 및 관리</li> <li>○ 야생 생물보호와 수렵 면허발급 및 단속</li> <li>○ 특정도서 관리</li> <li>○ 야생동물 피해 보상 및 예방사업</li> <li>○ 생태계 교란생물 분포도 조사 및 제거사업</li> <li>○ 철새도래지 감시 및 비둘기사 관리</li> <li>○ 생태계서비스지불제관리계약사업 추진 &lt;수정&gt;</li> <li>○ 철새 도래지 관리 및 불법수렵 단속</li> <li>○ 야생동물 보호구역 관리</li> <li>○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및 관리</li> <li>○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및 관리</li> </ul>
	<p>대기환경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세먼지특별법 제반사항 및 대책수립</li> <li>○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li> <li>○ 전기화물차 및 전기버스 보급 지원 &lt;신설&gt;</li> <li>○ 전기충전시설 관리단속 및 과태료 부과 &lt;신설&gt;</li> <li>○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li> <li>○ 노후경유차 저공해촉진 및 지원사업</li> <li>○ 어린이통학차 및 화물차 LPG 전환사업</li> <li>○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관련 업무</li> <li>○ 자동차 배출가스 민원처리 등</li> <li>○ 대기오염측정소 설치 및 운영 관리</li> <li>○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lt;신설&gt;</li> <li>○ 취약계층 등 미세먼지 마스크 무료 지원 &lt;삭제&gt;</li> <li>○ 미세먼지 매뉴얼, 안전 어플 제작 및 배포 &lt;삭제&gt;</li> </ul>
	<p>생태교육 업무분야 &lt;신설&gt; &lt;소속변경&gt; &lt;명칭변경&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li> <li>○ 국가 및 광역환경교육센터 협력 업무</li> <li>○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li> <li>○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li> <li>○ 환경강사(환경교육사) 양성 및 지원</li> <li>○ 금강미래체험관 운영</li> <li>○ 금강미래 체험프로그램 운영</li> <li>○ 금강미래체험관 전시관·전시품 관리</li> <li>○ 금강미래체험관 및 부속시설 관리 · 유지보수</li> <li>○ 금강미래체험관 조류 사육 및 관리</li> </ul>
<p>자원순환 과 장</p>	<p>청소행정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li> <li>○ 과소관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li> <li>○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li> <li>○ 청소대행업체 및 직영미화원 관리</li> <li>○ 청소장비 개선 및 보강</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쓰레기 봉투 및 종량제 추진</li> <li>○ 대형(다량)폐기물 수집운반비 부과·징수</li> <li>○ 국토대청결운동 및 행락질서 추진</li> <li>○ 청소시설 및 장비유지 관리</li> <li>○ 도서지역 및 농촌쓰레기 처리 및 관리</li> <li>○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과태료부과</li> <li>○ 청소관련 각종 홍보업무</li> <li>○ 기타 과내 다른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청소시설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립장 운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li> <li>○ 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 추진</li> <li>○ 매립장 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li> <li>○ 사용종료 매립지 관리</li> <li>○ 쓰레기매립 및 복토계획 수립 시행</li> <li>○ 매립장 시설장비 취득 및 운영관리</li> <li>○ 침출수 처리검사 및 지하수 오염가스 성분조사 관리</li> <li>○ 반입쓰레기 계량시설 운영 및 통계에 관한 사항</li> <li>○ 반입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및 수납관리에 관한 사항</li> <li>○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 및 기금운용</li> <li>○ 각종 전기·기계 설비 및 부속설비 시험 운영</li> <li>○ 단계별 매립장 시설보수 등 공사에 관한 사항</li> <li>○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운영 관리</li> <li>○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관리</li> </ul>
	재 활용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활용품 관련 민원처리</li> <li>○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 추진</li> <li>○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li> <li>○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관리</li> <li>○ 음식물 쓰레기 수거수수료 부과·징수</li> <li>○ 1회용품 지도점검</li> <li>○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등 관련업무</li> <li>○ 폐기물처리미신고(2,000㎡미만)관리</li> </ul>
	청소지도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처리업 지도단속</li> <li>○ 폐기물 배출업체 지도단속</li> <li>○ 폐기물 처리시설(소각 등) 지도단속</li> <li>○ 폐기물 재활용업체 신고 및 지도단속</li> <li>○ 폐기물 처리업허가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li> <li>○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및 신고</li> <li>○ 폐기물처리신고(2,000㎡이상) 및 관리</li> <li>○ 기타 폐기물처리 신고업무</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관리법 관련 타부서 협의</li> <li>○ 지정폐기물 처리 및 지원협의회 관련업무</li> </ul>
산림녹지 과 장	녹지정책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목일 행사 추진</li> <li>○ 나무심기 조례 및 종합계획 수립</li> <li>○ 나무심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li> <li>○ 나무심기 시민·단체·기업 등 네트워크 구축</li> <li>○ 나무심기 범시민 운동 확산 지원 등</li> <li>○ 녹지기금 관리 및 운용</li> <li>○ 시민 현수 모금·식재 및 관리</li> <li>○ 임업 자금 융자</li> <li>○ 농림수산사업(공모사업 등) 관리</li> <li>○ 산림 기본통계 및 임산물 생산통계</li> <li>○ 공유임야 관리</li> <li>○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육성</li> <li>○ 임목등기</li> <li>○ 애림 계몽 홍보</li> <li>○ 임업기술 개량 보급</li> <li>○ 임업단체 지도 감독</li> <li>○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련 업무</li> <li>○ 과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li> <li>○ 비밀문서 관리 및 충무계획 수립</li> <li>○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도시숲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림 기본계획수립</li> <li>○ 도시숲 조성계획수립</li> <li>○ 그린뉴딜사업(국가공모) 발굴, 사업추진</li> <li>○ 생활SOC사업 발굴 및 공모대응</li> <li>○ 녹색자금 지원(공모)사업 발굴, 사업추진</li> <li>○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li> <li>○ 미세먼지 차단숲·저감숲 조성</li> <li>○ 자녀안심 그린숲, 명상숲 조성</li> <li>○ 생활밀착형 숲 조성(실내·실외 정원)</li> <li>○ 가로 광장 조성, 해안도로 나무 심기</li> <li>○ 작은숲·마을숲 조성 및 운영</li> <li>○ 가로숲 및 유희부지 나무심기</li> <li>○ 공공청사 옥상 및 벽면 녹화</li> <li>○ 녹색주차장 추진 및 운영</li> <li>○ 자연휴양림·산림욕장·수목원 조성</li> <li>○ 타부서 조경사업 추진 및 협의</li> <li>○ 녹지조경 설계 및 실행</li> </ul>
	보 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지전용 허가(신고·협의) 및 사후관리</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관리</li> <li>○ 산림보호구역지정·사업 허가 및 관리</li> <li>○ 산지이용 구분조사 및 관리</li> <li>○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관리</li> <li>○ 조림 기본계획 수립</li> <li>○ 조림사업 및 풀베기</li> <li>○ 산불 예방 및 진화</li> <li>○ 산림 병충해 방제 및 대책본부 운영</li> <li>○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li> <li>○ 산림관계법 위반 사건처리 및 사법 업무</li> <li>○ 숲가꾸기 사업</li> <li>○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사후관리</li> <li>○ 임산물 굴·채취허가 및 종자채취 지도</li> <li>○ 임목벌채 허가(신고) 및 의무조림 등 사후관리</li> <li>○ 보호수 지정 ·해제 및 관리</li> <li>○ 목재생산업 등록 및 관리</li> <li>○ 산림보호 부정 임산물 단속</li> <li>○ 임산물 반출 통제</li> <li>○ 산지 정화, 산지정화 관리원 운영</li> <li>○ 임산부산물 증산</li> <li>○ 산림감시 사회복지요원 관리</li> </ul>
	도시녹화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수 기본(구성)계획 수립</li> <li>○ 가로수 조성, 빗꽃길 명품화 사업</li> <li>○ 가로수 식재·유지관리·협약(타기관 타부서 조성사업 포함)</li> <li>○ 가로수 이식사업 및 민원 처리</li> <li>○ 녹지·가로수 등 피해조사 및 변상금 부과</li> <li>○ 숲 조성지 관리(도시숲, 미세먼지차단숲, 자녀안심 그린숲, 명상숲, 작은숲, 마을숲 등)</li> <li>○ 가로변 공한지 화단조성 및 관리</li> <li>○ 수벽(차폐) 조성 및 관리</li> <li>○ 조경수·관상수 관리</li> <li>○ 꽃길조성, 초화류 생산·식재 및 관리</li> <li>○ 완충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li> <li>○ 시영 양묘장 관리</li> <li>○ 아파트·공장·기관 등 조경입지 승인</li> <li>○ 만경강 생태숲 조성 및 사후관리</li> <li>○ 소규모 조경사업 추진</li> </ul>
	공 원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li> <li>○ 도시공원조성계획(변경)수립 및 결정</li> <li>○ 도시공원 조성사업 시행 (타부서 공원 조성사업 포함)</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li> <li>○ 도시공원 점·사용 허가</li> <li>○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 단속 및 행위지도</li> <li>○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및 조성</li> <li>○ 어린이 체험숲 조성</li> <li>○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li> <li>○ 어린이 체험숲 운영 및 유지관리</li> <li>○ 도시공원 내 휴게 및 휴게시설 설치</li> <li>○ 도시공원 내 시설물 유지관리</li> <li>○ 도시공원 내 수목 전정 등 수목관리</li> <li>○ 타부서 공원조성지 유지관리</li> <li>○ 도시공원 내 재해예방 및 복구</li> <li>○ 도시공원(근린.어린이공원 등) 환경 개선사업</li> </ul>
	산 립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석채취허가 및 관리(민원처리 등)</li> <li>○ 토석채취 허가지 복구승인 및 지도</li> <li>○ 채석단지 지정 및 관리</li> <li>○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관련업무 처리</li> <li>○ 도시지역 내 토석채취 협의</li> <li>○ 광산개발 시 산지일시사용 및 토석채취허가</li> <li>○ 임도사업(신설·보수·구조개량)추진 및 관리</li> <li>○ 사방사업 및 산사태 위험지 관리</li> <li>○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li> <li>○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업무처리</li> <li>○ 숲길 조성 및 관리(정비)</li> <li>○ 등산로 조성 및 관리(정비)</li> <li>○ 산사태예방지원단 운영</li> <li>○ 산림재해대책 추진</li> </ul>
안전총괄과	안전총괄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li> <li>○ 기타 국내 타과 및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li>○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 수립 및 사용</li> <li>○ 과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li> <li>○ 과분야 예산 총괄, 계획 수립</li> <li>○ 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li> <li>○ 안전지수 및 생활안전지도 작성 지원 및 관리</li> <li>○ 재난종합상황실 일·숙직 근무자 관리</li> <li>○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li> <li>○ 재난상황의 접수·파악, 전파</li> <li>○ 긴급구조기관 출동정보, 대응상황 접수·전파</li> <li>○ 국민안전의 날 운영</li> <li>○ 안전체험시설 관리 및 확충</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실행계획 수립시행</li> <li>○ 군산시 안전관리 계획 작성</li> <li>○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li>○ 재난협업기관 관리 지원</li> <li>○ 군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지원</li> <li>○ 재난관련 교육 운영</li> <li>○ 안전문화 업무 총괄 기획 및 시행</li> <li>○ 안전신문고 처리 및 모니터링 현장 점검 및 조치</li> <li>○ 안전점검의 날 운영</li> <li>○ 재난예방 민간예찰단 운영</li> <li>○ 공연행사장 안전관리 및 물놀이안전관리</li> <li>○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총괄</li> <li>○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및 취소, 안전관리</li> <li>○ 긴급통신수단 확보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긴급통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긴급통신수단 관리계획 시행에 관한 사항</li> <li>○ 재난안전통신망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긴급통신 관련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li> </ul>
	<p>민 방 위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방위 계획의 수립</li> <li>○ 민방위 상황실 운영</li> <li>○ 전시 인력 및 자원 동원에 관한 사항</li> <li>○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계획 및 충무계획 수립</li> <li>○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인력 물자 시설 동원</li> <li>○ 비상대비 통계자료 수집 보완</li> <li>○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경보시설, 주민대피시설 유지관리</li> <li>○ 주민 신고망 관리</li> <li>○ 민방공 훈련 계획수립 및 실시</li> <li>○ 민방위 장비 유지관리</li> <li>○ 민방위 대원 및 주민의 교육 훈련</li> <li>○ 민방위대의 조직 편성</li> <li>○ 사회복지요원 복무부서 지정 및 복무관리</li> <li>○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각급기관 협조</li> <li>○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li> <li>○ 군부대 업무협의 관련</li> <li>○ 국가비상대비 각종 교육·훈련</li> <li>○ 본청 직장민방위대 운영</li> <li>○ 인력동원 및 중점자원관리 운영</li> <li>○ 충무훈련, 을지연습, 화랑훈련 추진</li> </ul>
	<p>사회재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재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상황판단회의 등)</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재난 현장지휘소 운영</li> <li>○ 안전한국훈련계획 수립 및 운영</li> <li>○ 재난메뉴얼 통합관리</li> <li>○ 발주공사·수행사업 안전관리</li> <li>○ 특정관리대상지역 지정 및 관리 총괄</li> <li>○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자문단관리)</li> <li>○ 사회재난 관련 관계기관·부서 협업체계 구축 운영</li> <li>○ 다중이용시설 등 민간소유 시설 위기사항 매뉴얼관리 등 안전관리</li> <li>○ 생활안전 취약시설개선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li> <li>○ 재해위험수목 정비 사업추진</li> <li>○ 사회재난 대비 민간기관단체, 개인이 보유한 장비인력 조사 및 관리</li> <li>○ 특수재난 협업지원·관리 종합계획 및 시스템 수립·운영</li> <li>○ 특수재난 재난역량 분석·진단 및 교육·훈련 지원</li> <li>○ 사회재난 총괄 및 종합대책 수립 운영</li> <li>○ 사회재난 위기징후 분석·평가·경보발령</li> <li>○ 사회 재난 대비·대응 대책의 수립 및 운영</li> <li>○ 사회 재난에 대한 사후 조사 및 사례 분석·전파 등 기록관리</li> <li>○ 사회재난관련 매뉴얼 관리</li> <li>○ 사회재난 상시훈련계획 수립 및 운영, 긴급구조훈련</li> <li>○ 국가안전 대 진단 업무 추진</li> <li>○ 의용소방대 관련 업무 전반</li> </ul>
	자연재난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재난종합대책 수립(여름, 겨울)</li> <li>○ 자연재난실태평가 총괄관리(여름, 겨울 실태점검)</li> <li>○ 해빙기 안전진단 업무 추진</li> <li>○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관리</li> <li>○ 군산시 자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상황판단회의 등)</li> <li>○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li> <li>○ 시군구 재난관리실태 공시</li> <li>○ 시군구 긴급지원체계 구축 관리</li> <li>○ 풍수해 보험관리</li> <li>○ 지진(해일)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li> <li>○ 자연재난피해복구대책 수립 및 복구사업 총괄관리</li> <li>○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및 관리</li> <li>○ 자연재해사전대비 표준행동 매뉴얼 작성</li> <li>○ 자연재난예방사업 추진(배수펌프장 등)</li> <li>○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li> <li>○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관리</li> <li>○ 자연재난상황관리 및 피해조사 총괄</li> <li>○ 기상특보 상황관리</li> <li>○ 수방자재 관리</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재난 피해복구 유관, 민간, 협업체계 구축(복구장비 등)</li> <li>○ 자연재난대응 훈련계획 수립 및 운영</li> <li>○ 자연재난종합대책 수립(여름, 겨울)</li> <li>○ 자연재난실태평가 총괄관리(여름, 겨울 실태점검)</li> <li>○ 해빙기 안전진단 업무 추진</li> <li>○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관리</li> <li>○ 군산시 자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상황판단회의 등)</li> <li>○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li> <li>○ 시군구 재난관리실태 공시</li> <li>○ 시군구 긴급지원체계 구축 관리</li> <li>○ 풍수해 보험관리</li> <li>○ 지진(해일)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li> <li>○ 자연재난피해복구대책 수립 및 복구사업 총괄관리</li> <li>○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및 관리</li> <li>○ 자연재해사전대비 표준행동 매뉴얼 작성</li> <li>○ 자연재난예방사업 추진(배수펌프장 등)</li> <li>○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li> <li>○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관리</li> <li>○ 자연재난상황관리 및 피해조사 총괄</li> <li>○ 기상특보 상황관리</li> <li>○ 수방자재 관리</li> <li>○ 자연재난 피해복구 유관, 민간, 협업체계 구축(복구장비 등)</li> <li>○ 자연재난대응 훈련계획 수립 및 운영</li> </ul>
	하 천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골재채취업 허가, 등록 및 관리</li> <li>○ 골재채취업 예정지 지정</li> <li>○ 하천(국가, 지방, 소하천) 점사용 허가</li> <li>○ 하천(국가, 지방, 소하천) 점사용료 부과 징수</li> <li>○ 지방하천공사 시공 및 감독</li> <li>○ 소하천 지정, 정비 및 유지관리</li> <li>○ 소하천 예정지 고시</li> <li>○ 국가하천 유지관리</li> <li>○ 지방하천, 소하천 폐천부지 관련업무</li> <li>○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li> <li>○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및 정비시행계획 수립</li> <li>○ 하천 기성제 정비 및 평가관련 업무</li> <li>○ 하천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li> <li>○ 4대강 친수공간 유지관리</li> </ul>
	방재시설관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재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전기, 소방)</li> <li>○ 방재시설물 운영 기준 수립</li> <li>○ 재난종합상황실 전산장비 등 관리</li> <li>○ 경포천 배수펌프장·배수갑문 운영 관리</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포천 제수문 기계설비 유지관리</li> <li>○ 중동2·구암 배수펌프장 유지관리</li> <li>○ 나운1·2, 월명 우수저류조 유지관리</li> <li>○ 기상관측장비(강우량기) 및 수위관측소 시설 유지관리</li> <li>○ 예·경보시스템 구축 종합 계획 수립</li> <li>○ 예·경보 시설관리</li> <li>○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li> <li>○ 하천 CCTV 유지관리</li> <li>○ 경포천 홍수 감시 체계 구축</li> <li>○ 도심지 침수 감시 체계 구축</li> <li>○ 재난 관측 정보 유관기관 연계</li> <li>○ 시청사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관리</li> </ul>
	<p>중대재해관리 업무분야 &lt;명칭변경&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li> <li>○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li> <li>○ 지하안전법, 지하안전지침 시행</li> <li>○ 지하안전영향평가</li> <li>○ 기반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사항</li> <li>○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li> <li>○ 1종, 2종, 3종 시설물 안전관리</li> <li>○ <b>중대산업·시민 재해관리&lt;신설&gt;</b></li> </ul>
<p>도시계획 과 장</p>	<p>도시행정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li> <li>○ 도시행정의 종합계획 수립</li> <li>○ 일반사업 예산편성 및 정산</li> <li>○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li> <li>○ 전문건설업체 행정 처분</li> <li>○ 전문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징수</li> <li>○ 전문건설업 실태조사</li> <li>○ 전문건설업 기재사항 변경 처리</li> <li>○ 전문건설업 폐업신고 처리</li> <li>○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운영</li> <li>○ 환지청산금 관리</li> <li>○ 체비지 관리</li> <li>○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p>도시계획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기본계획 수립·운영</li> <li>○ 도시관리계획 수립·운영</li> <li>○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li> <li>○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고시</li> <li>○ 도시계획위원회 운영</li> <li>○ 도시관리계획 협의</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계획 정보체계(UPIS) 운영</li> <li>○ 국가사업 관리</li> <li>○ 폐철도 활용 용역 및 방안 마련</li> </ul>
	도시정비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계획 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li> <li>○ 도시 재개발사업의 계획수립 및 시행</li> <li>○ 소도읍 개발사업의 계획수립 및 시행</li> <li>○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용지매입, 교환, 수용 및 이전등기</li> </ul>
	도시관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매수청구 관리</li> <li>○ 개발행위 허가 및 협의</li> <li>○ 용도지역, 지구, 구역 안에서의 건축 협의</li> <li>○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li> </ul>
	도시개발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li> <li>○ 용지분양 및 매입 재산관리</li> <li>○ 개발사업 보상업무</li> <li>○ 특별회계 세입·세출관리</li> <li>○ 토지, 건물, 기타 수용 재결조치 및 행정대집행</li> <li>○ 도시개발 기본계획 수립</li> <li>○ 도시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li> <li>○ 사업지구내 이주대책 계획 수립 및 시행</li> <li>○ 지장물 철거</li> <li>○ 환지 확정 처분 업무</li> <li>○ 기타 경영수익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li> <li>○ 기타 도시 개발사업</li> </ul>
건설과장	도로관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li> <li>○ 도로정비 및 보수 유지관리</li> <li>○ 건설교통부 소관 국·공유재산(도로·구거) 관리처분 및 등기</li> <li>○ 건설교통부 소관 국·공유재산(도로·구거) 사용료 및 대부료 과징</li> <li>○ 도로·구거부지 허가 및 점용료 과징</li> <li>○ 도로·구거부지 용도 폐지 승인</li> <li>○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li> <li>○ 도로 무단점용 단속 업무</li> <li>○ 도로 굴착에 관한 사항 조정</li> <li>○ 도로정비 보수원 관리</li> <li>○ 도로무단적치물 지도단속 및 관리</li> <li>○ 가로 환경정비</li> <li>○ 과적차량 단속업무</li> <li>○ 접도구역 관리</li> <li>○ 철도건널목관리</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 도로변 절개지 위험해소를 위한 총괄계획 수립</li> <li>○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도로계획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계획지구의 도로개설 및 확장</li> <li>○ 도시계획외의 도로개설 확장 공사의 계획수립 및 시행</li> <li>○ 생활환경 개선사업 계획 및 추진</li> <li>○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li> <li>○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교통사고 낮은곳 개선사업</li> <li>○ 도심부 혼잡지역 개선사업</li> <li>○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li> <li>○ 시의 군도개설 및 확·포장공사 시행 감독</li> <li>○ 기타 도로에 관련한 사항</li> <li>○ <b>자전거도로 계획 및 추진 &lt;삭제&gt;</b></li> <li>○ <b>자전거이용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추진 &lt;삭제&gt;</b></li> <li>○ <b>자전거주차장 관리 및 사업추진 &lt;삭제&gt;</b></li> <li>○ <b>자전거이용활성화 방안추진 &lt;삭제&gt;</b></li> <li>○ <b>자전거관련조례·위원회 운영 &lt;삭제&gt;</b></li> </ul>
	도로시설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도로의 개설 및 포장 보수</li> <li>○ 도로 및 교량 공사의 시행 및 감독</li> <li>○ 도로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 시행 및 감독</li> <li>○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li> <li>○ <b>자전거도로 계획 및 추진 &lt;신설&gt;</b></li> <li>○ <b>자전거이용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추진 &lt;신설&gt;</b></li> <li>○ <b>자전거주차장 관리 및 사업추진 &lt;신설&gt;</b></li> <li>○ <b>자전거이용활성화 방안추진 &lt;신설&gt;</b></li> <li>○ <b>자전거관련조례·위원회 운영 &lt;신설&gt;</b></li> </ul>
농촌기반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용수 개발</li> <li>○ 경지정리 사업</li> <li>○ 관개시설 설치 및 개·보수</li> <li>○ 건설사업용 용지매수 및 토지수용</li> <li>○ 농지개량 사업의 조사 측량</li> <li>○ 개간 허가 및 지도</li> <li>○ 각종 농지개량 사업의 조사, 집행, 감독</li> <li>○ 농업기반조성사업 용지보상 관련 사항</li> <li>○ 국유재산(농림부 소관) 관리처분 및 등기</li> <li>○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과징</li> <li>○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li> <li>○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li> <li>○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 및 유지관리</li> <li>○ 농업기반시설(저수지, 방조제, 양수장등)등록 및 유지관리</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수기 유지관리</li> <li>○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외 사용</li> </ul>
	도시조명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조명 주요업무 계획 수립</li> <li>○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계획 수립</li> <li>○ 보안등 시설관리 및 개량업무</li> <li>○ 각종 도로 전기시설(터널,육교등)관리</li> <li>○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li> <li>○ 보안등시설 현장조사</li> <li>○ 가로등 및 보안등 순찰 점검</li> <li>○ 각종 기자재 수불 관리</li> </ul>
주택행정 과 장	주택행정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내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li> <li>○ 주택종합계획수립</li> <li>○ 주택 특별회계 운영</li> <li>○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개정운영</li> <li>○ 국민주택 관리 및 상환금 징수 총괄</li> <li>○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li> <li>○ 예산회계 편성 및 관리</li> <li>○ 해망동 희망루 아파트 유지관리</li> <li>○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공동주택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li> <li>○ 주택건설사업 감리자 지정</li> <li>○ 주택건설사업 입주자 모집승인</li> <li>○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구성 및 조합설립인가</li> <li>○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li> <li>○ 주택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및 사업시행결정</li> <li>○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li> <li>○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설립인가</li> <li>○ 조합원 모집 신고</li> <li>○ 주택법 대상 건축물 건축심의 사전검토</li> <li>○ 주택건설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li> <li>○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구성 및 운영 &lt;삭제&gt;</li> <li>○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위원회구성 및 운영</li> <li>○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및 징수</li> <li>○ 주택건설관련 각종 통계 작성 관리</li> <li>○ 고령자 복지주택건설 추진</li> </ul>
	공동주택관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및 관리</li> <li>○ 공동주택 행위허가 및 신고관련 업무</li> <li>○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업무</li> <li>○ 공동주택 관리운영 실태조사 및 민원처리</li> <li>○ 공동주택 관리 감사계획 수립 및 추진</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li> <li>○ 공동주택 관계자 관리교육 추진</li> <li>○ 공동주택 성범죄자 점검 추진</li> <li>○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및 감독</li> <li>○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이행관리</li> <li>○ 공동주택 관리소장 배치신고 및 관리</li> <li>○ 주택관리업자 관리 및 지도</li> <li>○ 공동주택 임대관리 관련업무</li> <li>○ 부도 임대주택 관리</li> <li>○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li> <li>○ 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 및 신고</li> <li>○ 공동주택 관련 정보공개 업무추진</li> <li>○ 주택관리업자 등록 및 관리지도</li> <li>○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업무</li> <li>○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운영</li> <li>○ 공동주택 모범관리 우수단지 선정 추진</li> </ul>
	공동주택지원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통합관리사무소 설치·운영</li> <li>○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lt;신설&gt;</li> <li>○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 &lt;수정&gt;</li> <li>○ 전라북도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추진 &lt;수정&gt;</li> <li>○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li> <li>○ 공동주택 관련 법령 제·개정 업무 추진</li> <li>○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위탁업무 추진</li> <li>○ 소규모 공동주택 위험시설 정비사업 추진 &lt;수정&gt;</li> <li>○ 해빙기·우기·동절기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li> <li>○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 및 관리</li> <li>○ 주택 관련 재난 및 재해 업무 추진</li> <li>○ 시특법대상 공동주택 관리</li> <li>○ 특정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li> <li>○ 제3종 시설물 지정·해제·관리업무</li> <li>○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의</li> </ul>
	공공시설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읍면동 청사 보수 업무지원 &lt;삭제&gt;</li> <li>○ 자치행정국 소관 공사관련 업무지원 (행정지원과 청사관리계 제외)</li> <li>○ 보건소 소관 공사관련 업무지원</li> <li>○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사관련 업무지원</li> <li>○ 수도사업소 소관 공사관련 업무지원</li> <li>○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공사관련 업무지원</li> <li>○ 기타 각종 시설(기술)업무 관련 지원</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시설지원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공사관련 업무지원</li> <li>○ 문화관광국 소관 공사관련 업무지원 (관광진흥과 제외, 문화예술과 제외, 체육진흥과 제외)</li> <li>○ 복지환경국 소관 공사관련 업무지원 (경로장애인과 제외)</li> <li>○ 안전건설국 소관 공사관련 업무지원 (안전총괄과 제외, 건축경관과 제외, 교통행정과 제외)</li> <li>○ 기타 각종 시설(기술)업무 관련 지원</li> </ul>
	주거복지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급여 신청에 대한 보장 결정 및 통지</li> <li>○ 주거급여 기준 초과자 급여중지 및 결정</li> <li>○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지급</li> <li>○ 주거급여감소에 따른 이행기보전액 지급</li> <li>○ 주거급여 이의신청 등 사후관리</li> <li>○ 주거급여 차액 추가지급 및 환수 업무</li> <li>○ 수선유지급여(집수리사업)계획 수립</li> <li>○ 집수리사업을 위한 보장기관 위탁계약 체결</li> <li>○ 수선유지급여 지급 및 사후 정산</li> <li>○ 저소득층 무이자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업무</li> <li>○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 업무(LH)</li> <li>○ 소년. 소녀가장 전세자금 지원 업무(LH)</li> <li>○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추진</li> <li>○ 도시빈집정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li> <li>○ 도시빈집실태조사 및 자료관리</li> <li>○ 농어촌빈집정비 사업 추진</li> <li>○ 농어촌빈집실태조사·관리 및 빈집정보센타운영</li> <li>○ 농어촌 주택개량사업</li> <li>○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li> <li>○ 취약계층 주거복지 상담 및 주거복지 네트워크 추진</li> </ul>
건축경관 과 장	도시경관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내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li> <li>○ 예산회계 편성 및 관리</li> <li>○ 도시경관관련 기본 계획수립 및 추진</li> <li>○ 도시경관표준 모델 개발</li> <li>○ 도시경관조례 제.개정 운영</li> <li>○ 도시경관 관련 부서별 업무 협의 및 심의</li> <li>○ 도시경관 관련 공모전, 포럼, 세미나 등</li> <li>○ 기타 도시경관 및 디자인 관련 사항</li> <li>○ 도시경관관련 사업추진</li> <li>○ 야간경관조명업무 총괄</li> <li>○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건축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행정건실화 추진</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위원회 운영 및 건축심의</li> <li>○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관련 업무</li> <li>○ 건축협의(공공기관)관련 업무</li> <li>○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관련 업무</li> <li>○ 건축조례 제·개정 운영</li> <li>○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지도</li> <li>○ 건축사 지도점검(설계,감리,안전관리 등)</li> <li>○ 건축사 업무대행건축물 점검 추진</li> <li>○ 건축 관련 각종 통계관리</li> <li>○ 미착공·미준공 건축물관리</li> <li>○ 타부서 건축 관련 복합민원 협의</li> <li>○ 건축허가 관련 하자보증금 관리</li> <li>○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관리 및 추진</li> <li>○ 건축문화상 운영</li> </ul>
	건축신고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신고(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관련 업무</li> <li>○ 대수선신고 관련 업무</li> <li>○ 용도변경 신고 관련 업무</li> <li>○ 건축물 사용승인(신고) 관련 업무</li> <li>○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관련업무</li> <li>○ 공작물축조신고 신고 관련 업무</li> <li>○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관련 업무</li> <li>○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용도변경 관련 업무</li> <li>○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업무</li> <li>○ 건축물 철거·멸실 관련 업무</li> </ul>
	건축물관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유지관리계획 수립</li> <li>○ 건축물 유지관리(건축법 적용 일반건축물)</li> <li>○ 건축물 재해, 재난안전 관리</li> <li>○ 시특별 대상 건축물 관리</li> <li>○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일반건축물) 점검 및 관리</li> <li>○ 냉난방 및 환기구배기시설 정비추진</li> <li>○ 건축물대장 기재신청등 관련 업무</li> <li>○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정정) 관련 업무</li> <li>○ 건축물대장 전환·합병 관련 업무</li> <li>○ 건축물대장 말소 관련 업무</li> <li>○ 건축물 부존재 관련 업무</li> <li>○ 건축물소유자(변경·정정) 관련 업무</li> <li>○ 건축물대장 정비사업 추진</li> <li>○ 건축물대장 민원발급</li> </ul>
	광 고 물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고물 종합정비계획 수립</li> <li>○ 광고물관리 조례 제·개정운영</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게시대 설치 및 관리</li> <li>○ 옥외광고물 전수조사</li> <li>○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신청</li> <li>○ 옥외광고물 연장 허가</li> <li>○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li> <li>○ 옥외광고업 허가</li> <li>○ 광고물 일반 서무</li> <li>○ 불법현수막 벽보 제거</li> <li>○ 옥외광고물 신고필증 재교부</li> <li>○ 유동광고물 신고수리</li> <li>○ 불법광고물 지도 및 단속</li> <li>○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li> <li>○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li> </ul>
<p>교통행정 과 장</p>	<p>교통기획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li> <li>○ 도시교통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li> <li>○ 수송동원 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li> <li>○ <b>여객 자동차 터미널 현대화 사업에 관한 업무 &lt;삭제&gt;</b></li> <li>○ 교통사업 특별회계 관리</li> <li>○ 교통안전대책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li> <li>○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지원</li> <li>○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중장기계획 수립</li> <li>○ 신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li> <li>○ 교통관련 인·허가 협의</li> <li>○ 여객 자동차 터미널 현대화 사업에 관한 업무</li> <li>○ 교통영향평가 협의 및 시행</li> <li>○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li> <li>○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li>○ 유료 공영주차장 계획수립 및 운영 (시설업무 제외)</li> <li>○ 항공, 철도에 관한 업무</li> <li>○ 교통문화지수 향상 및 교통 자생단체 지도 육성</li> </ul>
	<p>대중교통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 운송사업의 인·허가 면허 및 등록(시내버스, 전세, 특수)</li> <li>○ 자동차 운송사업 계획 변경인가 신고 및 등록(시내버스, 전세, 특수)</li> <li>○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li> <li>○ 시내버스 정류장 설치 관리</li> <li>○ 시내버스 벽지노선 개설 명령</li> <li>○ 시내버스 운행 실태조사</li> <li>○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li> <li>○ 여객자동차(시내버스, 전세, 특수)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li> <li>○ 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허가(특수)</li> <li>○ 사업용 자동차 법규 위반단속 및 행정처분(과징금 부</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과처분 및 징수)( 시내버스, 전세, 특수) ○ 도로교통법 및 교통불법 신고센터 운영( 시내버스, 전세, 특수) ○ <b>교통안전진단 계획수립 및 시행( 시내버스, 전세, 특수) &lt;삭제&gt;</b> ○ 운수종사자 교육 및 위반자 조치( 시내버스, 전세 특수) ○ 여객자동차 터미널 관리 업무 ○ 교통약자 대중교통 편의 증진 ○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업무 <신설> ○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업무 <신설> ○ 지간선제 관련 업무 <신설> ○ 시외·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 <신설> ○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신설>
	택시화물 업무분야	○ 자동차 운송사업의 인·허가 면허 및 등록(택시, 화물) ○ 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고 및 등록(택시, 화물) ○ 택시 운행부제 조정 ○ 개인택시 대리 운전 ○ 택시 정류장 설치 관리 ○ 택시 자격증에 관한 업무 ○ 택시, 화물 서비스 개선 ○ 여객자동차(택시)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 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 허가(화물) ○ 유가보조금 업무(택시, 화물) ○ 사업용 자동차 법규 위반단속 및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 및 징수)(택시, 화물) ○ 도로교통법 및 교통불법 신고센터 운영(택시, 화물) ○ 운송종사자 교육 및 위반자 조치(택시, 화물) ○ 화물공영차고지 시설계획
	교통지도 업무분야	○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조정 ○ 불법 주정차 견인 관련 업무 ○ 견인차량 과태료, 견인료 부과 조정 ○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 업무 ○ 자동차무단방치 행위자 통고처분 및 범칙금 부과, 징수 ○ 자동차무단방치 행위자 특별사법경찰 수사 업무
	교통시설 업무분야	○ 교통시설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 ○ 어린이보호구역정비계획 수립 및 시공 ○ 노면표지 정비 및 유지관리 ○ 공영노외·노상주차장 시공 및 시설물 유지관리 (건축물 부설주차장 제외) ○ 화물공영차고지 설계 및 시공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영노외.노상주차장 조성 종합계획 수립</li> <li>○ 교통안전표지판 신설·정비</li> </ul>
	지능형교통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능형교통체계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li> <li>○ 교통현황조사 및 문제점 분석 &lt;삭제&gt;</li> <li>○ 교통운영계획 및 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lt;삭제&gt;</li> <li>○ 센터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lt;수정&gt;</li> <li>○ 광자가통신망 신설 및 정비 등 통신설비 관리 &lt;수정&gt;</li> <li>○ 교통신호체계(교통DB) 운영 관리 &lt;수정&gt;</li> <li>○ ITS 노드/ 링크 표준화 사업 추진</li> <li>○ 교통 신호등 관련 시설물 신설 및 유지관리</li> <li>○ 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및시설물운영관리 &lt;수정&gt;</li> <li>○ 도로소통용 CCTV 운영관리(IP카메라) &lt;삭제&gt;</li> <li>○ 관제센터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lt;삭제&gt;</li> <li>○ 관제센터 연계 CCTV 운영 전반 &lt;삭제&gt;</li> <li>○ CCTV 신설 및 유지보수 &lt;삭제&gt;</li> <li>○ 관제센터 관제요원 위탁용역 &lt;삭제&gt;</li> <li>○ 관제센터 유관기관 협의 운영 &lt;삭제&gt;</li> <li>○ 센터 청사 관리(건축,전기,기계,통신 등) &lt;신설&gt;</li> <li>○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및 운영 &lt;신설&gt;</li> <li>○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및 운영관리 &lt;신설&gt;</li> <li>○ 국가산업단지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lt;신설&gt;</li> </ul>
	영상정보 업무분야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CTV관제상황실 운영 및 종합계획 수립</li> <li>○ CCTV관제 민간위탁 용역 사업관리</li> <li>○ 타 부서 유관기관 등 CCTV 통합관제 연계</li> <li>○ CCTV 열람 제공 보호조치 등 영상정보관리</li> <li>○ 방범용 CCTV 신설 및 유지관리</li> <li>○ 방범용(마을,공원,주거환경) CCTV 설치 및 운영 지원</li> <li>○ CCTV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li> <li>○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관리</li> </ul>
토지정보 과 장	부동산관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li> <li>○ 과분야 예산 총괄, 계획 수립</li> <li>○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및 해제운영</li> <li>○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li> <li>○ 토지거래허가 토지이용 사후관리</li> <li>○ 토지이용의무 위반자 이행강제금 부과</li> <li>○ 부동산 중개업 개설, 이전, 폐업신고</li> <li>○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및 분기보고</li> <li>○ 중개업위반자 행정처분</li> <li>○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li> <li>○ 부동산실거래 신고</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실거래 신고 해태과태료 부과징수</li> <li>○ 실명법위반 및 등기태만 등 체납관리</li> <li>○ 부동산등기 태만 과태료 부과 및 징수</li> <li>○ 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 및 징수</li> <li>○ 외국인토지 실거래 취득신고 허가</li> <li>○ 외국인토지 계속보유 신고</li> <li>○ 외국인토지 보유현황 분기보고</li> <li>○ 외국인 실거래신고 위반 과태료</li> <li>○ 부동산실거래 적정성조사 및 정밀조사</li> <li>○ 진정, 질의, 소송수행 업무</li> </ul>
	지 적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측량기준점 보존관리</li> <li>○ 개발행위(분할) 허가</li> <li>○ 지적측량성과 검사(동지역)</li> <li>○ 지적측량성과 검사(읍·면지역)</li> <li>○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 관리</li> <li>○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 운영</li> <li>○ 지적도 오류사항 정비</li> <li>○ 지목변경 접수 처리</li> <li>○ 합명 접수 처리</li> <li>○ 지적측량기준점 및 지적측량 장비관리</li> <li>○ KLIS 연속지적도 자료 제공</li> <li>○ 토지표지변경 등기축삭</li> <li>○ 토지이동정리 집계</li> <li>○ 지적측량 준비파일 제공</li> <li>○ 지적역점시책 및 특수업무 추진</li> <li>○ 미등록토지 신규등록(새만금 및 도서지역)</li> <li>○ 미등록토지 신규등록(새만금 및 도서지역)</li> </ul>
	지적민원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민원 종합창구 운영</li> <li>○ 국토이용 전산자료 관리 및 정비</li> <li>○ 비법인등록번호 부여 및 발급</li> <li>○ 지적전산자료 논리오류 정비</li> <li>○ 토지소유자 주소 등록</li> <li>○ 지적정보센터 운영</li> <li>○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li> <li>○ 지적공부 소유권 정리</li> <li>○ 지적통계 및 목록관리</li> <li>○ 소유권에 관한 국가소송 수행</li> <li>○ 지적서고 관리</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정보공개</li> <li>○ 지적민원관련 전산자료 제공</li> <li>○ 등기필통지에 따른 소유권 전산화일 정리</li> </ul>
	도로명주소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명주소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li> <li>○ 도로명주소 관리</li> <li>○ 도로명주소 변동자료 정리</li> <li>○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관리</li> <li>○ 도로명주소 및 지명위원회 운영</li> <li>○ 국가주소정보시스템 DB갱신 및 운영</li> <li>○ 국가기초구역 관리 및 운영</li> <li>○ 국가지점번호 관리 및 운영</li> <li>○ 상세주소 부여 및 관리</li> <li>○ 도로명주소 민원접수 및 처리</li> <li>○ 도로명주소 및 상세주소 홍보</li> <li>○ 지리정보 일반 업무</li> <li>○ 지리정보 관련 조례 관리</li> <li>○ 지리정보 보안 업무</li> <li>○ 지리정보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IS 서버, 인트라넷시스템, 한눈시스템</li> </ul> </li> <li>○ GIS DB구축 성과품 검사(동지역)</li> <li>○ GIS DB구축 성과품 검사(읍·면지역)</li> <li>○ 공간정보 운영 협의회 구성 및 운영</li> <li>○ 지리정보교육 관리</li> <li>○ 지리정보 DB갱신 및 자료 정비</li> <li>○ 국가지형지물 변동자료 관리</li> <li>○ 수치지형도 제작 관리</li> <li>○ 공간정보 자료 제공</li> <li>○ GPS 측량 장비 관리</li> </ul>
	지가관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지공시지가 협의 운영</li> <li>○ 공시지가 조사 계획 수립 및 운영</li> <li>○ 개별 필지의 토지 특성조사</li> <li>○ 개별 토지의 지가 산정</li> <li>○ 개별 공시지가 결정·공시</li> <li>○ 개별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li> <li>○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li> <li>○ 인접지역 지가 균형 협의와 지가도면 정리</li> <li>○ 개별 공시지가 주민참여제 운영</li> <li>○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가정보 관련 기관 제공</li> <li>○ 지목변경 취득세 지가 신청</li> <li>○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안내</li> <li>○ 개발부담금 산출내역서 제출 안내</li> <li>○ 개발부담금 산정, 부과, 징수 및 체납관리</li> <li>○ 개발부담금 고지전 심사 청구</li> <li>○ 진정 질의 행정소송 수행 업무</li> </ul>
	지적재조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관리</li> <li>○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li> <li>○ 세계측지계 변환 실시계획 수립</li> <li>○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li> <li>○ 지적재조사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운영</li> <li>○ 지적재조사 관련 소송 수행</li> <li>○ 지적재조사 일필지조사 및 측량</li> <li>○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li> <li>○ 경계점표지 설치 및 지적확정조서 작성</li> <li>○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및 부과 징수</li> <li>○ 확정조서 의견제출 처리</li> <li>○ 경계결정 이의신청 처리</li> <li>○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업무</li> </ul>

[보건소 소관]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보건행정 과 장	보건행정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과 및 보건행정의 종합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li> <li>○ 문서 및 공인 관리</li> <li>○ 보건소 예산운영 및 일상경비 등 제경비 집행 관리</li> <li>○ 직원 당직근무 명령 및 보건소 내외 복무 단속</li> <li>○ 보건지소 관리</li> <li>○ 공중 보건 의사 복무지도·감독에 관한 사항</li> <li>○ 비품 및 소모품 관리</li> <li>○ 보건소 차량 관리</li> <li>○ 의료장비(기자재 포함)와 방역장비의 구입과 관리</li> <li>○ 약품 구입과 배정에 관한 사항</li> <li>○ 보건소 및 지소·진료소 시설물 관리(신축 개·보수)</li> <li>○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li> <li>○ 보건진료소관리</li> <li>○ 보건소 전산 운영·관리</li> <li>○ 기타 보건소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감염병관리 업무분야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성감염병 관리대책 및 소관업무 운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염병 관리대책 및 소관업무 운영계획</li> </ul> </li> <li>○ 질병정보 모니터망 지정 및 관리</li> <li>○ 감염병관리 종합계획수립</li> <li>○ 온열·한랭질환자 감시체계 운영</li> <li>○ 진드기매개감염병관리 및 예방홍보</li> <li>○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태개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li> </ul> </li> <li>○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병 및 에이즈관리</li> </ul> </li> <li>○ B형간염 주산기 감염관리</li> <li>○ 표본감시 감염병 예방관리</li> <li>○ 방역 소독 및 약품 관리</li> <li>○ 소독업 신고 및 법정의무소독업소 관리</li> <li>○ 국가결핵관리사업</li> <li>○ 한센병관리</li> </ul>
	감염병대응 업무분야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성감염병 관리대책 및 소관업무 운영 계획</li> <li>○ 1~3급 법정감염병 예방관리</li> <li>○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li> <li>○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관리</li> <li>○ 법정감염병 역학조사 &lt;수정&gt;</li> <li>○ 감염병 재난위기관리대책 수립</li> <li>○ 신종감염병 및 재출현 감염병 예방관리</li> <li>○ 해외입국자 감염병발생 추적관리</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염병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업무</li> <li>○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관리</li> <li>○ 생물테러 감염병 대비·대응업무</li> </ul>
	<p>의 약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법에 의한 허가·등록·신고등 관리</li> <li>○ 약사법에 의한 허가·등록·신고등 관리</li> <li>○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업무</li> <li>○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의한 허가·등록·신고등 관리</li> <li>○ 무허가 및 부정 의약업자 단속</li> <li>○ 의무관련 지도에 관한 업무</li> <li>○ 약무관련 지도에 관한 업무</li> <li>○ 유사의약업소 지도에 관한 사항</li> <li>○ 응급의료법률에의한 허가·등록·신고등 관리</li> <li>○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사항</li> <li>○ 특수의료장비에 관한 사항</li> <li>○ 의료사업의 향상과 증진에 관한 사항</li> <li>○ 의료기기법에 의한 신고 및 지도관리</li> <li>○ 헌혈 권장사업</li> <li>○ 건강검진 등 신고처리</li> <li>○ 장기기증 관련 업무 전반</li> <li>○ 사전연명의료 관련 업무 전반</li> </ul>
	<p>진 료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자 진료 및 실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건강진단결과서, 진단서등 제증명 발급 및 수수료 징수</li> <li>○ 진료비 징수</li> <li>○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비등 청구</li> <li>○ 의료지원 업무</li> <li>○ 임상병리 검사 및 실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방사선 검사 및 실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물리치료 및 실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법정 감염병 검사에 관한 사항</li> <li>○ 한방진료 및 실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저소득층실명예방 관련사항</li> <li>○ 취약계층 아동 아토피 예방관리</li> <li>○ 경로당 및 무의도서 순회진료</li> </ul>
	<p>통합보건지소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보건지소 시설물 관리 및 운영</li> <li>○ 국민건강 증진, 방역,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li> <li>○ 일반·치과진료 및 물리치료에 관한 사항</li> <li>○ 방문 보건사업 전반</li> <li>○ 각종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li> <li>○ 보건교육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서부건강지원 업무분야 <신설> <소속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li> <li>○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전반</li> <li>○ 건강증진실 운영·관리</li> <li>○ 만성질환관리사업</li> <li>○ 건강행태개선사업(금연, 운동, 영양)</li> <li>○ 방문보건관리사업</li> <li>○ 치매예방 및 인지증진 프로그램 운영</li> <li>○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li> <li>○ 지역특화사업</li> <li>○ 공무원근로자 관리</li> <li>○ 꿈나무 건강증진사업 운영</li> </ul>
감염병관리 과 장 <신설>	감염병관리 업무분야 <신설> <소속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염병 관리 종합 대책 및 소관업무 운영계획</li> <li>○ 3~4급 법정감염병 예방관리</li> <li>○ 질병정보 모니터망 지정 및 관리</li> <li>○ 온열·한랭질환자 감시체계 운영</li> <li>○ 진드기매개감염병관리 및 예방홍보</li> <li>○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태개선사업</li> <li>○ 표본감시 감염병 예방관리</li> <li>○ 방역 소독 및 약품 관리</li> <li>○ 소독업 신고 및 소독의무시설 관리</li> <li>○ 국가 결핵관리사업</li> <li>○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관리</li> <li>○ 한센병관리</li> </ul>
	감염병대응 업무분야 <신설> <소속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성감염병 관리대책 및 소관업무 운영 계획</li> <li>○ 1~2급 법정감염병 예방관리</li> <li>○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li> <li>○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관리</li> <li>○ 감염병 재난위기관리대책 수립</li> <li>○ 신종감염병 및 재출현 감염병 예방관리</li> <li>○ 해외입국자 감염병발생 추적관리</li> <li>○ 감염병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업무</li> <li>○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관리</li> <li>○ 생물테러 감염병 대비·대응업무</li> </ul>
	감염병예방 업무분야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lt;신설&gt;</li> <li>○ HPV(인유두종바이러스)예방접종사업 &lt;신설&gt;</li> <li>○ B형간염 주산기 예방 사업 &lt;신설&gt;</li> <li>○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lt;신설&gt;</li> <li>○ 계절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lt;신설&gt;</li> <li>○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 예방접종 사업 &lt;신설&gt;</li> <li>○ 선택(A형B형간염) 예방접종 지원사업 &lt;신설&gt;</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형간염 접촉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lt;신설&gt;</li> <li>○ 고위험군 예방접종 사업(장티푸스,신증후군출혈열) &lt;신설&gt;</li> <li>○ 예방접종 약품 구매 관리에 관한 사항 &lt;신설&gt;</li> <li>○ 백신 보관 점검 및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lt;신설&gt;</li> <li>○ 위탁의료기관 계약 및 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 &lt;신설&gt;</li> <li>○ 예방접종 이상반응 상담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lt;신설&gt;</li> </ul>
건강관리 과 장	시민건강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업무 총괄</li> <li>○ 건강도시계획 수립 및 추진 등 건강도시업무 전반</li> <li>○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통합평가 전반</li> <li>○ 국민영양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li> <li>○ 보건소 홍보자료 개발 및 홍보관련 사항</li> <li>○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li> <li>○ 모바일헬스케어사업</li> <li>○ 건강누리마을 조성사업</li> <li>○ 구강보건센터 운영</li> <li>○ 학교구강보건실, 경로당 구강보건사업</li> <li>○ 어린이 충치예방사업 및 노인의치보철사업</li> <li>○ 과 서무 및 기타 현안업무 등</li> <li>○ 과내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총괄</li> <li>○ 비만관리사업</li> <li>○ 신체활동사업 전반</li> <li>○ 신체활동사업 교육·홍보</li> <li>○ 금연클리닉 운영</li> <li>○ 금연구역 지도점검 사업</li> <li>○ 흡연예방교육 및 홍보사업</li> <li>○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 사업</li> <li>○ 건강증진실 운영·관리</li> <li>○ 보건소 임상실습학생 관리</li> <li>○ 보건소 홍보 및 교육자료 개발</li> </ul>
	방문건강 업무분야 <명칭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li> <li>○ 방문건강관리사업</li> <li>○ 지역사회중심 맞춤형 재활사업</li> <li>○ 중증장애인 및 취약계층 방문재활사업</li> <li>○ 장애발생예방교육 사업</li> <li>○ 지역사회중심 재활운동실 운영</li> <li>○ 저소득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li> <li>○ 집단시설 보건교육</li> <li>○ 경로당 노인건강관리지원 사업</li> <li>○ 재가암환자관리 사업</li> </ul>
	가족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업무분야 <명칭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li> <li>○ 예방접종 및 관리에 관한 사항&lt;삭제&gt;</li> <li>○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사업</li> <li>○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li> <li>○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지원</li> <li>○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li> <li>○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li> <li>○ 산후건강관리지원 사업</li> <li>○ 산후조리비용 지원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추진</li> <li>○ 미숙아선천성대사 이상아 등록 관리 및 의료비 지원</li> <li>○ 산후조리원 관리</li> <li>○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li> <li>○ 암 환자 의료비 지원</li> <li>○ 국가암 검진사업</li> <li>○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li> <li>○ 청년건강검진지원 사업</li> </ul>
	정신건강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증정신질환자 위기개입 및 의료비 지원</li> <li>○ 중증정신질환자 주간재활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li> <li>○ 초발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li> <li>○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및 등록</li> <li>○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사회복지 지원</li> <li>○ 정신건강지킴이 지역사회 네트워크 조성</li> <li>○ 정신의료기관 관리</li> <li>○ 정신건강 심의·심사위원회 운영</li> <li>○ 중년여성 힐링서비스 사업</li> <li>○ 코로나 등 재난 대응 심리치유 사업</li> <li>○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상담 및 사례관리</li> <li>○ 학교 및 청소년 관련 시설 프로그램 운영및 예방교육</li> <li>○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사업</li> <li>○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관리 사업</li> <li>○ 자살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li> <li>○ 자살위험환경 개선 사업</li> <li>○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지원 사업</li> <li>○ 정신건강 심리치유 의료비 지원 사업</li> <li>○ 생애주기별 생명지킴이 사업</li> <li>○ 절주 및 중독 서포터즈 사업</li> <li>○ 중독 회원 등록 및 사례관리</li> <li>○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li> <li>○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li> <li>○ 정신재활시설 운영</li> </ul>
	치매안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매안심센터운영 전반</li> <li>○ 치매관리사업 종합계획 수립</li> <li>○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li> <li>○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li> <li>○ 치매환자쉼터 운영 사업</li> <li>○ 조호물품 지원 및 가족 지원 사업</li> <li>○ 치매 어르신 실종예방 사업</li> <li>○ 상담·등록 관리 및 치매조기검진 사업</li> <li>○ 치매예방 및 인지증진 프로그램 운영</li> <li>○ 치매인식개선 및 홍보사업</li> <li>○ 치매안심마을 운영 및 치매파트너 양성 사업</li> </ul>
	<p style="color: red;">서부건강지원 업무분야 &lt;삭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전반</li> <li>○ 건강증진실 운영·관리</li> <li>○ 만성질환관리사업</li> <li>○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li> <li>○ 건강행태개선사업(금연, 운동, 영양 )</li> <li>○ 방문보건관리사업</li> <li>○ 치매예방 및 인지증진 프로그램 운영</li> <li>○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li> <li>○ 지역특화사업</li> <li>○ 공무원근로자 관리</li> <li>○ 꿈나무 건강증진사업 운영</li> </ul>

[농업기술센터 소관]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농업축산 과 장	농정기획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li> <li>○ 농업기술센터 소관 인사 종합 관리</li> <li>○ 농업기술센터 재산관리(시설, 토지, 물품 등)</li> <li>○ 국비 예산 총괄 취합 예산 신청</li> <li>○ 농림사업 통합 추진</li> <li>○ 농림사업 평가</li> <li>○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 정책 심의회 운영</li> <li>○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li> <li>○ 영농도우미 지원</li> <li>○ 농정시책홍보</li> <li>○ 농업관련 단체 지원 및 관리</li> <li>○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및 관리</li> <li>○ 여성 후계농업인 육성</li> <li>○ 청년창업농 관련업무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및 기반조성 사업</li> <li>- 청년창업농 진단분석 컨설팅 사업</li> <li>-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li> </ul> </li> <li>○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복무관리 지도</li> <li>○ 농식품인력개발원 교육지원</li> <li>○ 농지관리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및 관리</li> <li>- 농지의 전용 허가·협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협의</li> <li>- 농지취득, 농지이용실태 및 관리</li> <li>-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지정 및 관리</li> </ul> </li> <li>○ 농업법인관리</li> <li>○ 농어촌 민박 지정, 관리, 교육</li> <li>○ 농어촌소득금고특별지원사업 지원 및 관리</li> <li>○ 농어민 신문보급 사업</li> <li>○ 비밀문서 생산관리 및 보안업무</li> <li>○ 삼락농정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li> <li>○ 농업분야 산학협력방안 마련 및 추진</li> <li>○ 새만금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 행정지원</li> <li>○ 농업기술센터 예산 및 회계, 관인관리</li> <li>○ 타 실과소 업무 협조</li> <li>○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 업무 전반</li> <li>○ 농업인회관 운영 및 관리</li> <li>○ 과내 다른 업무분야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농촌활력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업무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li> </ul> </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시군역량강화사업,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 농촌협약 체결, 사업시행 및 사후관리 ○ 농촌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용역 ○ 농촌다움복원사업 ○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농어촌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및 관리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추진 ○ 농촌 중간조직 운영 및 관리 ○ 농촌관광 농원 육성 ○ 녹색, 농촌체험마을 조성 ○ 향토산업마을 육성 및 관리 ○ 행복마을 만들기 육성 및 관리 ○ 농어촌 자원복합 산업화 ○ 농식품 6차 산업화 추진
	농 산 업무분야	○ 식량작물 공동(들녘)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단지화 사업 ○ 쌀경쟁력제고사업(자본적 보조, 경상적 보조) - 방제드론, 곡물건조기, 공동육묘장 등 -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 지력증진 벗짚환원사업 ○ 벗짚/콩대 환원사업 (시자체사업) ○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 보릿대 불법소각 계도 ○ 식량분야 농업재해 조사 및 복구계획 지원 ○ 수도작/동계작물 생산계획 및 사업추진 ○ 벼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시자체사업) ○ 동계작물 미세먼지저감 사업(시자체사업) ○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 ○ FTA피해보전 직불금 및 행정비 ○ 쌀 전업농 농업인단체 업무전반 ○ 비료지원(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 농업재해총괄 ○ 비료생산업 등록 및 관리 ○ 농약판매업 등록 및 관리 ○ 직불제 업무 총괄 - 기본형 공익직불제 - 선택형 공익직불제(논이모작, 조건, 경관) ○ 농민공익수당지원 ○ 시 직불금지원(맞춤형비료, 상토)
	축 산	○ 축산진흥 계획 수립 조정 ○ 축산진흥대회 및 축산장려 추진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낙농단체 육성 및 지도</li> <li>○ 초지조성 및 사후관리</li> <li>○ 축산단지 육성 및 사후관리, 종축 등록</li> <li>○ 축산농가 관리 및 지원</li> <li>○ 축산사료 수급조절 및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li> <li>○ 양봉사업 추진</li> <li>○ 축산 계열화 사업</li> <li>○ 축산발전기금 운용</li> <li>○ 축산업 허가 등록제 사업</li> <li>○ 송아지생산안정사업</li> <li>○ 가축통계조사</li> <li>○ 사료지원사업</li> <li>○ 축산장비 및 기자재사업</li> <li>○ 학교우유급식사업</li> <li>○ 축산재해보험 및 재해복구 지원</li> <li>○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li> <li>○ ICT 스마트 축산사업</li> <li>○ 말산업 육성사업</li> <li>○ FTA 기금사업</li> <li>○ 곤충산업 육성</li> <li>○ 축산분뇨 처리시설 조성 지원</li> <li>○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추진</li> <li>○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시설설치 지원</li> <li>○ 축산분뇨처리 톱밥지원사업 추진</li> <li>○ 친환경 가축분뇨 처리 활용</li> <li>○ 타 축산지도 및 사무에 관한 사항</li> </ul>
	동물방역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축 전염병 예방 접종</li> <li>○ 축산식품 유통 종합대책 수립</li> <li>○ 가축전염병 근절추진</li> <li>○ 가축방역 및 가축 순회 진료</li> <li>○ 공개업 수의사 지도 감독</li> <li>○ 전염병에 걸린 가축처분 및 사후관리</li> <li>○ 동물용의약품 판매업 허가 및 신고</li> <li>○ 가축위생 및 방역기술 지도</li> <li>○ 동물병원 지도 감독</li> <li>○ 종계장 및 부화장 방역관리</li> <li>○ 이동가축방역관리 추진</li> <li>○ 차량방역 소독설비 지원사업 추진</li> <li>○ 폐사축 소각로 지원사업 추진</li> <li>○ 전국일제 소독의 날 운영</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li> <li>○ 구제역등 국가방역 추진</li> <li>○ 축산물 이력추진 시스템 구축추진</li> <li>○ 축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li> <li>○ 축산물 작업장 지도관리</li> <li>○ 축산물 취급업소 및 축산식품 관련단체 지도감독</li> <li>○ 부정 축산물 단속 및 가축시장·도축장 관리</li> <li>○ 불량 축산물 미검사품 압류, 수거, 폐기처분</li> <li>○ 축산물 부위별·등급별 판매 지도 단속</li> <li>○ 식육제조 가공업 등 허가 및 신고</li> <li>○ 식육(부산물) 운반 및 판매업 신고 관리</li> <li>○ 축산물유통관련 종사자 위생교육</li> <li>○ 기타 식육 업무에 관한 사항 전반</li> </ul>
	<p>동물복지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려동물 등록 및 관리</li> <li>○ 반려동물 민원 및 지도 단속</li> <li>○ 동물복지 홍보</li> <li>○ 반려동물 전용 놀이공간 설치</li> <li>○ 저소득층 등 반려견 의료비 지원</li> <li>○ 동물관련 서비스업 인·허가</li> <li>○ 동물관련 민원 및 지도관리</li> <li>○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li> <li>○ 유기견, 길고양이 등 중성화 사업</li> <li>○ 유기동물 보호·관리</li> <li>○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li> <li>○ 유기동물 치료비 지원</li> <li>○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관리 및 지도</li> <li>○ 동물복지관련 지원사업</li> <li>○ 동물보호법 관련 업무 추진</li> </ul>
<p>먹거리정책 과 장</p>	<p>먹거리정책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먹거리 정책업무 총괄</li> <li>○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 업무 추진 (계획수립, 시책발굴, 워크숍, 포럼 등)</li> <li>○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업무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공모사업 추진 및 푸드플랜 FD제도 운영</li> </ul> </li> <li>○ 지역 먹거리 관련 조례 제정 및 정비</li> <li>○ 푸드플랜 민관 거버넌스 체계구축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먹거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li> </ul> </li> <li>○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총괄 (예산, 회계, 재무, 인사, 재산·재고관리, 홍보 등)</li> <li>○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주변 시설 구축</li> <li>○ 농산물 원산지 단속</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li> <li>○ 우수농특산물 광고매체 홍보 등</li> <li>○ 학교급식, 공공급식, 로컬푸드, 농가레스토랑 등 단계별 농가관리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LS-GAP-군산로컬푸드인증-친환경(무농약·유기농)</li> </ul> </li> <li>○ 과 서무(업무보고 등) 및 예산회계업무</li> <li>○ 타부서(복지, 환경부서 등) 협력사업</li> <li>○ 소비자 조직화를 통한 생산-소비 신뢰증진 사업 발굴</li> <li>○ 지역먹거리 통계 조사 및 분석</li> <li>○ 농산물유통시설(공판장 등) 관련 업무</li> <li>○ 농림수산물발전기금 운용</li> <li>○ 홍보용 쌀·보리 소포장 지원</li> <li>○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li> <li>○ 관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공공급식지원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급식 및 도농상생 급식 종합계획 수립 및 발굴</li> <li>○ 공공급식 분야 시장 발굴 및 개척</li> <li>○ 군산시 먹거리 생태지도 작성 및 관리</li> <li>○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지원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격결정 사전 협의회 운영</li> <li>-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운영위원회 운영</li> <li>-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운영</li> </ul> </li> <li>○ 친환경농산물·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전산업무 (eaT 수발주 프로그램) 등</li> <li>○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li> <li>○ 학교무상급식비 지원</li> <li>○ 학교급식관리(지도, 위생 등)업무 등</li> <li>○ 어린이집(유치원) 급식 지원</li> <li>○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 사업</li> <li>○ 공공급식(학교급식 포함) 식생활 교육 및 농촌체험지원</li> <li>○ 공공급식관리(지도, 위생 등) 업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축·수산 생산자, 유통업체, 가공업체 등 관리</li> </ul> </li> <li>○ 학교급식용 포장재 지원사업</li> <li>○ 학교급식지원센터 유통물류비 지원</li> <li>○ 복지, 기업급식 업무 추진</li> <li>○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li> <li>○ 도농상생 공공급식 안전성 검사비 지원</li> <li>○ 우수농산물 수도권 판촉유통 물류비 지원</li> <li>○ 서울(수도권)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및 지원</li> <li>○ 대도시 친환경쌀 학교급식 공급업무</li> <li>○ 관내 기업체 등 지역쌀 이용실태 조사</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마케팅 지원</li> <li>○ 기타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에 관한 사항</li> </ul>
	<p>로컬푸드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운영관리</li> <li>○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컬푸드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li> <li>- 로컬푸드 잔류농약 검사 지원</li> <li>- 로컬푸드 직매장 소비 촉진 및 소비자 관리</li> </ul> </li> <li>○ 로컬푸드 복합센터 운영관리</li> <li>○ 군산 로컬푸드 인증위원회 운영 등</li> <li>○ 군산 로컬푸드 통합인증제 운영관리</li> <li>○ 로컬푸드 안전품질 관리</li> <li>○ <b>군산푸드 생활문화나눔터 신축사업 &lt;삭제&gt;</b></li> <li>○ <b>군산푸드 생활문화나눔터 운영관리 &lt;삭제&gt;</b></li> <li>○ 전북 농특산물 인터넷 택배비 지원사업</li> <li>○ 농특산물 공동상표(새들군산) 포장재 지원사업</li> <li>○ 로컬푸드 복합센터 신축사업</li> <li>○ 로컬푸드 생산자 협동조합 설립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컬푸드 생산자 연합회 운영 등</li> </ul> </li> <li>○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 및 순회 수집 업무</li> <li>○ 농특산물 홍보관 업무 추진</li> <li>○ 농특산물 전시판매행사 추진, 참가업체 지원</li> <li>○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 추진(직거래 장터, 박람회 등)</li> <li>○ 자매도시 농특산물 교류 추진</li> <li>○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li> <li>○ 농특산물 수출 종합기획 및 수출업체 지원</li> <li>○ 농특산물 해외시장개척, 바이어관리, 국제관측 행사추진</li> <li>○ 원예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li> <li>○ 통합브랜드(새들군산) 선정 관리 및 홍보</li> </ul>
	<p>식품산업육성 업무분야 &lt;명칭변경&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식품가공 사업의 계획 및 평가</li> <li>○ 농업인 공동이용 식품제조시설 운영 및 육성 관리</li> <li>○ 농식품가공 제조기술, 품질안전, 마케팅 등 창업보육 지원</li> <li>○ 농산물가공 창업 및 농식품 아카데미 운영</li> <li>○ 소규모 가공창업장 판촉 및 마케팅 지원</li> <li>○ 농업인 소규모 농산가공 창업지원</li> <li>○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및 지원</li> <li>○ 농식품기업 육성지원</li> <li>○ 지역농산물 가공 상품화 및 품질향상 지원</li> <li>○ 지역 농산가공품 품목보고, 품질검사, 성분분석 등 품질향상 지원</li> <li>○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 및 제조공정 표준화 연구</li> <li>○ 농식품기업 HACCP 사전·사후관리 컨설팅 지원</li> <li>○ 로컬푸드 소포장 가공식품 사업 발굴</li> <li>○ 장류·소스·식용유 등 지역상품 개발</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푸드플랜 관련 생산·가공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 2 농부의 식품공장 운영</li> <li>- 농산가공식품 개발 로컬 푸드, 공공급식 연계사업 추진</li> </ul> </li> <li>○ 농산물 기반 가공 및 유통업체 지역산 이용률 제고 및 관리</li> <li>○ <b>군산 수제맥주·청주 산업화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 &lt;수장&gt;</b></li> <li>○ 군산맥아 및 엿기름 특화사업 추진</li> <li>○ <b>군산형 식품산업 활성화(지원단 구성 등) &lt;신설&gt;</b></li> <li>○ 기타 농식품 개발 육성에 관한 사항</li> </ul>
	<p>친환경식량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농산물 생산계획 수립</li> <li>○ 친환경농업인단체 관리 및 신규사업 발굴</li> <li>○ 친환경농업육성(국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지구조성사업</li> <li>- 친환경직불제,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li> </ul> </li> <li>○ 친환경농업육성(도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친화형농자재지원,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지원, 친환경농산물품목다양화육성, 친환경신선채소안정생산, 친환경희망농부지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친환경유기농업육성, 친환경쌀생산단지지원, 유기농박람회, 친환경농업인대회</li> </ul> </li> <li>○ 친환경농업육성(자체)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렁이순환농법, 친환경생산관리, 친환경인증면적확대, 환경친화형공동방제지원</li> </ul> </li> <li>○ GAP인증확대지원 관련 업무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AP안정성분석지원(주산지,인증농가) 사업</li> <li>- GAP포장재 지원사업</li> </ul> </li> <li>○ 정부양곡 매출</li> <li>○ 정부양곡의 보관, 가공, 수송, 재고 조사</li> <li>○ 정부양곡 도정공장 지도 감독</li> <li>○ 정부관리양곡 창고 지도 관리</li> <li>○ 양곡 가공업 신고 관리</li> <li>○ 정부양곡 부산물 관리</li> <li>○ 양곡 유통 지도·단속처리</li> <li>○ 정부양곡포장재 보관 관리</li> <li>○ 양곡관리 특별회계 관리</li> <li>○ 공공비축미곡 매입</li> <li>○ RPC·DSC 시설 관리</li> <li>○ 고품질쌀 유통 지원</li> <li>○ 양곡 GAP 시설 보완사업</li> <li>○ 기타 양정에 관한 업무전반</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p>농촌지원 과 장</p>	<p>지도운영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지도행정 총괄 기획, 조정, 평가</li> <li>○ 농촌진흥기관 업무 전반 및 유관기관 협력사업</li> <li>○ 국·도비 예산확보 및 신규 시책 발굴</li> <li>○ 시, 의회 관련 업무보고 및 평가자료 작성</li> <li>○ 농촌지도 예산관리 및 과 회계, 일상경비 출납</li> <li>○ 보안문서·기록물 관리, 공공재산 및 물품 관리</li> <li>○ 농촌지도직 포상, 인사, 교육 인적 관리</li> <li>○ 농촌지도직 전문화 역량강화 교육 지원</li> <li>○ 농업기술 공보 및 농촌진흥기관 대농민 홍보물 관리</li> <li>○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li> <li>○ 기술보급시범사업 대민 홍보 및 사업자 선정</li> <li>○ 농업인학습단체 농촌지도자회 육성 지원</li> <li>○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생활개선회 육성 지원</li> <li>○ 군산시 4-H 본부·연합회·학생4 - H 조직관리</li> <li>○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지원</li> <li>○ 농업인 학습단체, 농업인 정보·기술지 보급</li> <li>○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li> <li>○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 추진</li> <li>○ 농민상담소 인력 및 물품관리</li> <li>○ 농민상담소 운영 관리</li> <li>- 당면영농 상황실 운영, 영농기술 상담 및 현장지도</li> <li>- 신품종 지역적응 실증시험 및 지역 특화작물 육성</li> <li>- 농업인 학습단체 조직관리 및 선도농 육성</li> <li>- 신규농업인(청년 귀농인) 발굴 및 영농정착 현장으로 해결</li> <li>- 우량종자 공급 및 자율교환 알선창구 운영</li> </ul>
	<p>귀농활력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농활력분야 종합계획 수립 및 시책사업 발굴</li> <li>○ 농업축제 기획, 축제실무, 평가</li> <li>○ 귀농귀촌협의회 및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지원</li> <li>○ 귀농(촌)인 교육 과정 운영, 현장실습, 영농정착 지원</li> <li>○ 귀농(촌) 상담실 운영 및 대내외 귀농시책 홍보</li> <li>○ 귀농(촌) 안전정착 및 유대강화 지원사업</li> <li>○ 초보농업인 영농현장 실습장 관리운영</li> <li>○ 농촌체험관광 연구회 육성 및 역량강화</li> <li>○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지원 및 네트워크 관리</li> <li>○ 도시민 농촌체험 유치 프로그램, 투어코스 발굴 및 홍보</li> <li>○ 교육지원청 연계 초중고 진로체험 및 농촌현장체험 지원</li> <li>○ 도시농업기반 구축 스쿨팜, 학교텃밭 운영 지원</li> <li>○ 도시농업 시책발굴 및 치유농업 신규사업 지원</li> <li>○ 관내 복지시설 및 정서 고위험군 원예치료 지원</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농업 관리자 양성 교육 및 원예치료 활동지원</li> <li>○ 도농교류 계획수립 및 지원</li> <li>○ 기타 농촌관광 및 지역 농업·농촌 활력에 관한 사항</li> </ul>
	<p>경영교육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인 교육 총괄 및 실행</li> <li>○ 농산물 소득조사 등 경영일반</li> <li>○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육성</li> <li>○ 농업인 대학 및 졸업생 교육</li> <li>○ 농업인 대학 총동창회 운영</li> <li>○ 농업인 정보화교육장 관리 운영</li> <li>○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관리업무</li> <li>○ 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정보화 교육</li> <li>○ 온라인 농업경영·마케팅 교육</li> <li>○ 정보화 농업인 연구회 육성</li> <li>○ 강소농 육성 및 경영개선 실천교육</li> <li>○ 강소농 자율모임체 육성</li> <li>○ 농사직설학당 현장교육</li> <li>○ 새해영농 실용 교육</li> <li>○ 품목별 농업인 교육</li> <li>○ 농업기술 전문교육</li> <li>○ 품목생산자 조직 경쟁력 제고 시범</li> <li>○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시범</li> <li>○ 농업인 교육이수 확인증 발급</li> <li>○ 농가 경영컨설팅</li> <li>○ 중앙·전북 농업인 정보화경진대회 지원</li> <li>○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li> <li>○ 기타 교육에 관한 사항</li> </ul>
	<p>농기계지원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기계사업 종합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li> <li>○ 농기계임대사업심의회 운영</li> <li>○ 농기계임대사업장 인력 및 시설 관리 운영</li> <li>○ 농기계 실습 및 안전교육</li> <li>○ 임대농기계 정비 점검 및 수리지원</li> <li>○ 임대 및 지원 농기계 선호도, 실태조사 및 분석</li> <li>○ 농업기계 순회 수리교육 및 농기계 임대사업</li> <li>○ 여성친화형 임대농기계 구입 및 임대</li> <li>○ 임대 농기계 농가배달 사업</li> <li>○ 농업기계 보급 및 구입 지원사업</li> <li>○ 농기계 종합보험 관련 업무</li> <li>○ 임대농기계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농기계 구입 및 임대</li> <li>○ 임대농기계 노후장비 구입 및 임대</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농기계 교육용 구입 및 운영</li> <li>○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li> <li>○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li> <li>○ 임대장비, 교육용 농기계, 관리용차량 보험 관리</li> <li>○ 임대장비 불용농기계 매각 및 처분</li> <li>○ 농작업대행 장비지원사업 및 사후관리</li> <li>○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li> <li>○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li> <li>○ 농기계 위탁 교육 지원사업(농업용드론, 굴삭기, 지게차)</li> <li>○ 산업기능요원(농기계수리 및 운전요원) 선정 및 복무관리</li> <li>○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관리</li> <li>○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및 사후관리</li> <li>○ 기타 임대농기계 업무에 관한 사항</li> </ul>
기술보급 과 장	작물환경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li> <li>○ 작물환경분야 신기술 보급</li> <li>○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술지도</li> <li>○ 맥류재배 기술지도</li> <li>○ 밭작물재배 기술지도</li> <li>○ 보급종 및 우량종자 보급</li> <li>○ 식량작물 친환경 농업 기술지도</li> <li>○ 농작물 재해대책 기술지도</li> <li>○ 병해충 종합방제 계획수립 및 기술지도</li> <li>○ 병해충예찰 및 관찰포 운영</li> <li>○ 병해충진단실 운영</li> <li>○ 쌀품질관리실 운영</li> <li>○ 종합검정실 운영</li> <li>○ 유해물질분석실 운영</li> <li>○ 식량작물 실증시험포 운영</li> <li>○ 시비 및 토양비료 관련 기술지도</li> <li>○ 기상장비 및 농업기상이용 기술지도</li> <li>○ 과 서무(업무보고 등) 및 예산회계업무</li> <li>○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li>○ 우량종자채종포 지원</li> </ul>
	소득작목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채소재배 신기술보급 및 지도</li> <li>○ 시설 과채류 재배 신기술보급 및 지도</li> <li>○ 시설원에 생력화 에너지절감 신기술보급 및 지도</li> <li>○ 시설원에 경영비 절감 신기술보급 및 지도</li> <li>○ 노지채소재배 신기술보급 및 지도</li> <li>○ 과수재배 신기술보급 및 지도</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훼재배 신기술보급 및 지도</li> <li>○ 버섯재배 신기술보급 및 지도</li> <li>○ 약용작물재배 신기술보급 및 지도</li> <li>○ 원예작물 친환경농업 신기술보급 및 지도</li> <li>○ 지역특화 및 새소득 작목육성</li> <li>○ 지역특화 및 새소득 작목 신기술보급 및 지도</li> <li>○ 아열대 특용 작물재배 신기술보급 및 지도</li> <li>○ 아열대 과수 신기술보급 및 지도</li> <li>○ 기후변화대응 신기술보급 및 지도</li> <li>○ 채소 생육 및 병해충 조사</li> <li>○ 과수 생육 및 병해충 조사</li> <li>○ 기타 소득작목에 관한 사항</li> </ul>
	<p>농업생물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증시험포 운영 및 실증시험</li> <li>○ 유망 소득작물 도입 실증재배</li> <li>○ 새기술, 작물 보급을 위한 전시재배</li> <li>○ 농업환경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 수행</li> <li>○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실증시험</li> <li>○ 환경친화적 유용미생물 배양 제조 공급</li> <li>○ 유용미생물 활용 기술지도 &lt;수정&gt;</li> <li>○ 친환경자재 및 천적관련 친환경 실증사업</li> <li>○ 농업용 미생물 공급센터 운영</li> <li>○ BM활성수 제조실 운영</li> <li>○ 스마트농업분야 기술지도</li> <li>○ 스마트온실 교육장 운영</li> <li>○ 스마트농업 청년임대농장 운영</li> <li>○ 지역연구기반조성 활성화 사업 추진</li> <li>○ 기타 농업생물분야에 관한 사항</li> </ul>
	<p>기획생산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생산 기반확보 및 생산자 조직화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푸드플랜 기획생산 체계 구축</li> <li>- 원예농산물 기획생산 농가 조직화</li> <li>- 로컬푸드 및 급식영역 생산농가 육성 지원</li> <li>- 기획생산 품목 다양화 관련 지원사업</li> </ul> </li> <li>○ 원예산업종합계획 수립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li> <li>- 원예농산물 공선출하조직 육성</li> </ul> </li> <li>○ 원예생산 기반구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li> <li>-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li> <li>-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li> <li>- 지역별 맞춤형작목단지 조성</li> </ul> </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li> <li>- 원예생산 품목 다양화 및 기반조성 관련사업</li> <li>○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예생산 현대화 시설 지원</li> <li>- 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li> <li>- 특용작물 현대화시설 지원</li> <li>-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li> <li>-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li> </ul> </li> <li>○ 원예농산물 전략작목 육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계 포도 육성지원</li> <li>- 노지채소 기계화 재배단지 조성</li> </ul> </li> <li>○ 원예분야 스마트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li> <li>- ICT 융복합확산 시설 보급</li> </ul> </li> <li>○ 원예·특용작물 재해보험 및 재해복구지원</li> <li>○ 원예 생산통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및 생산량 조사</li> <li>- 과수, 노지채소, 특용작물 재배농가 및 생산량 조사</li> </ul> </li> <li>○ 과수, 화훼산업 육성 일반</li> <li>○ 종자업 및 육묘업 등록 및 관리</li> <li>○ FTA 피해보전 및 폐업 지원</li> </ul>

[수도사업소 소관]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수도과장	관 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수도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li> <li>○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li> <li>○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현금출납 및 금고감독</li> <li>○ 상수도 공사, 용역, 물품구입 및 수불</li> <li>○ 회계장부의 비치 정리, 결산, 재무제표 작성</li> <li>○ 급수공사 배정, 자재관리 및 수불</li> <li>○ 기채 및 지방채관리</li> <li>○ 상수도 용지매수, 교환, 수요, 이전보상, 매각</li> <li>○ 공인관리, 보안 및 공기업 경영평가 업무</li> <li>○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li> <li>○ 소내 서무, 공기업특별회계 자산 관리</li> <li>○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봉급 및 연말정산</li> </ul>
	누수방지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수방지 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li> <li>○ 누수지 복구공사 추진</li> <li>○ 누수탐사 계획수립 및 시행</li> <li>○ 도로굴착 관련 협의</li> <li>○ 노후 및 고장계량기 교체</li> <li>○ 생활민원(120)처리</li> <li>○ 누수보수장비, 물품, 자재관리</li> <li>○ 유수율 제고사업 계획수립</li> <li>○ 불량수도관 교체공사 계획수립 및 집행</li> <li>○ 노후관 개량공사 계획수립 및 집행</li> <li>○ 블록화 사업 추진</li> <li>○ 블록화 관망도 작성 및 전산화</li> <li>○ 원격제어시스템 및 감시시설 조정 통제</li> <li>○ 각종 자료 입력 및 분석관리</li> <li>○ 구역탐사 및 각종 유량제,감압변, 제수변 관리</li> </ul>
	요 금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수도 사용료 부과조정 및 체납금 징수</li> <li>○ 물이용 부담금 부과 및 징수</li> <li>○ 영업외 수입금 징수 및 조정</li> <li>○ 상수도 요율 조정</li> <li>○ 상수도 계량기 관리 및 부정계량기 단속</li> <li>○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금 관리</li> </ul>
	수질관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시설의 수돗물 수질관리 및 검사</li> <li>○ 수돗물 평가 위원회 운영·관리</li> <li>○ 먹는물 수질검사 및 민원처리</li> <li>○ 건축물·시설의 저수조 소독등 위생조치 지도·감독</li> <li>○ 저수조 청소업 신고 및 관리</li> </ul>
	수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수도 사업 종합계획 수립</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및 환경관리</li> <li>○ 상수도원 조성 사업</li> <li>○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 계획 수립 및 집행</li> <li>○ 상수도 관망도 작성 및 관리</li> <li>○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li> <li>○ 기타 상수도 시설공사 업무와 관련된 사항</li> </ul>
	급 수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수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li> <li>○ 급수공사 승인 및 공정 관리</li> <li>○ 대행업자 지정 및 운영 지도</li> <li>○ 급·배수관 유지 관리</li> <li>○ 특수가압시설 허가 및 흡수정등 설치 운영 지도</li> <li>○ 급수전 조사 및 감찰 교부</li> <li>○ 수전대장관리 및 수전번호 부여 관리</li> <li>○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시설 유지 관리</li> </ul>
	시 설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장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시행</li> <li>○ 군산호수, 월명호수 제방관리 및 수위 조절</li> <li>○ 상수도 시설물 유지 관리 (정·배수지, 가압장등)</li> <li>○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li> </ul>
하수과장	하수행정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li> <li>○ 일반사무 및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결산, 지출 회계 업무</li> <li>○ 하수도 공기업 공사 및 용역 계약, 물품구입 및 수불</li> <li>○ 지하수 관련 민원처리</li> <li>○ 하수도사용료 부과 징수</li> <li>○ 지하수개발 이용의 허가. 신고</li> <li>○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사후관리</li> <li>○ 지하수 경미시설의 신고</li> <li>○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굴착 행위의 신고</li> <li>○ 지하수개발 이용의 종료신고</li> <li>○ 지하수이용 실태조사</li> <li>○ 터널 등의 공사시 지하수 이용계획의 신고</li> <li>○ 지하수개발 이용 관련업 등록관리</li> <li>○ 지하수 수질관리 무허가 개발단속</li> <li>○ 개별 건축물 및 타행위, 타공사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li> </ul>
	하수계획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수도시설 종합계획 수립 추진</li> <li>○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동지역)</li> <li>○ 하수관거정비공사(동지역)</li> <li>○ 공공하수도대장 작성 및 관리</li> <li>○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허가</li> <li>○ 배수설비 설치신고 처리 및 준공검사</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수도 생활민원처리</li> <li>○ 읍면동 소규모 하수관거 사업</li> </ul>
	하수시설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li> <li>○ 읍면동 소규모 하수관거 사업</li> <li>○ 하수관거 유지관리 사업</li> <li>○ 하수도 생활민원처리</li> <li>○ 새만금유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읍면지역)</li> <li>○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li> <li>○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li> <li>○ 하수도 민원처리 준설 단가계약공사</li> <li>○ 하수도 긴급보수 단가계약 공사</li> <li>○ 하수도관련 사업부지 토지보상 및 협의</li> <li>○ 침수대비 하수관로 정비공사</li> <li>○ 소규모하수관로 기술진단</li> <li>○ 하수관로 준설공사 시행</li> <li>○ 하수관로 CCTV촬영 시행</li> <li>○ 빗물받이 청소 및 유지관리</li> <li>○ 기타 하수도시설공사 관련 업무</li> </ul>
	하수위생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수·분뇨 처리 기본계획 수립</li> <li>○ 분뇨수집 운반업 및 오수·분뇨 정화조 청소업 허가·변경 관리</li> <li>○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체 지도감독</li> <li>○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li> <li>○ 공중·개방·서민 등 화장실 기획·설치·관리 전반</li> <li>○ 청사 및 공중화장실 여성 편의시설 및 안심지대 구축</li> <li>○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 및 준공</li> <li>○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설계, 시공업 등록변경</li> </ul>
하수처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위탁 시설물관리 및 지도감독</li> <li>○ 미룡·은파가압장 운영 및 관리</li> <li>○ 마을하수도 기계·전기시설물 유지관리</li> <li>○ 하수종말처리장 대수선 공사</li> <li>○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금 집행</li> <li>○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실태 지도감독</li> <li>○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시설 관리에 따른 시설물 보수공사 승인</li> <li>○ 산업단지내 배수펌프장 및 배수갑문 관리</li> <li>○ 폐수종말처리장 폐수처리</li> <li>○ 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지원 및 정산</li> <li>○ 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오·폐수 유입승인</li> <li>○ 군장산단 입주기업 폐수처리 지도점검</li> </ul>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예술의전당 관리과장	시설운영 업무분야 <업무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관리사업소의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li> <li>○ 사업소내 복무단속 및 보안관리</li> <li>○ 시설내 청원경찰 복무관리</li> <li>○ 과내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li> <li>○ 예산, 회계, 계약, 경리, 용도와 재산 관리</li> <li>○ 지출, 급여, 세입세출외 현금, 세외수입, 물품관리, 공공요금, 공공성경비, 일용인부 관리</li> <li>○ 주차장 운영, 청소, 시설물 유지관리</li> <li>○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시설의 전기, 소방, 에너지에 관한 사항</li> <li>○ 냉방, 난방, 급수, 기계 시설관리</li> <li>○ 건축, 토목, 조경 등 관리</li> <li>○ 시립예술단 운영 전반</li> <li>○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직 복무지도 총괄</li> </ul>
	공연기획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 전시 기획 및 교육 총괄</li> <li>○ 홈페이지 제작, 관리</li> <li>○ 공연홍보 및 마케팅</li> <li>○ 각종 공연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li> <li>○ 시설 사용료 징수, 매표업무 등 제반수입 관리</li> <li>○ 공연장, 전시관 대관 및 사용허가 업무</li> <li>○ 무대시설 및 전시실 등 시설관리</li> <li>○ 무대기계 운용 및 관리</li> <li>○ 무대조명 운용 및 관리</li> <li>○ 무대음향 운용 및 관리</li> <li>○ <b>어린이공연장 관리 및 운영&lt;신설&gt;</b></li> </ul>
시립도서관 관리과장	관 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 신규 조성 및 건립(작은도서관 포함)</li> <li>○ 도서관 운영 계획 수립 및 평가</li> <li>○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li> <li>○ 장서통계 등 각종 통계 관리</li> <li>○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회계업무</li> <li>○ 보안관리 및 당직관리</li> <li>○ 시설 대관 및 사용료 징수 관리</li> <li>○ 열람실 관리 및 시스템 운영</li> <li>○ 전기시설물 관리</li> <li>○ 냉·난방, 소방, 도시가스 관리</li> <li>○ 물품 및 기록물관리</li> <li>○ 구내식당 관리</li> <li>○ 청사 내외 경비(주차관리 등)</li> <li>○ 소관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서 수발 및 직인관리</li> <li>○ 기타 타계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li> </ul>
	도서진흥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 자료 확충의 기본계획 수립</li> <li>○ 독서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시</li> <li>○ 단행본 자료의 선정·가격조사·구입 요구 및 검수</li> <li>○ 정기간행물 자료의 선정·가격조사·구입 요구 및 검수</li> <li>○ 비도서 자료의 선정·가격조사·구입 요구 및 검수</li> <li>○ 단행본, 정기간행물, 비도서 자료의 수증·기증 및 교환</li> <li>○ 도서관 자료의 등록·분류·편목·제적 및 폐기</li> <li>○ 도서관의 각종 문화 행사(독서의 달, 도서관 주간, 독서회 등) 추진</li> <li>○ 도서관 홍보에 관한 사항</li> </ul>
	자료운영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동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일반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정기간행물실 및 보존서고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디지털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도서관리 시스템 등 운영 및 유지관리</li> <li>○ 도서관 개관연장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전산실 및 통신기기실 운영 관리 관한 사항</li> <li>○ 도서관홈페이지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이용자 참고 봉사(이용자교육 등)에 관한 사항</li> <li>○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에 관한 사항</li> <li>○ 장서 점검에 관한 사항</li> </ul>
	작은도서관운영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학교도서관 협력에 관한 사항</li> <li>○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및 운영 지원 관련 사항</li> <li>○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li> <li>○ 민간운영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임피채만식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월명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미성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구암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미룡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흥남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나포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조촌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나운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중동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서수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성산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산단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개정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금강도서관 업무분야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아동·종합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보존서고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이용자 참고 봉사(이용자교육 등)에 관한 사항</li> <li>○ 도서관 개관연장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에 관한 사항</li> <li>○ 장서 점검에 관한 사항</li> <li>○ 도서관 교류협력 및 유관기관 협의 사항</li> <li>○ 도서관의 각종 문화 행사(독서의 달, 도서관 주간, 독서회 등) 추진</li> <li>○ 도서관 홍보에 관한 사항</li> <li>○ 일반 행정 및 물품 관리 사항</li> <li>○ 청사 내외 시설물 관리 사항</li> </ul>
	늘푸른도서관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유아·일반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이용자 참고 봉사(이용자교육 등)에 관한 사항</li> <li>○ 도서관 개관연장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에 관한 사항</li> <li>○ 장서 점검에 관한 사항</li> <li>○ 도서관의 각종 문화 행사(독서의 달, 도서관 주간, 독서회 등) 추진</li> <li>○ 도서관 홍보에 관한 사항</li> <li>○ 일반 행정 및 물품 관리</li> <li>○ 청사 내외 경비(주차관리 등)</li> </ul>
	설림도서관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유아·일반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이용자 참고 봉사(이용자교육 등)에 관한 사항</li> <li>○ 도서관 개관연장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에 관한 사항</li> <li>○ 장서 점검에 관한 사항</li> <li>○ 도서관의 각종 문화 행사(독서의 달, 도서관 주간, 독서회 등) 추진</li> <li>○ 도서관 홍보에 관한 사항</li> <li>○ 일반 행정 및 물품 관리</li> <li>○ 청사 내외 경비(주차관리 등)</li> <li>○ 열람실 관리</li> </ul>
	산들도서관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유아·일반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이용자 참고 봉사(이용자교육 등)에 관한 사항</li> <li>○ 도서관 개관연장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lt;삭제&gt;</li> <li>○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에 관한 사항</li> <li>○ 장서 점검에 관한 사항</li> <li>○ 도서관의 각종 문화 행사(독서의 달, 도서관 주간, 독서회 등) 추진</li> <li>○ 도서관 홍보에 관한 사항</li> <li>○ 일반 행정 및 물품 관리</li> <li>○ 청사 내외 경비(주차관리 등)</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p>박물관관리 과 장</p>	<p>박물관운영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본방침 추진</li> <li>○ 박물관(미술관, 건축관, 장미갤러리, 진포해양테마공원) 전시 기획에 관한 사항</li> <li>○ 전시물 구입, 소장 유물(매입, 기증) 관리, DB 운영</li> <li>○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문화공연, 장터운영 등 행사기획, 기타 진흥사업</li> <li>○ 정책세미나, 자원봉사·사회복무요원 관리</li> <li>○ 세외수입 및 대표관련(무인발권기) 등 운영</li> <li>○ 채만식문학관 운영관리</li> <li>○ 채만식선생의 문학성 조사 연구</li> <li>○ 채만식문학상 업무 추진</li> <li>○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및 3·1운동 역사영상관 운영 관리</li> <li>○ 기타 박물관 운영에 속하는 사항</li> </ul>
	<p>시설관리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 벨트화지역 시설관리 운영 (구.조선은행, 구.일본 제18은행, 진포해양테마공원 등)</li> <li>○ 미즈카페, 장미갤러리, 장미공연장 시설관리</li> <li>○ 전시시스템 운영 관리</li> <li>○ 청소, 보안(전기, 소방, 무인경비, 승강기) 등 용역업체 관리</li> <li>○ 청내 방호 및 기간제 근로자, 공공근로 운영</li> <li>○ 각종 전시, 행사 등 지원</li> <li>○ 채만식문학관 및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시설 관리 지원</li> <li>○ 기타 시설관리 운영과 관련된 사항</li> </ul>
	<p>생태시설관리 업무분야 &lt;삭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험학습객 및 탐조객·관광객 안내 및 교육</li> <li>○ 시설내 자료실·전시관·전시품 관리</li> <li>○ 시설 입장료 및 매표소 관리 및 임대·사용허가</li> <li>○ 철새신체탐험관·금강조류 생태공원·전시시설물 등 건축물 안전점검관리 및 유지보수</li> <li>○ 금강조류생태공원 조류사육·보호·관리</li> <li>○ 구난 조수 보호·치료 관리</li> </ul>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차량등록 사업소장	관 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자동차 정비 명령, 임시검사, 과태료처분</li> <li>○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입 명령등 업무 전반</li> <li>○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단속 및 처분</li> <li>○ 자가용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li> <li>○ 자동차정기검사 관련 업무 전반</li> <li>○ 사업용 자동차 정기점검 관련 업무 전반</li> <li>○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운행 차량 통고처분 및 범칙금 부과 징수</li> <li>○ 의무보험미가입운행자 등록 번호판 영치</li> <li>○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 운행차량 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li> <li>○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조정, 징수업무</li> <li>○ 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부과, 조정, 징수업무</li> <li>○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조정, 징수업무</li> <li>○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관련 업무전반</li> <li>○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관련 업무전반</li> <li>○ 정기검사미필자동차 검사 명령 및 번호판 영치업무전반</li> </ul>
	등 록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 등록관련 업무전반</li> <li>○ 자동차 정비.매매.폐차업 관련 업무전반</li> <li>○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 지정 및 행정처분</li> <li>○ 택시미터기 수리검정업체 지정 및 행정처분 업무전반</li> <li>○ 중고자동차 성능 점검자 관련 업무전반</li> <li>○ 무등록 정비. 매매. 폐차. 번호판 교부. 택시미터 수리업자 단속 및 처분</li> <li>○ 특별사법경찰관련업무(정비범위 위반정비업자)</li> <li>○ 등록번호판 및 봉인탈거 허가</li> <li>○ 자동차 수출이행여부 신고수리</li> <li>○ 정비책임자 선·해임 보고서 접수처리</li> <li>○ 자동차 주행거리계 교체통보서 접수처리</li> <li>○ 자동차 전산자료의 이용승인 업무(2개이상 사군해당 전산 자료 제외)</li> <li>○ 건설기계 등록관련 업무전반</li> <li>○ 건설기계 조종사 관련 업무전반</li> <li>○ 건설기계사업자(대여업.정비업.매매업.폐기업) 및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업. 등록번호 새김업 관련 업무 전반</li> <li>○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기관 지정 및 행정처분 관련 업무전반</li> <li>○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반납 신청처리, 등록번호 훼손허가 및 새김명령</li> <li>○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 수시 검사명령 정비명령 검사기간 연장 관련업무</li> <li>○ 건설기계 강제처리. 건설기계 폐기요청</li> <li>○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업무 전반</li> <li>○ 무등록 건설기계사업자 및 등록번호표 제작업자 단속 및 처분</li> <li>○ 불법 건설기계 단속 및 처분</li> </ul>
	차량세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 세무민원 창구 운영</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차량(자동차,건설기계,이륜자동차)등록 관련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 [자진신고분, 보통징수분 징수결의]</li><li>○ 차량관련 비과세 및 감면. 감액처리</li><li>○ 비과세·감면 차량 사후 관리 및 추징</li></ul>

[읍면동 소관]

읍면동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읍면장	읍면지역 공통	서무, 보안, 인사, 교육, 예산, 회계, 선거, 통계, 공보, 관광,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위원회 지원·관리, <b>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b> , 세외수입, 기부금품의 통제, 복지관련 지역자원발굴·관리·복지 위원 관리, 사례관리 대상발굴, 자활 및 노인일자리 사업장 관리,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인감, 제증명발급, 범죄자·파산자 대장정리, 민방위 조직편성 및 운영, 농업, 농사의 개량지식과 기술의 보급, 잠업, 양정, 수산, 농지개량, 수리산림, 수렵, 광업, 상업, 공업, 특허, 전기, 연료, 기상관측, 지역사회 개발과 기타 산업에 관한 사항, 옥도면(관공선 관리)

읍면동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동 장	동지역 공통	총무, 공보, 감사, 기획예산, 회계, 정보 통신, <b>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b> , 민원, 주민등록, 인감, 제증명 발급, 민방위등 일반업무 사회 복지관련 분야(사례관리 대상발굴, 자활 및 노인복지, 지역자원발굴등), 복지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찾아가는 복지상담, 민관협력 활성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역자원 발굴
	소룡동 산단민원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단지 현장민원 처리</li> <li>○ 전출입·주민등록·인감·가족관계증명 발급 등 제증명</li> <li>○ 120생활민원 이송</li> <li>○ 유기민원(복합민원) 이송</li> <li>○ 법인인감 발급기 운영</li> </ul>

※ 기타 읍면동의 특성에 따라 읍면동장이 적정배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자치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u>행정지원과장 · 기획예산과장 · 회계과장 · 세무과장 · 시민납세과장 · 열린민원과장 · 교육지원과장</u>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p>	<p>제7조(자치행정국) ----- ----- <u>행정지원과장 · 기획예산과장 · 회계과장 · 교육지원과장 · 세무과장 · 시민납세과장 · 열린민원과장</u> ----- ----- ----- -----.</p>
<p>제8조(경제항만혁신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u>소상공인지원과장 · 산업혁신과장 · 일자리정책과장</u>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새만금에너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u>항만해양과장</u>은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u>수산진흥과장</u>은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p>	<p>제8조(경제항만혁신국) ----- ----- <u>지역경제활력과장 · 산업혁신과장 · 일자리정책과장</u>----- ----- ----- <u>항만해양과장 · 수산식품정책과장 · 어업진흥과장</u>----- ----- -----.</p>
<p>제9조(복지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하고, <u>복지정책과장 · 경로</u></p>	<p>제9조(복지환경국) ----- ----- <u>복지정책과장 · 경로장애인과장</u></p>

장애인과장·아동청소년과장·여성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환경정책과장·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2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관리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5조(하부조직) ① (생략)

② 농업축산과장·먹거리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촌지원과장·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아동정책과장·여성가족청소년과장-----

-----  
 -----  
 -----  
 -----  
 -----  
 -----.

제12조(하부조직) ① -----

-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

② -----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감염병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

제15조(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농업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먹거리정책과장-----  
 -----.

군산시 공고 제2022-2292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9일

군 산 시 장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민선8기 시정운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 재정비
- 기준인건비 기준인력 범위내 정원을 반영하여 원활한 현안업무 추진

### 2. 주요내용

-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별표2)
  - 일반직 공무원
    - (개정 전) 8급 25%이내, 9급 10%이상
    - (개정 후) 8급 26%이내, 9급 9%이상
- 직급별 정원 조정(별표3)
  - 총 정원 : 1,622명 ⇒ 1,625명 (증 3명)
  - ※ 일반직 정원 : 1,585명 ⇒ 1,588 (증 3명)

###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예산조치 : 정원조정에 따른 소요경비 연 215백만원 정도 증가
- 입법예고 : 2022. 11. 9. ~ 11. 24. (15일, 기간단축)
- ※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24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 의견 제출할 곳
  - 우)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TEL 063-454-2253, FAX 063-454-6005)
-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행정지원과 인사계(063-454-22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조례 제 호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622명”을 “1,6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1명”을 “34명”으로 한다.

별표2,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제3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전 문 경력관
비 율	1%이내	7%이내	24%이내	32%이내	26%이내	9%이상	1%이내

※ 비고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지도직 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이내	97%이상	10%이내	90%이상

3. 별정직 공무원

구 분	5급상당이상	6 급상당	7 급상당	8 급상당	9급상당
비 율	10%이내	70%이내	20%이상	-	-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625	-				
정무직 계	1	-				
시장	1	1				
일반직 계	1,588	-				
3급	1	1				
4급	10	5	1	2	2	
5급	78	36	3	6	6	27
6급이하 계	1,499	-				
전문경력관계	4	-				
별정직 계	3	-				
6급이하 계	3	-				
연구직 계	1	-				
연구사	1	-				
지도직 계	28	-				
지도관	2			2		
지도사	26			26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군산시에 두 는 정원의 총수 <u>1,622명</u> 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생 략)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u>31명</u>	제2조(정원의 총수) ----- ----- <u>1,625명</u> ----- -----. 1. (현행과 같음) 2. ----- <u>34명</u>

현 행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제3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비율	1% 이내	7% 이내	24%이 내	32%이 내	25%이 내	10% 이상	1%이 내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622			-		
정무직 계	1			-		
시장	1	1				
일반직 계	1,585			-		
3급	1	1				
4급	10	5	1	2	2	
5급	76	35	3	5	6	27
6급이하 계	1,498			-		
전문경력관 계	4			-		
별정직 계	3			-		
6급이하 계	3			-		
연구직 계	1			-		
연구사	1			-		
지도직 계	28			-		
지도관	2			2		
지도사	26			26		

개 정 안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제3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비율	1% 이내	7% 이내	24%이 내	32%이 내	26% 이내	9%이 상	1%이 내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625			-		
정무직 계	1			-		
시장	1	1				
일반직 계	1,588			-		
3급	1	1				
4급	10	5	1	2	2	
5급	78	36	3	6	6	27
6급이하 계	1,499			-		
전문경력관 계	4			-		
별정직 계	3			-		
6급이하 계	3			-		
연구직 계	1			-		
연구사	1			-		
지도직 계	28			-		
지도관	2			2		
지도사	26			26		

군산시 공고 제2022-2293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9일

군 산 시 장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민선8기 시정운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 및 직렬사항 등을 조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부서, 계’ 신설 및 폐지, 부서이동 및 신규인력 배치를 위한 정원 및 직렬 조정
- 총 정원 : 1,622명 ⇒ 1,625명 (+3)

구분	당초	변경	변동사항	비고
계	1,622	1,625	+3	
4급이상	11	11	.	
5급	76	78	+2	
6급	329	334	+5	
7급	461	467	+6	
8급	393	394	+1	
9급	315	304	-11	
정무직	1	1	.	
경력관	4	4	.	
별정직	3	3	.	
연구직	1	1	.	
지도직	28	28	.	

###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예산조치 : 정원조정에 따른 소요경비 연 215백만원 정도 증가
- 입법예고 : 2022. 11. 9. ~ 11. 24. (15일, 기간단축)

###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24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 의견 제출할 곳
  - 우)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TEL 063-454-2253, FAX 063-454-6005)

□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행정지원과 인사계(063-454-22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규칙 제 호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와 관련)

[별표]

(총괄)

계	급	직	별	합	본	보	농	사	의	읍	면	동				
				계	청	건	업	업	회							
				계	소	소	기	소	사	국						
합				계	1625	845	113	92	151	34	13	138	239			
정 무 직				계	1	1										
차관(급)	소			계	1	1										
	정 무			계	1	1										
일 반 직				계	1588	838	113	62	151	34	13	138	239			
3급	소			계	1	1										
	행			정	1	1										
4급	소			계	10	5	1	1	2	1						
	행			정	3	1			1	1						
	기			술	1		1									
	행 정 · 기			술	5	4			1							
	행 정 · 기			술 · 농 촌 지 도	1			1								
5급	소			계	78	36	4	2	6	3	1	10	16			
	행			정	16	15			1							
	의			무	1		1									
	시			설	1	1										
	행 정 · 사			회 복 지	4	4										
	행 정 · 사			서	1				1							
	행 정 · 공			업	1				1							
	행 정 · 시			설	8	7			1							
	행 정 · 방			송 통 신	1	1										
	행 정 · 학			예 연 구	1				1							
	행 정 · 사			회 복 지 · 보 건	2								2			

계	급	직	별	합	본	보	농	사	의	읍	면	동				
				계	청	소	업	업	회							
							업	업	회							
							기	소	사	회						
							술	소	사	회						
							센터	소	회	사						
									무	국						
5급	행정·사회복지·의료기술	1										1				
	행정·사회복지·간호	1										1				
	행정·사회복지·환경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4										4				
	행정·공업·환경	2	2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농업·농촌지도	1			1											
	행정·농지·시설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3	3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환경·시설	1				1										
	보건·의무·간호	1		1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	2											2			
	행정·사회복지·농업·농지	2										2				
	행정·사회복지·농업·보건	1											1			
	행정·사회복지·농업·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4								3		1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											1			
	행정·사회복지·의료기술·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방송통신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1												
	행정·공업·농업·농지	1										1				
	행정·공업·농업·시설	1										1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2									1	1				
	행정·농업·수의·농촌지도	1				1										
	행정·농업·간호·시설	1										1				
행정·농업·환경·시설	2										2					

계	급	직	결	합	본	보	농	사	의	읍	면	동			
				계	청	소	업	업	회						
						건	기	업	사						
						소	술	소	무						
						터	센	국							
							터								
6급	소	계	334	189	19	19	27	10	3	31	36				
	행	정	68	51			3	2			12				
	세	무	2	2											
	전	산	1	1											
	사	회	복	지	8	2						6			
	공	업		5	3			2							
	녹	지		2	2										
	해	양	수	산	4	4									
	보	건	진	료	6		6								
	시			설	18	16			2						
	시	설	관	리	1	1									
	운			전	3	2				1					
	기	계	운	영	1	1									
	사	무	운	영	1	1									
	행	정	·	세	무	13	11		1				1		
	행	정	·	전	산	1	1								
	행	정	·	사	회	복	지	40	18		1	8	13		
	행	정	·	사	서	9	1		8						
	행	정	·	속	기	1				1					
	행	정	·	공	업	6	3		2	1					
	행	정	·	농	업	13			4			7	2		
	행	정	·	녹	지	2	2								
	행	정	·	해	양	수	산	3	3						
	행	정	·	환	경	2	2								
	행	정	·	시	설	30	28		2						
	행	정	·	학	예	연구	3	2		1					
	전	산	·	시	설	1	1								
	전	산	·	방	송	통신	1	1							
	공	업	·	환	경	5	3		2						
	공	업	·	시	설	5	4		1						
농	업	·	수	의	2			2							
농	업	·	시	설	1	1									
농	업	·	농	촌	지도	6			6						
녹	지	·	시	설	2	2									

계	급	직	별	합	본	보	농	사	의	읍	면	동					
				계	청	소	업	업	회								
				계	청	소	업	소	사	국							
6급	보 건 · 식 품 위 생	3	3														
	선박항해운영·선박기관운영	1									1						
	행 정 · 세 무 · 사 회 복 지	2	1						1								
	행 정 · 세 무 · 농 업	6								1	5						
	행 정 · 세 무 · 공 업	1										1					
	행 정 · 전 산 · 방 송 통 신	2	2														
	행 정 · 사 회 복 지 · 보 건	2										2					
	행 정 · 사 회 복 지 · 시 설	1	1														
	행 정 · 공 업 · 농 업	1										1					
	행 정 · 공 업 · 환 경	4	3										1				
	행 정 · 공 업 · 시 설	3	2						1								
	행 정 · 농 업 · 녹 지	1										1					
	행 정 · 농 업 · 시 설	3			1				1		1						
	행 정 · 농 업 · 농 촌 지 도	2			2												
	행 정 · 녹 지 · 시 설	1	1														
	행 정 · 해 양 수 산 · 시 설	3	2									1					
	행 정 · 보 건 · 식 품 위 생	1	1														
	행 정 · 보 건 · 간 호	0															
	공 업 · 농 업 · 농 촌 지 도	1			1												
	공 업 · 환 경 · 시 설	2							2								
	농 업 · 농 업 연 구 · 농 촌 지 도	3			3												
	보 건 · 의 료 기 술 · 간 호	10		10													
	행 정 · 세 무 · 농 업 · 녹 지	1										1					
	행 정 · 세 무 · 사 회 복 지 · 해 양 수 산	1								1							
	행 정 · 전 산 · 공 업 · 방 송 통 신	1	1														
	행 정 · 사 회 복 지 · 해 양 수 산 · 시 설	1										1					
	행 정 · 사 회 복 지 · 보 건 · 간 호	1	1														
	행 정 · 속 기 · 시 설 · 방 송 통 신	1								1							
	행 정 · 공 업 · 농 업 · 시 설	1									1						
	행 정 · 공 업 · 보 건 · 환 경	2	2														
	행 정 · 공 업 · 시 설 · 전 산	1								1							
	행 정 · 농 업 · 녹 지 · 시 설	1										1					
행 정 · 농 업 · 해 양 수 산 · 시 설	1										1						
행 정 · 보 건 · 의 료 기 술 · 간 호	3		3														

계	급	직	렬	합	본	보	농	사	의	읍	면	동				
				계	청	소	업	업	회							
						건	기	소	사	회						
						소	술	소	무	국						
						터	센									
						터	타									
7급	소	계	467	248	39	16	49	12	4	36	63					
	행	정	152	98	1	1	17	2	1	6	26					
	세	무	2	2												
	전	산	1	1												
	사	회	41	4					1	12	24					
	사	서	7				7									
	속	기	1						1							
	공	업	18	5			13									
	농	업	8			8										
	녹	지	4	4												
	수	의	2			2										
	해	양	9	7							2					
	보	건	1		1											
	간	호	9		9											
	보	건	8		8											
	환	경	6	6												
	시	설	37	31		1	4	1								
	방	송	5	5												
	시	설	1	1												
	운	전	4	3	1											
	기	계	2	1			1									
	선	박	1	1												
	행	정	24	19									5			
	행	정	6	6												
	행	정	23	15									8			
	행	정	2				2									
	행	정	5	4			1									
	행	정	14			3				1	10					
행	정	4	2							2						
행	정	5	5													
행	정	7	3	3		1										
행	정	3	3													

계	급	직	결	합	본	보	농	사	의	읍	면	동				
				계	청	건	업	업	회							
				소	소	소	기술	소	사							
				센터			센터		국							
7급	행정·시설	16	10					1		1	4					
	전산·방송통신	1	1													
	공업·환경	5	4					1								
	공업·시설	2	2													
	농업·수의	1			1											
	복지·시설	1	1													
	식품위생·위생	1	1													
	행정·전산·공업	2							2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보건·방송통신	1		1												
	행정·식품위생·위생	1	1													
	공업·보건·환경	1						1								
	공업·환경·시설	1							1							
	보건·식품위생·위생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6	1	15												
	행정·세무·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방송통신	2								2						
8급	소	394	213	44	12	39	6	3	26	51						
	행정	104	65		1	7	1	1	7	22						
	세무	6	5			1										
	전산	2	2													
	사회복지	22	6					1	4	11						
	사서	5				5										
	공업	20	11	1	1	7										
	농업	3			3											
	복지	4	4													
	해양수산	8	6							2						
	보건	10	3	7												
	의료기술	7		7												
	간호	15		15												
	보건진료	4		4												
	환경	2	2													
	시설	36	30			6										
	방송통신	2	2													
	방재안전	1	1													

계	급	직	결	합	본	보	농	사	의	읍	면	동				
				계	청	소	업	업	회							
						건	기	소	사	사무						
						소	술	업	국							
8급	운	전	9	7	1				1							
	건	축	운	영	1	1										
	전	기	운	영	1				1							
	기	계	운	영	3				3							
	행	정	·	세	무	12	10		2							
	행	정	·	전	산	2	2									
	행	정	·	사	회	복	지	32	14			2	16			
	행	정	·	사	서	2	2									
	행	정	·	공	업	7	2		4	1						
	행	정	·	농	업	16			6		1	7	2			
	행	정	·	녹	지	1	1									
	행	정	·	해	양	수	산	4	4							
	행	정	·	보	건	4	2	1		1						
	행	정	·	간	호	4	1	3								
	행	정	·	시	설	22	17		1			4				
	행	정	·	방	송	통	신	2	1		1					
	세	무	·	전	산	1	1									
	전	산	·	방	송	통	신	2	2							
	사	회	복	지	·	시	설	1	1							
	공	업	·	환	경	3	2		1							
	공	업	·	시	설	3	2		1							
	공	업	·	방	재	안	전	1	1							
	보	건	·	식	품	위	생	1	1							
	식	품	위	생	·	위	생	1	1							
	의	료	기	술	·	간	호	3								
	행	정	·	전	산	·	속	기	1			1				
	행	정	·	사	회	복	지	·	시	설	1					
	행	정	·	식	품	위	생	·	위	생	1	1				
보	건	·	의	료	기	술	·	간	호	2						
9급	소	계	304	146	6	12	28	2	2	35	73					
	행	정	65	21			2		1	12	29					
	세	무	9	9												
	전	산	3	2			1									
	사	회	복	지	59	2				1	16	40				
	사	서	7				7									
	속	기	1					1								

계	급	직	별	합	본	보	농	사	의	읍	면	동				
				계	청	건	업	업	회							
						소	기	소	사							
						소	술	소	무							
							센터	국								
9급		공	업	8	4		1	3								
		농	업	9			8				1					
		녹	지	2	2											
		해	양	수	5	3						2				
		보		건	4		4									
		의	료	기	1		1									
		환		경	5	4			1							
		시		설	28	26			2							
		방	송	통	1	1										
		방	재	안	2	2										
		시	설	관	5	2			3							
		운		전	3	1			2							
		전	기	운	4	3			1							
		기	계	운	1	1										
		열	관	리	1	1										
		사	육	운	2	2										
		사	무	운	22	15			4			3				
		행	정	·	1	1										
		행	정	·	28	24							4			
		행	정	·	2				2							
		행	정	·	3	3										
		행	정	·	3			3								
		행	정	·	2	2										
		행	정	·	3	2						1				
		행	정	·	2	1	1									
		행	정	·	1	1										
		행	정	·	2	2										
		행	정	·	4	4										
		행	정	·	1	1										
		공	업	·	1	1										
		보	건	·	0	0										
		식	품	위	2	2										
		행	정	·	1	1										
	보	건	·	1	1											
	행	정	·	1	1											

계 급 직 렬		합	본	보	농	사	의	읍	면	동			
		계	청	건	업	업	회						
		계	소	소	기	소	사						
		계	소	소	술	국	무						
		계	소	터	센	국	국						
		계	소	터	터								
연	구	직	계	1			1						
연구사	소	계	1			1							
	농	업	1			1							
	연	구	·										
	농	촌	지										
	도	직	계	28			28						
지도관	소	계	2			2							
	농	촌	지			2							
	도	직	계	26			26						
지도사	소	계	26			26							
	농	촌	지			26							
	도	직	계	4	3		1						
전문경력관	소	계	4	3		1							
나군	소	계	4	3		1							
	전	문	경										
	도	직	계	4	3		1						
별	정	직	계	3	3								
6급상당	소	계	2	2									
	별	정	2	2									
7급상당	소	계	1	1									
	별	정	1	1									

현행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 (총괄)										
계급	직렬	합계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의회사무국	읍	면	동
합계		1622	837	113	91	152	31	14	139	245
일반직		1585	830	113	61	152	31	14	139	245
5급	소계	76	35	3	2	6	3	1	10	16
	행정·사회복지·시설	7				3				4
	행정·농업·농촌지도	2			2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행정·농업·수의·농촌지도									
6급	소계	329	188	18	19	27	7	3	31	36
	행정	71	54			3	2			12
	운전	2	1				1			
	행정·세무	14	11			1				2
	행정·사회복지	41	19					1	8	13
	행정·사서	8	1			7				
	행정·농업	19			4			1	12	2
	행정·해양수산	2	2							
	전산·방송통신	2	2							
	행정·세무·농업									
	행정·세무·공업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공업·환경	4	2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2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세무·사회복지·해양수산									
	행정·전산·공업·방송통신									
행정·속가·시설·방송통신										
행정·공업·시설·전산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1							
7급	소계	461	246	41	16	47	13	4	35	59
	행정	151	99	1	1	15	2	1	6	26
	사회복지	36	4					1	11	20
	해양수산	10	8						2	
	보건	2		2						
	간호	11		11						
	방송통신	4	4							
	행정·전산	5	5							
	행정·해양수산	3	3							
	행정·보건	10	3	6		1				
	행정·보건·방송통신									
	보건·의료기술·간호	13	1	12						
	행정·세무·사회복지·농업	2					2			

개정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 (총괄)										
계급	직렬	합계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의회사무국	읍	면	동
합계		1625	845	113	92	151	34	13	138	239
일반직		1588	838	113	62	151	34	13	138	239
5급	소계	78	36	4	2	6	3	1	10	16
	행정·사회복지·시설	4						0		4
	행정·농업·농촌지도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3	3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4						3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1						
	행정·농업·수의·농촌지도	1			1					
6급	소계	334	189	19	19	27	10	3	31	36
	행정	68	51			3	2			12
	운전	3	2					1		
	행정·세무	13	11							1
	행정·사회복지	40	18						1	8
	행정·사서	9	1			8				
	행정·농업	13			4				0	7
	행정·해양수산	3	3							
	전산·방송통신	1	1							
	행정·세무·농업	6							1	5
	행정·세무·공업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2	2							
	행정·공업·환경	4	3				0			1
	행정·해양수산·시설	3	2							1
	행정·보건·간호	0		0						
	행정·세무·사회복지·해양수산	1							1	
	행정·전산·공업·방송통신	1	1							
행정·속가·시설·방송통신	1								1	
행정·공업·시설·전산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3		3							
7급	소계	467	248	39	16	49	12	4	36	63
	행정	152	98	1	1	17	2	1	6	26
	사회복지	41	4						1	12
	해양수산	9	7							2
	보건	1		1						
	간호	9		9						
	방송통신	5	5							
	행정·전산	6	6							
	행정·해양수산	5	5							
	행정·보건	7	3	3		1				
	행정·보건·방송통신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6	1	15						
	행정·세무·사회복지·농업	1							1	

현행											개정안										
계급	직렬	합계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의회사무국	읍	면	동	계급	직렬	합계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의회사무국	읍	면	동
행정	115	68		2	8	1	2	7	27	행정	104	65		1	7	1	1	7	22		
전산	3	3								전산	2	2									
사서	4				4					사서	5				5						
공업	19	10	1	1	7					공업	20	11	1	1	7						
보건	13	4	9							보건	10	3	7								
시설	37	31			6					시설	36	30			6						
방송통신	3	3								방송통신	2	2									
행정·전산	2	1				1				행정·전산	2	2					0				
행정·공업	6	2			3	1				행정·공업	7	2			4	1					
행정·농업	14			4			1	7	2	행정·농업	16			6			1	7	2		
행정·해양수산	3	3								행정·해양수산	4	4									
행정·보건	4	3	1		1					행정·보건	4	2	1		1						
행정·시설	17	11		1		1		4		행정·시설	22	17		1		0		4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방송통신	2	1					1				
공업·시설	2	2								공업·시설	3	2			1						
보건·식품위생										보건·식품위생	1	1									
행정·전산·속기										행정·전산·속기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9급	소계	315	145	6	12	34	1	2	37	78	소계	304	146	6	12	28	2	2	35	73	
	행정	67	21		1	2		1	12	30	행정	65	21		0	2		1	12	29	
	세무	10	10								세무	9	9								
	사회복지	64	1					1	18	44	사회복지	59	2					1	16	40	
	사서	9				9					사서	7				7					
	공업	10	5		1	4			1		공업	8	4		1	3					
	환경	6	4			2					환경	5	4			1					
	운전	4	2			2					운전	3	1			2					
	전기운영	4	2			2					전기운영	4	3			1					
	사육운영	2				2					사육운영	2	2			0					
	사무운영	24	17			4			3		사무운영	22	15			4			3		
	행정·세무										행정·세무	1	1								
	행정·사서	1				1					행정·사서	2				2					
	행정·농업	2			2						행정·농업	3			3						
	행정·환경	1	1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5	5								행정·시설	4	4								
	공업·시설	1	1								공업·시설	1	1								
보건·식품위생	1	1								보건·식품위생	0	0									
행정·사회복지·시설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보건·식품위생·위생										보건·식품위생·위생	1	1									
행정·해양수산·보건의료·식품위생										행정·해양수산·보건의료·식품위생	1	1									